

法人의 成立과 租稅問題研究

- 非營利 公益法人을 中心으로 -

1985年度

— 研究資料 —

이 資料는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研究委員 및 參事の 個別的인
研究結果이며 保健社會部の 公式
的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研究委員 金 國 道

保 健 社 會 部 長 官 貴 下

이 報告論文을 1985 年度 社會保
障審議委員會 基本研究計劃에 依한
最終研究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85. 12. 31

研究委員 金 國 道

序 言

社會福祉事業과 其他 非營利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의 實體가 組織 또는 財産의 結合體이므로 經濟成長과 社會發展에 따라 法人에 대한 새로운 理論도 發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法人들은 成立과 運營에 따른 租稅問題가 解決되지 않아 各 法人마다 어려운 問題點을 內包하면서 鈍화된 發展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의 現實은 非營利 公益法人에 대한 各種 租稅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調查研究 文獻이 상당히 不足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本 研究는 課稅對象法人의 全數調査를 實施하여 보다 正確한 實證的 考察을 할 計劃이었으나 研究豫算의 不足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保健社會部所管 800餘個의 法人을 母集團으로 하여 6個 課別 豫算支援 現況과 各 協會를 통한 會員法人을 標本으로 하고 郵送調査에 依하여 年度別 課稅現況을 有増化한 比較研究를 하였다. 資料協助는 먼저 해주셨으나 分析에서 除外된 社會課와 再活課 그리고 婦女福祉課의 資料는 所管協會에서 會員法人別 調査資料가 提出되지 않아 比較研究가 不可하여 總 103個 法人만을 調査分析하였다. 그러나 이번 調査에서 除外된 法人도 租稅滯納으로 因하여 問題가 發生한 몇個法人은 事例(case study) 中心의 研究도 兼하여 試圖해 보았다. 이와 같은 研究에 依하여 代表的인 問題點을 導出하고 改善方案을 摸索하여 法人成立과 租稅制度의 改善 資料에 供給코자 한다.

끝으로 研究過程에서 資料蒐集에 協助하여 주신 保健社會部 法務擔當官室과 各 局課의 法人擔當官에게 謝意를 表하옵고 資料分析에 수고하신 李廷鎬教授와 韓國法人問題研究所 職員 여러분에게도 感謝의 뜻을 전한다.

1985. 12. 17

研究者 金 國 道

目 次

第1章 序 論.....	1
第1節 研究의 必要性.....	1
第2節 研究의 目的.....	2
第3節 研究의 方法.....	5
第2章 法人의 成立.....	8
第1節 法人成立의 發達.....	8
第2節 法人成立의 種類.....	14
§ 1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14
§ 2 公法人과 私法人.....	16
§ 3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	16
§ 4 法人의 分類.....	17
1) 目的에 依한 分類.....	17
2) 組織에 依한 分類.....	18
3) 法人의 綜合分類.....	18
§ 5 自然人과 法人.....	19
第3節 法人設立의 法的構造.....	21
§ 1 法人의 設立主義.....	21
§ 2 法人設立의 要件.....	24
1) 社團法人의 設立要件.....	25
2) 設立行爲의 性質.....	26

3) 財團法人의 設立要件	26
4) 設立行爲의 性質	27
§ 3 法人의 機關	28
1) 意思決定機關	29
2) 執行機關	30
3) 監督機關	31
第3章 法人의 財産과 福祉事業	33
第1節 法人의 財産	33
第2節 法人의 運營	35
§ 1 法人의 不法行爲의 責任	35
§ 2 法人에 대한 罰則	36
§ 3 法人의 運營과 指導	39
第3節 社會福祉事業과 租稅問題	41
§ 1 稅制效率性의 問題	42
§ 2 稅制公平性의 問題	45
§ 3 企業所得의 課稅問題	49
§ 4 財産關聯稅制問題	51
§ 5 福祉年金과 課稅問題	52
第4章 綜合福祉事業과 非課稅	55
第1節 綜合福祉事業의 定義	55
§ 1 法人의 役割과 課稅制度	55

§ 2. 出損行爲와 收入 支出	58
§ 3 課稅와 免稅의 比重	59
第2節 事業目的別 免稅根據	62
§ 1 福祉事業과 教育事業	62
§ 2 宗教事業과 公益事業	65
§ 3 宗教團體와 非課稅	67
第3節 非課稅와 租稅減免規定	69
§ 1 國稅와 地方稅調整	69
§ 2 各種稅法中 非課稅規定	71
§ 3 各單行法中 租稅減免規定	72
第5章 課稅實態 調查結果에 대한 考察	75
第1節 調查方法의 概要	75
第2節 調查結果의 概要	76
§ 1 課稅內譯別 現況	76
§ 2 課稅金額別 現況	79
§ 3 市・道別 課稅現況	84
§ 4 施設支援金對 課稅額의 比較	93
第3節 課稅決定과 取消事例	100
§ 1 忠南K福祉法人의 境遇	101
§ 2 서울D社團法人의 境遇	103
§ 3 忠北C福祉法人의 境遇	106
§ 4 全南M福祉法人의 境遇	107

§ 5 釜山S福祉法人의 境遇	108
第6章 結 論	110
第1節 研究結果에 따른 問題點	110
§ 1 法人成立에 관한 問題	110
§ 2 課稅制度에 관한 問題	113
§ 3 法人運營에 관한 問題	118
第2節 問題에 대한 改善方案	119
§ 1 綜合的인 改善對策	119
§ 2 建議 및 要望事項	121
※ 參考文獻	125
附 錄	127
§ 1 研究計劃 및 各種資料 등	129
1) 研究計劃報告書	131
2) 研究班 課題確定 研究指示	133
3) 細部調查研究計劃報告書	136
4) 研究豫算要求에 대한 回示	140
5) 研究資料協調要請	141
§ 2 各課別 調查研究資料 移送	145
1) 兒童福祉課 研究資料	148
2) 婦女福祉課 研究資料(分布包含) 母子	149
3) 家庭福祉課 研究資料	150

4) 社會課 研究資料(分布 包含) 浮浪人	151
5) 病院行政課 研究資料	152
6) 再活課 研究資料(分布 包含) 障礙者	153
§ 3 調查對象法人別 資料移送	155
1) 韓國健康管理協會	158
2) 大韓家族計劃協會	159
3) 韓國社會福祉協議會	160
4) 大韓結核協會	161
5) 韓國老人福祉施設協會	162
6) 韓國療養福祉施設協會	163
7) 韓國浮浪人福祉施設協會	164
8) 韓國視覺障礙者福祉會	165
9) 大韓老人會	166
10) 韓國社會事業施設協會	167
11) 大韓癩管理協會	168
12) 全國公園墓苑協會	169
※ 防衛稅賦課處分取消判決文	170
※ 法人稅賦課處分取消決定書	173

- 表 目 次 -

〈表 1〉	法人의 綜合分類	20
〈表 2〉	自然인과 法人의 比較	22
〈表 3〉	租稅負擔 平均比率	43
〈表 4〉	總收入에서 차지하는 間接稅	47
〈表 5〉	노르웨이 課稅所得 控除	53
〈表 6〉	基本財産代替許可書	60
〈表 7〉	調査對象 法人現況	75
〈表 8〉	1983 年度 課稅內譯別 現況	77
〈表 9〉	1984 年度 課稅內譯別 現況	79
〈表 10〉	1983 年度 課稅金額別 現況	80
〈表 11〉	1983 年度 協會別 課稅內譯現況	81
〈表 12〉	1984 年度 法人別課稅金額現況	82
〈表 13〉	1984 年度 協會別課稅內譯現況	83
〈表 14〉	1983 年度 市・道別 財團法人 課稅內譯 및 題稅金額別現況	85
〈表 15〉	1984 年度 市・道別 財團法人 課稅內譯 및 課稅金額別現況	85
〈表 16〉	1983 年度 社會福祉法人 市・道別 課稅內譯 및 課稅金額別現況	87
〈表 17〉	1984 年度 市・道別 社會福祉法人 課稅內譯 및 課稅金額別現況	90
〈表 18〉	1983 年度 社會福祉施設 増改築費 支援現況	94

〈表 19〉	1984 年度 社會福祉施設 増改築費 支援現況	97
〈表 20〉	課税決定内譯書	105
〈表 21〉	變更決定税金額	106
〈表 22〉	財産税 内譯	109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必要性

1) 社會福祉事業 및 其他公益非營利事業을 目的으로 設立 運營되고 있는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그리고 各 單行法에 依한 社會福祉法人等に 各種稅金이 부과되고 있어 法人의 基本財産이 감소되는等 目的事業에 莫大 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最近 都市計劃 또는 國土開發計劃에 依하여 法人의 目的事業場 移轉이 不可避하여 法人의 基本財産 변경을 초래한다.

이 경우 변경된 法人의 財産에 수천 또는 기억의 稅金이 부과되어 法人의 財産上의 損失과 事業의 차질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 理由로는 政府施策에 依한 地方都市의 均衡發展을 도모하고자 大都市에 있는 社會福祉施設等を 地方의 中小都市로 移轉하거나 營舍施設을 現代化할 目的으로 機能補強費 및 施設の 増改築費等 國費 또는 地方費를 補助하여 設置한 法人의 財産이 租稅滯納으로 押留되어 있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本研究의 必要性은 政府施策에 따른 國家發展事業의 일환으로 社會福祉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거나 法人의 基本財産이 都市計劃에 저축되어 당해法人의 基本財産이 변경될 경우 부가되고 있는 각종 稅金은 감면조치되어야 한다는 法的根據에 의한 理論的 背景을 전개하여 非營利公益法人 특히 國費 또는 地方費補助에 依하여 運營되고 있는 法人等은 根本的으로 非課稅法人임을 입증하는데 必要한 資料를 生産코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政府는 國費 또는 地方費를 補助하고 稅務當局에서는 國稅 및 地方稅의 名目으로 補助한 金額以上の 세금을 徵收하는 모순을 시정할 수 있는 資料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研究者의 작은 바램인 것이다.

그러므로 本研究의 必要性은 法人의 事業實績과 課稅內譯을 조사하여 租稅減免의 惠澤으로 地域社會福祉增進에 기여하고자 한다.

第2節 研究의 目的

1) 現在 課稅對象이 되고있는 法人의 基本財産은 利潤追求를 目的으로 하는 營利法人과 非營利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法人 또는 財團法人 社會福祉法 및 其他 各 單行法에 의한 法人으로 區分할 수 있다.

前者는 民法 第39條 및 商法第169條의 根據에 의한 商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營利法人이라고 하고 後者는 民法 第32條 各 單行法에 의한 各種 非營利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 公益法人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法人의 財産은 利潤追求를 目的으로하는 株主總會의 決議에 따라 處分할 수 있으므로 各種稅金을 法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겠지만 國家를 代身하여 非營利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은 解散할시 定款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主務官廳의 許可와 各單行法の 根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되므로 당연히 租稅減免 惠澤이 있어야만이 公益事業이 發展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傳統的인 農業社會에서 高度產業化社會로 轉換되어감에 따라 法人의 事業도 漸次 多樣化되고 있으나 역시 經濟成長의 主軸은 營利法人에 의하여 發展되어 왔음은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急成長에 따른 副作用으로 經濟的 均衡, 發展을 가져오지 못한 점도 있지만 全體의

인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經濟發展의 主軸은 당연히 營利法人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非營利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法人, 財團法人, 社會福祉法人 等도 國家社會의 發展에 상당히 重要的 任務를 分擔하였다는 事實도 看過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非營利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의 總數는 5,000 餘個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들 法人에 대한 合理的인 運營問題에 대하여는 國家的으로나 社會的으로 等閑視되어온 것은 事實이다. 그러므로 一部 法人의 運營管理者等은 非營利公益事業을 빙자한 脫稅營利行爲등 社會公益의 特典下에 많은 非行이 盛行하여 漸次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같은 問題는 其間 經濟發展에만 치중하여 왔으므로 經濟外的인 側面의 社會福祉分野는 상대적으로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等閑視한 것은 또한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은 國家의 단계적 發展過程에 따르는 必然的인 추세이기도 한다.

2) 우리나라 憲法에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가 있다고 한 것은 經濟的側面의 開發은 결코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營爲할 수 있도록 하는 社會開發로 誘導되어 福祉社會 建設과 직결되어야 할 것이다. 人間다운 生活이란 法人 또는 自然人이 社會的인 可用能力을 合理的으로 自身과 國家社會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社會保障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社會保障中에서도 社會福祉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保護育成은 租稅減免의 惠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非營利公益法人이 設置運營하는 社會福祉施設에서 保護를 받고 있는 피수용자들에 대한 保障問題는 人間으로서 生命의 尊嚴

과 國家와 社會의 機能의 總和라는 兩面性에서 優先적으로 다루어 져야 할 당면한 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本 研究는 많은 法人中에서도 社會福祉의인 側面을 고려하여 保健社會部 所管法人에 대한 租稅減免 惠澤이 時急하다고 판단되어 事例(Case Study) 中心의 研究를 試圖하였다.

우리나라 法人의 發展은 主로 營利法人을 中心으로 學界나 實務界를 비롯하여 많은 研究가 거듭되어 왔다. 따라서 그 研究結果는 企業經營의 實體에 適應하게 되어 있음에 反하여 非營利公益法人은 同一한 社會에 共存하면서도 舊態依然한 樣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이러한 점에서 非營利公益法人의 健全한 指導育成을 위하여 基本財産에 부과되는 各種稅金에 대한 實際調査로 國益의 輕重을 비교하여 改善方案을 研究한다는 것은 必然적으로 時急하게 要請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非營利 公益法人의 租稅問題는 法人 自體만의 課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社會公共의 利益을 도모하는 法人으로서 가져야 할 社會的機能面에서도 조속히 解決되어야 할 課題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같은 점을 고려하여 公益法人의 健全한 發展을 기하기 위하여 基本財産에 부과되는 稅金實態와 法人의 財政現況을 事例中心으로 分析하여 法人自體의 能力이 低下되지 않고 基本財産의 損失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社會關係를 維持하면서 國家監督上 本然의 目的인 公平原理에 입각하여 法人의 合理的인 指導育成 方案과 새로운 Model Program에 依한 法人의 運營方案을 摸索하고자 하는 것이 本研究의 根本目的인 것이다.

第3節 研究의 方法

1) 非營利公益法人의 租稅減免惠澤에 關한 研究는 理論的인 研究도 重要하지만 實證的인 考察에 의한 研究가 더욱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이 論文에서 다루어지는 非營利公益法人이라함은 主로 民法 32 條를 根據로한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그리고 公益法人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依한 社團 또는 財團法人, 社會福祉事業法과 各單行法에 依한 社會福祉法人 等を 말한다. 이와같은 法人에 關한 研究文獻은 理論的인 資料는 물론 實證的 資料가 未洽하여 本論文에서 다루어질 法人租稅減免에 關한 研究를 主로 實證的 考察의 立場에서 表<1>의 法人에 對한 郵送調査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123 個의 法人에 對한 實態分析을 하여 導出된 問題點의 改善方案을 重點的으로 다루었다. 또한 法人은 그가 行하는 事業目的에 따라 種類가 多樣하므로 全般的으로 다룬다는 것은 研究의 焦點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 保健社會部所管 各種 非營利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800 餘個의 法人中 課稅된 123 個法人을 中心으로 그 研究範圍를 좁혔다. 그러므로 本研究論文 第1章은 主로 序論的인 一般理論을 전개하여 이 論文全體의 大意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였으며 第2章에서는 法人의 成立過程과 法的理論을 전개하였고 第3章에서는 法人의 財産과 租稅에 對한 理論 및 法的 背景等を 記述하였다. 그리고 法人에 對한 初心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自然人外 法律上으로 人格이 부여된 法人의 基本財産이 國家行政作用에 미치는 影響에 對하여 理論的背景을 體系化시켰다. 그 理由는 어느정도의 理論的背景과 法人의 形態를 理解함이 없이는 本研究에 對한 接近이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本研究의 第4章과 第5章에서는 本格的인 研究方法으로서 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課稅實態를 比較分析하여 問題點을 導出하고 第6章에서는 第4章과 5章에서 얻어진 問題點을 中心으로 法人基本財産에 課稅된 稅金으로 因하여 公益事業에 미치는 影響과 主務官廳의 役割, 그리고 法人運營者の 姿勢 各種稅法에 대한 問題點을 具體的으로 提示하고 結論的으로 各法人別 建議 및 要望事項等을 論述하고 끝을 맺고자 한다.

2) 또한 本 論文에서 採擇한 具體的인 研究方法은 文獻資料에 의한 研究方法과 課稅法人을 對象으로 郵送調査를 실시하여 이를 集計處理한 資料分析으로 事例中心의 實證的考察에 의한 研究方法을 採擇하였다.

文獻研究는 國內外專門書籍을 수집 使用하고 實證的 考察은 保健社會部所管 非營利公益法人中 課稅된 123個 法人을 事業目的別로 有層化하여 課稅事例中心으로 集計分析하고 그 問題點을 導出하여 理論과 實際的 研究를 試圖하였다.

本研究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된 課稅事例는 研究對象法人들이 設立當初의 基本財産이 地價上昇에 따라 數億 또는 數拾億으로 증가되어 數百萬圓의 財産稅가 부과된 法人과 그 法人의 所在地가 都市計劃에 依하여 移轉되거나 國費 또는 地方費補助에 의하여 建物 등이 增築될때 壹仟萬圓以上 2億상당의 防衛稅가 부과되어 事業에 차질이 초래하는 法人들을 對象으로 하였다.

그리고 其他 法人들도 數拾萬圓 또는 千百萬圓의 租稅滯納으로 法人의 基本財産이 押留되어 있는 法人等도 本研究의 對象法人으로 選定하였다. 이와같이 一部 法人들이 財産對替를 하여 事業擴張에 따른 稅金恐怖症으로 인하여 莫大한 法人의 基本財産을 效率的으로 活用하지 못하고 있는 實

情이다. 1976年度부터 法人의 基本財産處分許可權이 地方官署로 移讓됨에 따라 基本財産의 處分效力과 租稅問題等에 대한 事前確認없이 許可하여 租稅滯納으로 事業이 중단되는 法人도 있다. 以上과 같은 유형의 研究對象 法人의 數를 把握하여 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各種稅金의 全面減免으로 法人의 財産을 合理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案等を 研究하여 政策資料에 供與하고자 한다.

第 2 章 法人의 成立

第 1 節 法人成立의 發達

法人은 自然人外 法的으로 人格이 부여된 無形의 사람이다. 이 法人의 成立은 一定한 目的을 가진 組織下에 結合된 사람의 集團인 社團法人과 一定한 目的을 위하여 出捐된 財産에 依한 一團의 財團法人이 있다.¹⁾

이와같은 法人들中 社團 또는 財團등은 어떠한 實體와 構造를 가지는 것이며 또한 어떻게 自然人的 社會的인 實體에다 法的人格을 認定할 수 있는가? 등의 問題에 있어서는 많은 論爭이 있다. 그리고 法人에 관한 實定法上的 內容은 各 나라마다 時代的要請에 따라서 相當한 差異가 있는 것이다.²⁾

이같은 法人의 理論은 法律上 權利的 本質에 있어서 關聯을 갖는 法理學上的 基本問題의 하나로 이에 關한 學說의 論爭은 近代 法律學에 關한 것이 아니라 法, 國家 團體, 財産, 所有權, 契約 등의 여러가지 問題에도 關聯되어 있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직 많은 問題들이 未解決로 남아있는 것이다. 法人에 關한 여러 學說은 個人主義를 바탕으로 한 民法의 性格과 原理가 社會的, 經濟的 여러 關係의 變化에 따라 各時代의 社會思潮를 背景으로 하여 論議되어 왔다. 즉 個人主義思想이 一般化됨에 따

註 1) 川島武宣, 民法總則, 日本國 有斐閣, 1978, p.87.

2) 金國道, 法人實務論, 法問研出版部, 1978, p.51.

라 實在說이 판을 치게 되었다.³⁾

法人成立에 關한 學說의 理解增進을 위하여 먼저 法人成立의 歷史的變遷過程을 살펴보면 法人에 關한 最初의 學說은 로마法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로마의 法은 紀元前 450年頃에 主로 前代의 慣習法을 成文化하여 편찬 制定된 12銅表法이 가장 중요한 法이다.

이 法은 主로 貴族과 平民과의 抗爭結果에 制定된 것이라고 하는데 로마 法의 發展史上에 있어서 全民法과 全私法의 源泉이며 全로마法 體系로서 後世에 法律의 基礎가된 法典인 것이다.⁴⁾

이 法을 中心으로 하여 自然的으로 市民을 위한 民權이 더욱 擴大되어 로마市民은 法律앞에 平等하게 되었다. 그후 로마는 차차 國力이 富強하여 地中海를 統一하고 世界 諸國을 장악하여 4世紀 동안이나 이를 支配함으로써 로마 市民에게만 한정하여 適用되는 市民法이 制定되었고 領土의 擴張으로 인하여 商業的 去來에 必要한 萬民法이 制定되었다. 이와 같은 로마法은 모두 紀元前 212년의 “카타칼라”(Kata Kalla)의 勅法과 紀元前 376년에 “리키리우스”(Liciniws)法에 依하여 市民法과 萬民法이 融合되어 世界의 法學界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等 큰 影響을 끼쳤던 것이다. 그후 527년에 卽位한 유스티아누스(Justianus)는 軍事力으로 領土를 回復하고 當時 統一을 잃었던 法을 整備하여 古典法을 復活시켜 文化的統合을 할 意圖과 케르만의 法典 편찬을 위한 立法事業을 遂行하였다.

註3) 金顯泰, 民法總則, 敎文社, 1975, p.149.

4) 朴光緒, 法制史, 一字社, 1972, p.58.

그로부터 2年뒤인 529年 4月 27日, 舊 勅法을 整理하여 公布하고 565年에 Justinus가 死亡하기까지 158個 勅法이 發表되었다. 로마法은 12個 銅表를 그發生期로하여 로마가 滅亡한 오늘날까지 그 影響을 받지 않은 國家는 거의없다. 卽 中世를 통하여 現世에 이르기까지 土耳其, 이디오피아, 中國을 除外하고는 그 影響을 받지 않은 國家는 없었으며 특히 게르만 法源에 많은 影響을 주었던 것이다.⁵⁾

로마法에서는 처음부터 個人과 國家의 存在가 明瞭하고 個人의 權利와 國家의 權力意識은 公私法의 區別을 確立하고 로마市民만이 權利主體로 認定하고 國家와 個人의 中間에 團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法人에 關한 여러가지 學說은 個人主義를 바탕으로 한 市民法의 性格과 原理가 社會的 與件에 따라 흐름을 背景으로하여 論議되어왔다. 즉 個人主義의 思想이 支配하였던 時代에는 法人理論은 擬制說과 否認說이 主張되었으며 團體主義思想이 一般化됨에 따라 實在說이 支配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로마의 初期法學者들이 公法은 除外하고 私法에 關한 것만을 研究對象으로 삼고 公法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인데 Justinus의 學說에는 公法人에 關한 規定만이 실려있다.

로마法에 있어서 私法으로는 埋葬社團 職業社團 이외에는 별로없어 團體를 規律하는 法理로 個人法理에 벗어나지 못하여 團體의 特殊한 法理는 생겨나지 않았다. 法律關係의 主體는 個人이라는 견지에서 法人도 個人이라고 認定되어 人格이 認定된다고 說明할 수 있으나 로마인이 法人을 觀念的 存在로서 擬制人으로 認定하려는 理論은 찾아볼 수가 없다.

註5) 張庚鶴, 新民法總則, 三省社, 1969, p.229.

이것은 “프로텐티누스”(Flotentinus)가 法人이 사람으로 作用한다고는 하였으나 사람으로 擬制된다고는 하지 않았는데서 찾아볼 수 있으며 擬制說은 中世以後의 로마法學者의 理論을 基礎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로마法 및 게르만法の 財團法人은 基督教時代에 이르러 病院孤兒院, 養老院等 敬虔한 目的을 가지고 教會의 監督下에 있는 敬虔財團에 法人格을 認定했다는 學說이 있으나 오늘날의 財團法人은 本來 寺院法에 由來하는 營造物로부터 進展한 觀念이 敬虔財團을 吸收하여 結實이 된 것이다.⁷⁾

獨逸에서는 1815年 슈타델(Stadel)의 美術館建立을 위한 遺言問題를 계기로 學界에서 財團法人의 存在에 關心을 表示한 뒤 大多數의 로마法學者들은 財團自體를 認定할 것을 主張했다.

또다른 法人學說을 보면 法人은 法律上の 主體로 法の 世界에서 承認하고 基礎를 닦은 最初의 理論이 擬制說로 되어 있다. 이 擬制說의 內容이 明瞭히 整備된 것은 中世教會法學者의 功績이라고 보는 說이며 이 學說의 代表的學者는 歷史法學者 사이니(Saign)이다. Saign는 1798~1861年代의 歷史法學者로서 自由로운 意思主體인 人間個人만이 法律上の 主體로서 自然人에 擬制한 것이라고 하였다.

即 純粹한 法律의 世界에서 存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⁸⁾

그 理論의 重點은 첫째, 國家權力の 絶對的權威를 指摘하였고, 둘째, 그의 이른바 私法上の 法人은 오직 財産上の 取引이 있어서 主體로 한다는 것이다.

註 7) 金國道, 法人指導監督에 관한 研究, 延大學位論文, 1976, p.16.

8) 原田慶吉, 日本民法の史的素描, 創文社, 1964, p.21.

이 學說은 近代에 있어서 個人主義思想이 支配하고 團體主義思想을 배격하였던 時代에서는 支持를 받았다. 그러나 擬制說의 大前提인 權利義務의 主體는 自然人인 個人에 限한다는 理論自體를 오늘의 法律理想에 비추어 보아 받아 드릴수 있겠느냐 하는點이 결점이라고 볼수 있다.⁹⁾

近世初期의 自然法論과 國家契約說 등의 基盤위에서 擬說이 成立한데 있어 近代法學發展이 觀念論에서 實證主義으로 轉換됨에 따라 法律自體를 그 存在의 基底인 社會속에서 把握하려고 함으로써 法人에 關하여서도 法人의 社會的 實體를 현미경적으로 觀察하여 그 實體의 本質을 남김없이 分析 把握하려는 徹底한 科學的精神을 發揮한 否認說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否認說은 法人의 社會的實體가 獨自의인 主體의存在라는 것을 否定하고 法人은 단지 多數主體者의 法律關係를 單一化하기 위한 法技術 또는 法律關係의 形式的인 歸屬點이라고 하며 法人의 實體를 財産이나 個人에서 찾으려는 學說을 總稱하여 法人否認說이라고 한다. 이 學說은 예링(Fhering)이 主張한 享益主體說과 브린스(BBtnder)가 主張한 管理者主體說等 諸說이 있으나 이것은 擬制說에서 기인되었던 것으로서 法人의 對外的 去來關係에 있어서 갖는 法技術性的 分析把握을 한층더 自覺적으로 徹底化시켰다는 意義를 갖고 있다. 이 點에서 擬制說보다 否認說이 앞섰다고 볼수 있으나 否認說도 主로 財團을 對象으로 한 것이므로 社團을 對象으로 하는 說明에는 적합하지 못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法律이 尊重해야할 實體는 個人과 財産에 限하지 않는다는 點에서 法人否認說은 現在의 法思想에 符合되지 않는다. 다음은 團體主義 思

註 9) 恒藤恭, 法人格の理論, 弘文堂書房, 1946, p.18.

想이 一般化됨에 따라 法人은 法律에 의하여 擬制된 것이 아니고 社會現象으로서 獨立의 統一體로서 存在하는 것은 承認하고 이것을 研究하여 거기에 法の 世界에 있어서 法人의 諸般法律關係를 導出하려고 하는 法人實在說이 기반을 잡게 되었다. 法人의 實在說에는 社會的 實體가 무엇이나에 따라 「기르케」(Ottov Gtreke)가 主張한 有機體說 및 佛蘭西의 「미슈우」(Lmi choud)와 「사레이우」(R Salettiles) 등이 社會的法律學의 立場에서 法の 社會的實體의 存在를 探究한 組織體說과 「듀귀이」(Leon Duguit)와 「코오라」(Josep Koohltn)가 社會連帶의 思想을 바탕으로 하여 主張한 社會的價值說이 있다. 이와같은 諸法人의 理論에 屬하는 組織體說을 主張하는 學者和 社會的 價值說을 主張하는 學者가 있다.¹⁰⁾

本研究者의 생각은 社會에 存在하는 各種 團體를 社會的 有機體로 모든 法律的 組織體로 모든 그 自體가 法人格을 갖는다는 것은 自然人和 같이 社會的作用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社會的 價值說이 타당하다고 본다.

社會的作用이 法人의 社會的價値를 決定하는 唯一한 基準이 될 수 있다고 볼수 있으나 法以前의 團體의 存在를 認定하고 自然人的 窮極的인 價値가 社會에 貢獻하는데 있는 바와 같이 團體의 存在價値도 社會에 貢獻하는데 그 設立目的이 있다는 점에서 社會的作用을 담당할 수 있는 價値的인 立場에서 社會에 存在하는 團體나 財産의 集團이 法人이 될 수 있다고 主張하는 社會的 가치설이 무난하다고 생각된다.¹¹⁾

註 10) Ottov Gtreke 의 團體法論, 로고스서원, 1929, p.150.

11) 金國道, 法人指導監督論, 法研出版部, 1976, p.12.

第2節 法人成立의 種類

法人의 成立은 民法 또는 各單行法에 依하여 成立된다고 볼수 있으나 民法에서는 非營利法人을 그 構成要素가 社團이나 財團이나에 따라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으로 區分 成立된다.

社團法人은 一定한 目的을 위하여 構成된 組織을 갖는 사람의 集團이라는 社會的實體이다.

法人格을 賦與한 法人을 말하고 財團法人은 一定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提供된 財産의 結合體로서 그 目的의 拘束下에 運營管理되고 社會生活에 있어서 權利義務의 獨立된 主體로서 認定된 法人을 말한다. 이 兩法人의 같은 點과 다른 點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1) 社團法人은 自然人을 構成員으로 하여 一定한 目的事業을 수행하는 團體이며 財團法人은 財産을 그 構成要素로 하여 目的事業을 遂行하는 財産의 集團이다.

2) 社團法人은 그 構成없이 意思를 매개로 하는 社員總會에 應하여 活動하는 民主的性格이며 財團法人은 他人의 意思 즉 設立者의 意思에 따라 構成된 理事會議에 依하여 活動하는 非民主的 性格이다.

3) 社團法人은 自律성과 融通성이 많아 私法人 特히 營利法人의 構成에 適合하지만 財團法人은 他律성과 目的의 恒久性으로서 公益目的에 適應할 수 있는 實體이다.

4) 社團法人의 設立行爲는 合同行爲로서 設立節次에 있어서 定款의 作成과 設立許可 및 設立 登記를 要하지만 財團法人의 設立行爲를 單獨行爲

로서 設立節次에 있어서는 法人設立登記 以外에 財産의 出損行爲가 追加한다.

5) 社團法人은 最高意思決定機關인 社員總會가 있으나 財團法人은 社員總會가 없고 理事會議로서 定款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處理된다.

6) 社團法人은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으로 區分할 수 있으나 財團法人은 非營利公益法人에 限하고 있다.

7) 社團法人의 成立은 民法 第 32條 및 39條에 依하고 財團法人의 成立은 民法 32條만을 根據로 한다.

8) 社團法人의 解散은 存在時期나 解散事由가 發生할때 取消 또는 解散하고 社員이 없게 되거나 總會의 決意로도 解散할 수 있다.

9) 財團法人의 解散은 存在時期나 解散事由가 發生할때 主務官廳에서 取消하거나 理事會 결의에 依하여 解散할 수 있다.¹²⁾

民法 第 32條 (非營利法人의 成立과 許可)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 기타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法人으로 할 수 있다.

民法 第 39條 (營利法人)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社團은 商事 會社 設立의 條件에 좇아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民法 第 77條 (解散事由) ①法人은 存立期間의 滿了, 法人의 目的 達成 또는 達成의 不能 其他 定款에 定한 解散事由의 發生, 破産 또는 設立許可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社團法人은 社員이 없게 되거나 總會의 決意로도 解散한다.

註 12) 金國道, 法人基本財産에 關한 研究, 社保審, 1980, p.23.

§ 2. 公法人과 私法人

公法人과 私法人은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이 各各 包含되어 있는 廣義의 法人이므로 實際적으로 完全한 區別을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問題가 있다.

그 理由는 公法人과 私法人을 區別하는 標準이 法人의 準據法이 公法이냐? 私法이냐? 또는 法人의 設立이 強制的이냐? 任意的이냐? 그리고 享有하는 權利가 公權이냐? 私權이냐? 또한 法人의 設立目的이 公益이냐? 私益이냐? 그 事務內容이 國家的이냐 統治的이냐? 等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어느것이든 絶對的인 것은 아니다.

從來의 여러 標準에 依하여 公法人과 私法人은 劃一的으로 區別하려든 諸學說의 中間的法人의 태생으로 점차 그 妥當性を 잃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中間的法人은 國家가 그의 産業政策 文化政策을 實行하기 위하여 많은 法人의 設立을 助長 내지 強制하고 公權力에 依한 干涉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運營管理 또는 組織에 關하여 公的干涉이 强하게 나타나고 있는 特殊法人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特殊法人이 公法人인지 또는 私法人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 3. 營利法人과 非營利法

營利法人은 民法 第39條의 規定과 商法에 依하여 社員의 經濟的 利益을 추구하기 위한 營利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 말하며 非營利法人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民法 第32條 規定에 依한 法人과 其他 各單行法에 依한 모든 非營利公益法人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營利法人은 社員의 經濟的 利益은 窮極的으로 삼는 法

人을 말하며 非營利法人은 學術, 宗教, 慈善, 技藝等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同窓會, 同因會等を 包含하여 非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이 있다.

以上에서 말한 法人以外에도 民法第 32 條의 法人은 非營利 非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純粹한 親睦團體로서 法人의 設立이 可能하나 事實에 있어서는 現行民法이 許可主義를 採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社會에서는 그 實體가 社團이면서 法人格을 갖지 못하는 團體들이 많다. 즉 權利能力이 없는 社團이 實存하고 있으며 財團에 있어서도 社團과 같이 法人格을 取得하지 못하는 權利能力 없는 財團이 있다. 또한 國籍如何에 따라서 內國法人과 外國法人으로 分類할 수 있으나 本 研究에서는 省略하고 法人의 目的에 依한 分類와 內部組織에 依한 分類를 要約하여 課稅法人과 非課稅法人을 區分하는데 參考資料로서 <表 1>에서 例示하고자 한다.

§ 4. 法人의 分類

1) 目的에 依한 分類

法人의 目的이 純粹非營利公益法人은 民法第 32 條와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 4 條의 規定에 依한 法人으로서 非營利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및 公益社團法人과 財團法人 등이 있으며 各 單行法에 依한 法人으로서 學校法人 社會福祉法人 醫療法人 등은 모두 財團法人에 屬한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非營利, 非公益法人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 등은 特別法의 規定에 따라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으로 區分하고 各種 組合法인과 特殊法人等도 關係法令의 規定에 따라 分類한다. 또한 純粹營利法人은 特

別法 또는 商法の 規定에 依한 社團法人으로서 株式會社, 合資會社, 合名會社等 商事會社 設立의 條件에 좇아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民法 第 39條)

그리고 法人이 아닌 社團과 財團으로서 純粹한 親睦團體와 同窓會 等도 있다.

2) 組織에 의한 分類

組織에 의한 分類는 法人의 組織形態가 사람의 集團과 財産의 集團으로서 權利 能力이 없는 社團 또는 財團과 權利能力이 있는 社團과 財團으로 區分할 수 있다. 權利能力이 있는 法人은 非營利, 公益法人 및 營利法人과 純粹한 營利法人, 그리고 非營利, 非公益 法人等 그 法人의 組織形態에 따라 財團과 社團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러므로 法人組織의 形態가 財産의 集團일 경우에는 財團法人으로서 非營利公益財團法人과 非營利公益特殊法人 및 組合法人 等으로 分類할 수 있고 法人의 組織形態가 사람의 集團일 경우에는 社團法人으로서 여기서는 非營利公益社團法人과 特殊法人 및 組合法人 等으로 區分하는 外에 利益을 추구하는 純粹營利法人으로도 區分할 수 있다.

“例”(株式會社, 合資會社, 合名會社 등)

3) 法人의 綜合分類

法人을 綜合的으로 分類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法人全體에 걸친 種類를 法的根據에 依하여 分類하고 Graaf 로 表示하였다.

Graaf 에 나타난 法人을 편의상 外國法人과 內國法人은 最廣義의 法人으로 하고 公法人과 私法人은 廣義의 法人 그리고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은

狹義의 法人으로 分類하였으며 其他 各單行法에 依한 各種 法人은 最狹義의 法人等으로 區分할 수 있다.¹³⁾

이와같은 法人의 分類方法은 研究者의 개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法的根據와 民法學者들의 견해는 內國法人이든 外國法人이든 거의 同一하게 分類할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에서 說明한 各種法人의 大分類와 中區分類 그리고 小分類等の Graaf는 <表1>에서 보는 바와 같다.

§ 5. 自然人과 法人

自然과 法人의 生態的 현상을 比較하면

① 自然人이 胎生하면 母胎로부터 胎中教育이 必要한 것과 같이 法人도 自然人的 그것과 같이 設立中에 設立趣旨文等 같은 研究를 必要로 한다.

② 自然人이 胎生하면 일정한 기간 母胎에서 자라다가 出生하면 4週以內에 出生申告를 하여 戶籍을 가지는 것과 같이 法人도 일정한 處理期間을 거쳐 主務官廳의 許可 또는 認可가 되면 3週以內에 設立登記를 하고 自然人的 戶籍과 같은 登記簿를 所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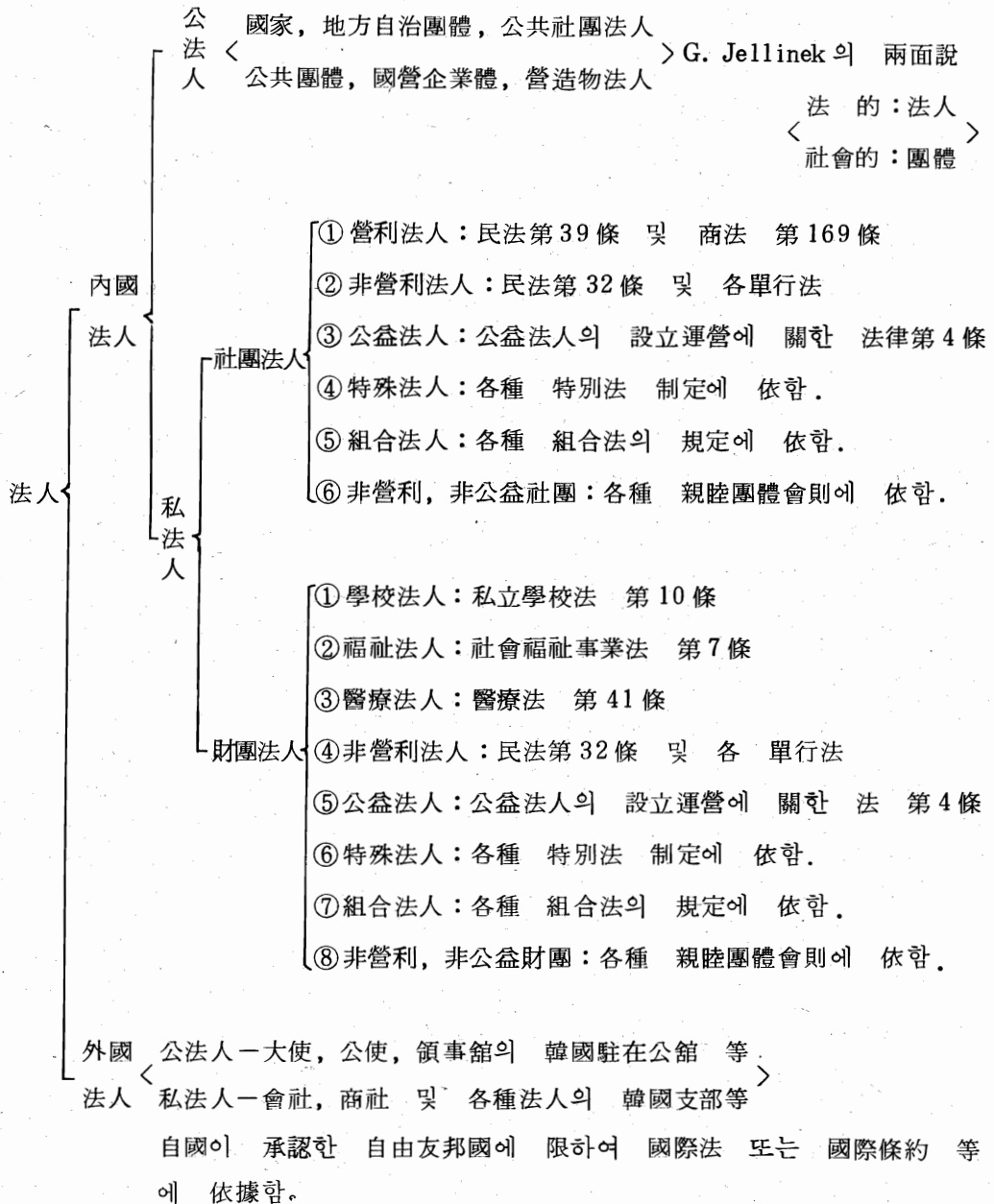
③ 自然人이 財産을 所有할 수 있는 것과 같이 法人도 形體는 없지만 財産을 所有할 수 있다.

④ 自然人的 構成이 細胞, 組織, 器官, 系統으로 형성된 것과 같이 法人의 構成과 個人, 會議 理事 主務官廳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註 13) 金國道, 社會福祉法人 무엇이 問題인가? 社會福祉誌 83 봄호, p.129.

<表1>

法 人 의 綜 合 分 類



資料: 韓國法人問題研究所, 1980.

⑤ 自然人이 外國人과 內國人, 公人과 私人이 있는 것과 같이 法人도 外國法人과 內國法人 그리고 公法人 및 私法人 등이 있다.

⑥ 自然人中 健康人과 虛弱人 및 失業人, 疾病人 등이 있는 것과 같이 法人도 健全法人과 不實法人 그리고 休眠法人 解散 또는 取消法人 등이 있다.

⑦ 自然人이 犯罪하면 自由刑에 處하듯이 法人이 犯罪하면 財産刑에 處하게 된다.

⑧ 自然人的 業務主體가 雙罰主義인 반면에 法人의 業務主體는 兩罰規定을 定하고 있다.

⑨ 自然人이 事業의 性質과 種類 그리고 所得額에 따라 納稅義務를 지듯이 法人도 그가 行하는 事業의 種類에 따라 稅金을 納付해야 한다. 다만, 非營利公益法人에 限하여 그가 行하는 固有目的 事業에는 全面 免稅되어야 한다.

⑩ 自然人 즉 한사람이 여러곳에 事業體를 둘수 있는 것과 같이 法人도 定款의 規定에 따라 여러곳에 多樣的 事業體를 둘수 있다.

以上과 같은 自然과 法人의 異同性을 Graaf로 要約하면 <表2>에서 보는 바와 같다.

第3節 法人設立의 法的構造

§ 1. 法人의 設立主義

法人의 設立主義는 立法主義國家에 있어서는 團體에 對한 政策이 時代이 흐름에 따라 變化하였으며 같은 時代에서도 各團體의 社會的 機能에 따라 差를 볼수 있다.

<表2>

自 然 人 과 法 人 의 比 較

自 然 人	法 人
1) 胎生하면 胎中教育	1) 設立準備, 綜合研究
2) 出生하면 4 週以內 出生申告	2) 許可되면 3 週以內 設立登記
3) 有形: 財産의 所有	3) 無形: 財産의 所有
4) 構成: 細胞, 組織, 器官, 系統	4) 構成: 個人, 理事, 會議, 主務官廳
5) 健康人, 虛弱人, 失業人, 疾病人	5) 健全法人, 虛弱法人, 不實法人, 休眠法人
6) 外國人, 內國人, 公人, 私人	6) 外國法人, 內國法人, 公法人, 私法人
7) 刑事責任: 自由刑	7) 刑事責任: 財産刑
8) 業務主體: 雙罰主義	8) 業務主體: 兩罰規定
9) 納稅義務: 税金納付	9) 目的事業: 免稅惠澤
10) 1 人多處事業遂行	10) 1 法人 多處事業 遂行

즉 制限된 助長 그리고 自由放任과 强制設立等の 政策에 따라 特許主義와 許可主義, 準則主義, 自由設立主義, 强制設立主義 등으로 그 主義가 各各 다르며 또한 法人의 種類에 따라 各種 主義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1) 特許主義

法人設立에 있어서 特許主義는 國家가 特定한 事業遂行을 위하여 法人을 設立코자 特別法을 制定하고 그 法에 依하여 法人을 設立하는 主義를 말하며 이는 國家運營上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財政金融産業等に 關한 政策을 統制強化하는 뜻에서 一定한 企業에 法人格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韓國銀行, 韓國電力, 造幣公社, 石炭公社 등이 이 特許主義에 依하

여 設立된 法人이다. 이 特許主義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을 特殊法人이라고 한다.

2) 許可主義

許可主義는 民法上 非營利法人으로 設立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認定될 때에 그 設立을 許可한다. 그러나 許可主義는 當該官廳의 自由裁量에 달려있기 때문에 法人設立許可에 있어서 많은 制限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民法 第 32 條의 根據에 依하여 종전에 財團法人이었던 教育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 1963 年 法律第 1362 號로 公布된 私立學校法에 依하여 許可(私立學校法 第 10 條)하는 學校法人과 證券去來所法等 各單行法에는 許可主義를 採擇하고 있다.

3) 認可主義

認可主義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法人設立의 要件만 갖추어 認可申請을 하면 主務官廳은 반드시 認可해 주어야 하는 主義를 말한다. 예를 들면 辯護士法, 醫療法, 藥師法, 農業協同組合法等を 들 수 있으며 從來民法 第 32 條에 依하여 許可主義를 採擇하였던 各種 社會福祉事業을 目的으로 하여 設立되었던 法人도 社會福祉事業法이 制定公布됨에 따라 認可主義에 依하여 設立하게 되었다.

4) 準則主義

法律이 定하는 要件을 갖추고 一定한 節次에 依하여 公示하면 당연히 法人格이 부여되는 法人設立의 準則主義는 大體的으로 成立要件이 設立登記인 것이다. 民法 第 39 條 및 商法 第 192 條의 規定에 依한 營

利法人과 勞動組合法 第 139 條 等에 의한 組合法人 等은 이 準則主義에
依하여 設立되며 主務官廳의 許可 또는 認可要件인 定款 또는 其他 規約
의 審査等を 받지 않는다는 點에서 許可主義 또는 認可主義 보다는 法
人設立이 自由롭다고 볼수 있다.

以上 各種 設立主義보다 더욱 自由롭고 簡易한 法人의 設立主義인 自
由設立主義가 있고 國家政策의인 見地에서 法人의 設立에 있어 現代法律
制度의 基本 原則下에 있어서는 몇가지 問題가 있다고 하겠다.¹⁴⁾

§ 2. 法人의 設立 要件

團體의 設立이 法律上 許可를 받는 것은 團體構成의 自由라는 基
本的人權의 問題가 있으며 또한 財團設立이 許可를 받는 것을 所有權의
自由라는 私有財産制度에 問題가 있다. 卽 法人格에 關한 私法上的 問題
를 行政官廳의 裁量에 委任한다는 것은 現代社會의 政府組織에 關한 基
本原則과 調和되지 않는 것이다. 主務官廳의 自由裁量權으로 法人設立이 不
當하게 抑壓되고 官廳의 法人格 부여를 一種의 特權利益을 부여한다는 등
의 생각으로 그릇된 官僚主義를 助長하게 된다.

法人設立의 許可와 認可等은 그 監督과 分離하여 法人設立은 自由롭게
하고 그 監督을 強化하여 指導監督을 철저히 할 수 있는 具體的인 政策
方向과 Program이 成案되어야 할 것이다.¹⁵⁾

이러한 點에서 法人設立에 關한 諸主義中 어느것을 採擇하는 것이 좋
은가 하는 것은 各主義마다 長短點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느 한 主

註 14) 川島武宣, 民法總則, 日本國 有斐閣, 1978, p.87.

15) 張庚鶴, 新民法總則, opcit, p. 265.

義만을 지적할 수 없으나 本研究者는 法律이 定하는 一定한 要件을 充足할 境遇에는 法律上 當然히 法人格을 부여하는 準則主義를 支持한다. 그 이유는 團體의 組織內容이 不實한 點이 있어도 法人設立後에 指導監督으로 補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社團法人設立要件

非營利公益社團法人의 設立 要件은 學術, 宗教,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아닌 事業과 自活할 수 없는 者를 돕기 위한 모든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民法 第32條 및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40條 參照)

2人以上の 設立者가 社團法人의 根本規則인 定款을 作成하고 設立者等이 署名捺印하는 設立行爲가 있어야 한다. (民法 第40條 및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 第11條 參照)

法人의 定款에는 반드시 記載하여야 하는 絶對的記載事項과 設立者 또는 主務官廳의 要求에 依하여 記載되는 任意的記載事項 등이 있다.

絶對的記載事項은 法人의 設立趣旨文, 目的, 名稱, 事務所의 所在地 資産 및 任員에 關한 規定, 社員의 資格 得失에 關한 規定, 存立 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한 때는 그 時期 또는 事由等を 記載하여야 한다. 그리고 任意的記載事項은 絶對的 記載事項以外 設立者가 必要한 事項 즉 部署組織, 高문의 役割, 法人의 運營規定, 施行細則, 賞罰規定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任意的記載事項도 定款에 記載된 後에 主務官廳에 許可되면 그 效力은 絶對的記載事項과 同一한 것이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定款變更의 節次를 거쳐야 한다.¹⁶⁾

註 16) 金國道, 法人指導監督論, opcit., p.21.

2) 設立行爲의 性質

社團法人의 設立行爲 卽, 定款의 作成은 어떤 性質을 갖는 法律行爲이나 하는 것으로 壓倒的 多數說은 合同行爲說이고 一部 小數說은 團體的效果發生을 目的으로 하는 特殊한 契約이라고 한다. 契約으로 보는 理論에서는 一般契約과 다른 法人設立行爲의 特色은 그로 인하여 團體를 만들고 意思를 表示한 者가 그 構成員이 된다고 하는 團體的效果의 發生을 目的으로 한다는 點에서는 社團法人 設立行爲가 契約이라고 하는데 조금도 무리가 없으나 契約이란 當事者 各者가 相互間에 債權債務를 發生케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것이 아니라는 點에서 契約이라고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協同해서 이루어 지는 單獨行爲에 가깝다. 그러나 設立行爲는 반드시 2人 以上이 合同해서 行爲를 해야 함으로 우연히 協同한 單獨行爲와는 다르므로 결국 契約도 아니고 單獨行爲도 아닌 合同行爲 또는 協同行爲라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고 본다.

3) 財團法人의 設立要件

非營利公益財團法人의 設立要件에 營利가 아닌 事業과 순수한 公益事業이 目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非營利公益社團法人과 같으나 財團法人의 設立行爲는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法人의 根本規制인 定款을 作成하여야 한다는 點에서 社團法人의 設立行爲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民法 第 32 條 및 43 條) 出捐財産의 種類는 制限하지 않고 確實한 것이 라면 債權도 여기 包含할 수 있다. 그러므로 財團法人의 設立行爲는 財産出捐이 필수적인 要件이기도 하다. 그 出捐財産의 歸屬時期에 관하여는 民法 第 48 條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같이 生前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

하는 때에는 出捐된 財産은 法人이 成立된 때로부터 法人의 財産으로 歸屬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있다. 또한 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에는 그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生한 때(出捐者の 死亡時)에 出捐財産이 法人에 歸屬한다는 것이다.

財團法人의 設立도 根本規則인 定款을 書面으로 記載하여 署名捺印한다는 점은 社團法人과 같으나 絶對的記載事項中 社員의 資格得失에 관한 規定과 存立時期와 解散事由에 規定도 絶對的記載事項에서 除外한다. 그러므로 財團法人의 絶對的 記載事項은 民法 第40條第1號 내지 第5號에 定한 規定을 모두 記載하여야 그 定款의 效力이 發生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設立者가 定款의 絶對的記載事項中 重要な 目的과 資産에 관한 事項만을 定하고 死亡하였을 때에는 死亡者の 意思를 尊重하는 뜻에서 上記事項 以外에 比較的 輕微한 事項에 관하여는 法院이 利害關係人 또는 檢事의 請求에 依하여 이를 補充하여 法人을 成立하게 할 길이 열려져 있다. 이것을 定款의 補充行爲라고 한다.(民法 第44條) 따라서 遺言으로 設立行爲를 하는 경우에는 絶對的記載事項以外에 遺言의 內容에 따라야 하고 財團法人은 무상으로 財産을 出捐하는 것이므로 贈與 및 遺贈에 관한 規定이 準用된다.(民法 第47條)

4) 設立行爲의 性質

財團法人의 設立行爲도 定款의 作成이라는 節次를 거쳐야 하므로 要式行爲이며 또한 契約이 아니라는 점은 社團法人設立行爲의 性質과 같으나 그 性質을 單獨行爲라고 볼 것이냐 合同行爲로 볼 것이냐에 관하

여는 論議가 된다.

設立者가 1人인 경우에는 相對方없는 單獨行爲로 보는데는 疑問이 없으나 設立者가 2人 以上인 경우에는 學說이 갈라지고 있다.

이 경우에 單獨行爲의 結合이라고 보는 見解와 任意的 合同行爲로 보는 見解가 있다. 後者の 見解는 財團法人의 設立行爲는 性質上 合同行爲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른바 任意的合同行爲이며 社團法人의 設立行爲가 必要的合同行爲라는 것과 다르다고 한다.¹⁷⁾

그러나 張庚鶴教授는 財産의 出捐行爲는 一種의 財産處分行爲인 만큼 財産의 主體者가 單獨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一種의 單獨行爲라고 하였으며 여러사람이 共同으로 財産을 出捐하여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은 單獨行爲가 뜻밖에 競合하는데 不過하다고 하였다. 그 理由는 財團이란 社會的維持體를 構成하는데 目的財産을 移轉하는 行爲로 區分하지만 이 單獨行爲는 目的財産을 設定할 뿐이며 그 目的財産自體가 法人格을 取得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法人設立뒤에 그 法人에 財産을 提供하는 것이 아니라 財産提供 그 自體가 財團設立인 것이다.¹⁸⁾

§ 3. 法人의 機關

法人이 獨立된 人格者로서 社會的으로 活動하려면 內部的으로 法人의 意思를 決定하고 外部的으로는 法人을 代表하는 一定한 組織이 必要하다. 이 組織을 構成하는 것이 法人의 機關 또는 法的構造라고 한다.

註 17) 金顯泰, 新民法總則, 敎文社, opcit, p. 170

18) 金國道, 法人管理, 江文社, 1976, p.41.

法人의 機關에 대한 性質은 擬制說과 實在說에 있어서 差異가 있다.

前者는 法人의 外部에서 法人과 對立하는 別個의 法人이며, 그것은 擬制人인 法人의 代理人인데 反하여 後者는 自然人에 있어서의 頭腦나 手足과 같이 法人이라는 既成部分으로 그 存在와 活動을 담당한다고 본다. 法人의 機關 및 監督機關等이 있으나 法人의 種類와 法律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社團法人은 自律的 法人으로서 最高必須의 意思 決定 機關인 社員總會를 갖지만 他律的法人으로 目的財産의 出捐이 必須的 設立要件인 財團法人에는 社員이 없으므로 社員總會를 갖지 않는다. 代表機關 및 執行機關인 理事는 모든 法人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必須機關이지만 監督機關은 法人의 種類에 따라 法律은 必須機關으로 정하기도 하고 任意機關으로 정하기도 한다. (民法 第66條, 商法 第312條 및 409條 參照)

1) 意思決定機關

社團法人의 意思決定機關은 社員總會를 말하며 財團法人에 있어서는 實質的으로 理事會가 決定한다.

社團法人의 構成員인 社員은 누구나 平等한 意思의 主體라고 하는 民主主義的前提下서 社團法人의 運營은 모든 社員이 決定權을 가질수 있어야 함으로 이것을 위한 組織이 全社員에 依하여 構成되는 社員總會이다.

社員總會에 있어서 갖는 全社員의 表決權은 原則上 社員總會 및 定款으로도 배앗지 못한다.

社員은 社團法人의 構成要素이지만 法人의 機關은 아니다. 그러나 最高의 意思決定機關인 社員總會를 당연히 構成하고 法人自體의 構成要素로서

의 資格을 兼有하며 또한 法人에 대하여 여러가지 權利를 갖고 義務를 부담한다.¹⁹⁾

社員總會를 理事가 每年 1回以上 召集하지 않으면 안되는 通常總會와 (民法 第69條) 理事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民法 第70條)와 總社員의 $\frac{1}{5}$ 以上이 會議의 目的事項을 提示하여 請求하는 때 및 監査가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 (民法 第69條)에 열리는 臨時總會가 있다. 總會의 召集은 1週前에 그 會議의 目的事項(議事日程)을 記載한 通知를 하고 其他 任員에게 委任한 것을 除外하고는 法人의 運營에 關한 모든 事項에 關하여 決定할 權限이 있다. (民法 第68條) 그러나 民法은 總會를 年1回 程度로서도 可能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어 實際에 있어서는 社團 法人의 運營을 一般的 包括的으로 理事 또는 理事會에 委任하는 경우가 많고 總會는 法律上 總會의 決議를 要하는 定款變更(民法 第42條) 및 任意解散(民法 第77條)外에는 一定會計期間의 豫算 및 業務執行을 審査承認하는 程度이다.

2) 執行機關

法人의 必須機關인 執行機關은 原則적으로 理事이며 (民法 第57條) 이 밖에 臨時理事(民法 第63條) 特別 代理人, 請算人(民法 第82條)의 職務權限이 制限된 執行機關이 있다. 理事의 人員數는 制限하지 않고 定款에서 任意로 定하여 理事가 될 수 있는 一般的인 資格要件은 自然人임을 要하는 것이 通說이다. 그러나 公權薄奪者 또는 公權停止者로서의 刑의 宣

註 19) 峯川光郎外 2名, 法學講義, 靑林書院, 1975, pp.209-211.

告를 받은 者는 될수 없다. 理事의 任免에 關한 具體的인 要件이나 節次는 定款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 (民法 第40條 및 第43條) 理事의 姓名 住所는 登記事項이며, 登記를 하지 않으면 그 選任과 解任 및 退任을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民法 第54條) 理事의 職務權限은 事務執行(對內的關係)과 法人의 代表(對外的關係)로 區分된다.²⁰⁾

事務執行의 權限으로 理事는 定款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에 따라 法人의 內部的 事務를 全般的으로 處理하고 理事가 數人인 執行機關은 理事의 過半數의 同意로서 決定한다. 民法上으로는 當然히 理事會가 法人의 機關이 되는 것은 아니나 定款에서 法人의 執行機關으로 할 수 있다. (商法 第39條以下參照) 理事의 主要한 事務는 登記財産目錄 및 社員名簿의 作成, 破産宣告의 申請等 事務를 泰만히하여 과태료의 處分을 받을 수 있는 事務와 總會의 召集, 法人解散의 경우 請算人이 되는것 등이 있다. 그리고 理事의 選任行爲는 一種의 委任契約이므로 理事는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로서 忠實하게 그 職務를 執行하여야 한다. 따라서 民法은 法人을 保護하려는 취지에서 그 理事들이 任務를 泰만히 함으로서 法人에게 損害를 끼칠 경우에는 連帶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도록 하였다.

法人代表者의 職務權限에 있어서는 理事가 法人을 위하여 한 行爲는 法人의 行爲로 認定하며 따라서 그 行爲의 效果는 모두 法人에게 생긴다. 代表權을 行使할 수 있는 범위는 原則上 業務執行權의 範圍와 같다.

3) 監督機關

監事는 法人의 必須機關은 아니고 定款 또는 社員總會의 決議로 둘

註 20) 峯川光郎外 2名, 法學講義, Ibid., p.187.

수 있으므로 任意機關이며 그 人員數도 制限하지 않는다.

監事の 資格과 選任 또는 解任方法等은 모두 理事에 準하고 있으나 監事の 住所 姓名은 登記事項이 아니다. 監事の 職務權限은 理事의 業務執行이 當然하고 妥當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監査하는 것이므로 對外的으로 法人을 代表할 權限은 없다.

監事の 職務로서 民法은 法人의 財産現況 또는 業務執行에 관하여 不正不備한 것이 있음을 發見한 때에는 이를 總會 또는 主務官廳에 報告하여야 한다.(民法 第67條) 21)

註21) 金國道, 法人基本財産에 關한 研究, opcit, p. 38 ~ 39.

第3章 法人의 財産과 福祉事業

第1節 法人의 財産

非營利公益法人의 財産이라 함은 一般的으로 그 定款 또는 各單行法에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으로 區分하고 있다. 營利法人의 財産은 私的利益追求를 爲하여 出資된 財産으로서業務遂行의 與否는 私的利益과 關係된다. 따라서 各種 會社의 財産管理는 運營에 대한 그 構成員의 利益이 그들 相互의 對立關係에 依하여 스스로 견제된다. 이러한 點에서 法律은 私的利益에 대한 租稅負擔을 적절하게 配慮하면 充分할 것이다.

그러나 非營利公益法人에 있어서는 그 財産이 社會에 重要的 影響을 주게 되며 公共의 福祉에 관하여서도 有害한 活用을 防止하기 위하여 그 財産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 하여금 철저한 監督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非營利公益法人의 財産에 各種 稅金을 課稅한다는 것은 社會福祉를 위한 公益事業에 차질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또한 非營利公益法人의 內部에 있어서는 相互對立하는 利害關係가 없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그 機能이 없기 때문에 法人의 目的財産 즉,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이 그 目的을 위하여 充實히 活用할 수 있게 하려면 各種 租稅減免惠澤을 주는 반면에 相互 自主的 監督과 主務官廳의 監督이 專門化되어야 한다.

以上과 같은 2 가지 點에서 非營利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行政監督의 必要性이 있기 때문에 現行民法과 公益法人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

은 許可主義를 擇하였고 許可後에는 主務官廳의 監督을 받으며 租稅減免 規制法 및 各單行法에 法人의 固有目的事業에 直接 使用되는 財産에는 課稅를 禁하고 있다.(民法 第32條 및 37條, 公益法人設立및運營에關한法律 第15條參照) 社會福祉法人은 民法과 달리 法人設立에 있어 主務官廳의 自由裁量權을 어느정도 배제하는 認可主義를 採擇하고 있으나 設立後에는 보다 現實的으로 主務官廳의 檢査監督을 強化하고 있다.²²⁾ (社會福祉事業法 第7條 및 第16條 參照)

法人의 事務를 主務官廳에서 檢査監督한다는 것은 目的事業을 圓滑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檢査하는 것이므로 租稅問題와 直結되는 것이다. 그 理由는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公益法人 등은 目的事業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主務官廳行政指示 및 許可條件等を 위반하게 되면 그 許可 또는 認可의 취소요건이 되기 때문이다.²³⁾

民法 第38條와 社會福祉事業法 第16條 및 第23條에 規定한 立法精神에 依하면 社會福祉法人 및 非營利公益法人은 根本的으로 非課稅法人으로서 오직 社會福祉事業 또는 순수 非營利公益事業에만 集中해야 할 것 인바 課稅對象이 되어 租稅負擔을 한다는 것은 目的以外의 事業을 行하

註 22) 民法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法人이 目的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設立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나 其他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註 23) 社會福祉事業法 第16條(指導監督等) ①保健社會部長官과 道知事は 法人의 業務 및 財産運用에 關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②保健社會部長官은 法人 또는 任員이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거나 公益을 甚히 害할 우려가 있는 行爲를 한 때에는 그 法人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거나 任員의 認可를 取消할 수 있다.

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法人에 莫大한 税金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그 法人이 營利事業을 하였다는 증거가 됨으로 許可 또는 認可는 取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²⁴⁾

第2節 法人의 運營

§ 1. 法人 不法行爲의 責任

法人에게 不法行爲能力이 認定되느냐에 관하여는 法人學說에 따라 다르게 說明되고 있다. 現代社會의 經濟發展은 法人의 社會生活에 있어서의 比重이 增大하고 있다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으나 法人의 學說中 英美法系統에서는 不法行爲能力을 肯定的態度를 취하였고 大陸法 系統에서는 一般的으로 否定的 態度를 취하고 있다.²⁵⁾

法人의 의제설은 法人을 그 目的의 範圍內에서 보면 法에 依하여 의제된 存在로 考察되기 때문에 不法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法人이 許可될 수 없다는 理由에서 法人의 不法行爲 責任을 否定하였다.

그러나 法人의 實在說에 依하면 法人은 스스로의 意思에 의하여 行爲를 하는 것이므로 때로는 機關의 行爲를 通하여 他人에게 不法으로 損

註 24) 社會福祉事業法 第 23 條 (許可取消等) 保健社會部長官과 道知事は 施設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施設의 改善 또는 事業의 停止를 命하거나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施設이 設置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2. 正當한 理由없이 事務檢査를 拒否하거나 기피한 때. 3.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하였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때.

註 25) 鄭榮錫, 刑法總則, 1974, 法文社, p.75.

해를 끼치는 일이 있을수 있다고 하였다. 이 경우에 法人의 不法行爲도 賠償責任이 있다는 것은 當然한 것이다.²⁶⁾

以上과 같은 點에서 民法 第35條는 法人의 不法行爲責任을 規定하고 즉, 法人은 代表機關의 行爲와 職務에 關하여 加害行爲를 하였을 때 또는 機關의 行爲 그 自體가 不法行爲에 해당하는 要件을 갖추었을 때는 不法行爲의 責任을 진다.

§ 2. 法人에 대한 罰則

民法第 97條에서는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清算人이 그 職務를 忠實히 이행하지 못할 때는 5萬元 以下の 過怠料에 處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社會福祉事業法 第 25條~27條에서는 民法에서 보다 더욱 罰則을 強化하고 있다. 그 理由로서는 民法은 許可主義를 取하고 있으나 社會福祉法人은 認可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點과 從來의 社會福祉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의 不法行爲를 보다 強力하게 規制해 보겠다는 影響이 많았던 것이다. 民法에서 말하는 過怠料는 金錢罰의 一種이기는 하지만 罰金이나 科料와는 다른것이다. 이른바 前者는 秩序罰이고 後者는 刑事罰인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民法上 金錢罰로서 秩序罰에 그친데 比하여 社會福祉事業法에서는 體刑까지 包含한 刑事罰을 規定하고 있다. 民法 第 97條에서 法人의 理事, 監事 또는 清算人에게 있는 事項은 登記를 懈怠한때 財産目錄 및 社員名簿의 作成備置 違反 또는 不實記載를 한때, 檢査監督을 妨害한 때, 主務官廳의 命令을 위반한 때 등으로 되어 있으며

註 26) 川島武宣, 民法總則, opcit, p.126.

社會福祉事業法은 法人에 補助된 補助金을 目的外使用時는 5年以下の 懲役 또는 50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하고(社會福祉事業法 第25條 參照) 社會福祉事業法 第26條 規定에 依하면 收益事業에 對한 停止命令을 받고도 계속 行하는 者와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施設을 設置運營한 者에 대하여는 100萬圓以下の 罰金에 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社會福祉事業 또는 社會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者가 그 業務遂行過程에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秘密을 누설한 者도 100萬圓의 罰金에 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法 第27條에 의하면 社會福祉法人은 종사자 $\frac{1}{3}$ 以上の 社會福祉士를 採用하여야 하며 이중 $\frac{1}{5}$ 以上은 1급 또는 2급의 社會福祉士를 採用하도록 되어 있다.(단순한 노무직에 종사하는 자를 除外한다)

또한 社會福祉施設長이 主務官廳의 許可없이 收容된 本人 또는 扶養義務者로부터 그 費用의 一部 또는 全部를 收納한 者와 法人의 名稱을 부당하게 使用하거나 法人의 主된 事務所에 法定書類를 備置하지 아니한 때 등도 各各 100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하도록 되어 있다. 以上에서 民法과 社會福祉事業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法人에 關한 監督의 內容과 罰則은 社會福祉事業法이 더욱 強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民法 第32條의 非營利法人의 規定을 補完하기 위하여 새로이 制定公布된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依하면 學資金, 獎學金 또는 研究費의 補助나 支給, 學術, 慈善에 關한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 卽, 公益法人에 對하여 그 公益을 維持하며 健全한 活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法の 重要 骨子는 公益法人, 定款의 記載事項을 強化하고(第3條參照) 法人設立의 基準을 強化하는 등 主務官廳의 監督權을

擴大하였다.(第4條參照)

또한 任員의 數도 制限하였으며(第5條參照)理事의 構成과 그 機能 및 召集議決定足數 等の 規定도 強化하였다.(第6~9條參照) 그리고 監事의 職務를 強化하는 한편 財産의 管理規定과 豫算決算의 報告規定도 強化하였다. 따라서 法人이 해산되면 殘餘財産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하게 되어 있다.(第10~14條參照)

또한 法人設立許可의 規定은 目的事業을 圓滑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限하여 許可하도록 되어 있어 主務官廳의 裁量權이 무한정 부여되어 있으므로 職權濫用이 우려된다. 그리고 設立許可의 取消規定外 主務官廳의 監督上 必要한 業務報告書의 提出을 命하거나 財産管理 및 會計監査를 하고 目的事業을 圓滑히 遂行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第17條參照) 이법의 罰則規定은 最高3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0 萬圓 以下の 罰金에 處할 수 있도록 하였다.(第19條參照)

따라서 公益法人에 出捐하는 財産에 대한 相續稅, 賦與稅, 所得稅, 法人稅와 地方稅 等은, 租稅減免規制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는 稅務官廳의 裁量權을 주는 任意規定을 두고 있다.(第15條參照)

以上の 法人關係法律인 民法, 社會福祉事業法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을 中心으로 事務監査 및 罰則에 關한 規定을 比較 分析한바 民法 및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은 從前보다 設立前後의 監督을 모두 強化함으로써 社會篤志家の 公益事業에 대한 財産의 出捐을 막을 우려가 있으며 社會福祉事業法에 依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認可主義를 採擇함으로써 社會篤志家들의 財産 出捐에 依하여 法人設立이 容易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監督을 強化하고 있으므로 法人運營에 經驗이 없는 任員으로서는 健全한 法人育성이 困難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法人에 대하여는 그 監督은 處罰爲主의 監査보다는 主務官廳의 誠實한 指導에 依한 健全한 育成策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法人이 수행하는 모든 事業에는 모든 税金이 免除되어야 할 것이다.²⁷⁾

§ 3. 法人의 運營과 指導

우리나라의 各種 非營利 公益法人의 대부분은 그간 社會적으로 좋지 못한 印象을 받아온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 理由는 一部 法人의 設立者들이 公益을 빙자한 私益의 追求와 主務官廳의 指導 育成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處罰을 爲한 監査爲主의 監督을 하여 왔으므로 非營利公益을 目的으로 私有財産을 出捐한 法人의 設立者들이 反撥心으로 公益法人이 私益化되는 原因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法人의 主務官廳은 至大한 관심을 가지고 租稅關係法令等の 改定을 建議하는 等 誠實한 指導育成으로 設立者나 運營者에 대한 不信感을 解消하고 國民總和에 앞장선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一部 非營利 公益法人의 任員들은 大部分 設立 當初부터 非營利를 빙자한 脫稅營利行爲를 目的으로 少資本을 出捐하여 莫大한 財産을 蓄積하면서 부터 事業에까지 免稅惠澤을 받고 있는 事例가 許多한 것을 우리는 新聞紙上을 통하여 많이 보아왔다. 先進國의 非營利法人들은 社會적으로 尊敬을 받으며 行政官廳에서도 最高의 優待를 받고 있다는 것을 文獻을 통하여 알수 있다.²⁸⁾

註 27) 金國道, “法人基本財産에 관한 研究”, opcit., p.54.

28) 厚生白書, 日本國, 厚生省, 1973, p.329.

그 理由는 非營利 公益法人에 財産을 出捐한 任員들은 아무런 利害關係없이 國家와 社會의 發展을 위한 公益事業과 奉仕活動에만 專念을 하고 있기 때문에 主務官廳은 물론 社會的으로 그들의 業績을 讚揚하고 그들의 信念을 높이 評價하게 되며 따라서 法人의 設立者 또는 運營者는 보람을 느끼며 社會公益에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先進國家들과는 對照적으로 後進國 또는 開發途上國의 非營利法人들을 痼疾의인 貧困을 脫皮하지 못하고 不實한 상태가 계속되나 사실상 自然人이 法人에 存在하여 그 生活를 營爲하고 있기 때문에 任員들의 利益만으로 法人의 終末을 告하게 되는 法人들이 날로 增加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法人의 設立者 또는 運營者에게만 그 責任이 있는 것이 아니라 主務官廳의 責任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法人의 올바른 指導育成策은 行政上의 制裁나 罰則의 強化만으로는 올바른 指導育성이 不可能할 것이다.

法人의 固有目的事業인 公益事業만을 健實하게 遂行할 경우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에서 財政的, 行政的 支援은 고사하고 事業의 收益性이 많다는 理由로 法人固有目的事業에 莫大한 稅金을 賦課하게 되면 法人은 이에 對한 타격을 받아 事業의 意慾을 상실하고 法人의 固有目的事業을 離脫하여 私益行爲만을 자행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法人의 虛點을 惡用하여 法人의 自進解散과 同時에 基本財産까지도 도피시키는 脫法行爲가 盛行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行爲를 事前에 防止하고 健全한 指導育성을 기하려면 主務官廳이나 關係公務員들이 法人의 管理者와 더불어 問題를 論議하고 發展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相互協調와 指導하며 격려한다면 그들은 自負心을 가지고 自進해서 公益法人에 財産을 出捐하고 目

의事業에 全力을 다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可能한 範圍內에서 法律上 特惠措置를 保障하여 주고 不條理한 方法으로 法人을 運營할 경우에는 法人運營에 國家가 直接 介入함과 同時에 強力한 刑事責任을 加하는 確固한 政策方向이 要請된다.

즉 特惠措置의 保障이란 法人의 事業에는 租稅負擔을 全面 禁止시키고 法人에 財産을 出捐한 者와 健全하고 誠實하게 運營한 者 등을 事業實績에 따른 비중으로 褒賞하고 그들이 은퇴할 時 年金形式의 固定給料을 支給한다는 등의 老後生活保障을 한다면 法人의 變則運營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오직 福祉國家建設에만 이바지할 수 있는 法人의 事業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²⁹⁾

第3節 社會福祉와 租稅問題

社會福祉法人과 其他 非營利公益法人의 租稅問題는 現行 各種 稅法에서 非營利公益性を 考慮하지 않고 단순한 個人과 法人으로만 分類하여 個人稅와 法人稅로 差等規定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法人中에서도 그 設立根據와 事業目的에 따라 營利와 非營利公益法人으로 區分課稅되어야 할 것인 바, 一部 現行 稅法上에는 法人의 性格도 勘案하지 않고 非營利公益法人을 營利法人과 같이 과중한 納稅義務를 賦課하고 있어 이의 再檢討가 要望되고 있다. 한나라의 租稅機能은 원래 國家運營을 위한 재원의 연출을 目的으로 하는 以外 經濟的 安定과 成長에 積極的으로 기여할 수 있는 主要 政策手段의 役割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經濟成長의 惠澤이

註 29) 金國道, 法人基本財産研究, Ibid, p. 55.

各所得階層에 公平하게 分配되도록 유도하는 所得再分配手段中の 하나가 資源의 效率의 配分이라는 價格機構 본래의 機能을 다하지 못할 경우 資源의 最適配分 裝置로서 利用된다. 過去 20餘年間 우리나라의 租稅制度는 財政自立 및 開發, 財政需要的 充足을 위해서 그리고 기간산업 중화학수출 등 成長戰略産業을 集中的으로 지원하는 政策的 도구로서의 役割이 중시되어 稅制 全般的 複雜性은 勿論 稅制公平性的 蹂躪과 資源의 效率의 配分機能의 相對的 저하를 초래하는 등 여러가지 問題點이 야기되고 있다. 特히 成長 일변도의 稅制運用은 모든 國民의 絕對的 所得向上에도 불구하고 階層間 所得隔差의 심화로 低所得 階層의 相對的 貧困感을 초래하여 社會問題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公平課稅制度를 全般的으로 구현시킬수 있는 現實的인 여러가지 여건이 우리나라에 성숙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하지 못하다.

1980年代와 1990年代 그리고 더 나아가서 21世紀를 조명해 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稅制와 바람직한 稅制의 실상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이와같은 問題意識에 입각하여 稅制改編의 基本方向을 摸索한다는 朝鮮日報企劃시리즈 「福祉産業社會爲한 稅制」를 檢討해 보기로 한다.

§ 1. 稅制效率性的 問題

稅制效率性和 關聯하여 제일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租稅負擔水準의 問題이다. 과연 우리의 租稅負擔水準은 높은 것인가?…… 이 問題가 제기되는 根本的인 理由는 租稅負擔이 높으면 民間部門의 經濟活動이 委縮되며 脫稅行爲가 助長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所得에 대한 높은 法的 稅率의 適用은 追加的努力에서 發

生하는 納稅者의 純假處分所得을 감소시켜 納稅者가 勞動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호하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效果가 發生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非營利公益法人이 非營利公益을 빙자한 脫稅 營利行爲를 한다는 것은 과중한 稅金이 負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租稅負擔率의 경중을 把握하는데 흔히 使用되는 方法으로서 G.N.P에 대한 總 租稅負擔率의 도출과 이렇게 얻어진 수치를 토대로 하여 外國의 制度와 단순히 수평 비교하는 方法이 있다. 우리나라의 單純租稅負擔率은 財政收入을 위한 폭넓은 課稅強化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表<3>에서 보는 바와같이 1965 年의 8.5%에서 1970 年 14.8%, 1975 年에는 15.4%이며 1984 年에는 17.8%로 되어 每年持續적으로 높아져 왔으며 1984 年에는 19.0%로 上昇하였다. 第6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이 끝나는 1991 年에는 租稅負擔率이 22% 水準까지 올라갈 것으로 政府는 展望하고 있다. 全國經濟人聯合會所屬 韓國經濟研究院은 研究叢書에서 <表3>과 같은 根據로 우리의 租稅負擔 水準이 日本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表3> 租 稅 負 擔 平 均 比 率

年 度 別	租 稅 比 率	備 考
1965 年	8.5 %	GNP에 대한 總租稅負擔으로 計算하는 우리나라의 平均租稅負擔 比率임.
1970 年	14.8 %	
1975 年	15.4 %	
1980 年	17.8 %	
1984 年	19.0 %	

그 理由는 “첫째” 「國民租稅意識의 調査研究」에서 應答者의 52%가 租稅負擔이 무겁다고 答辯한 結果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租稅의 증가분이 所得의 증가분을 훨씬 앞질러 納稅者가 租稅부담을 과중하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經濟發展水準 및 政府의 移轉 支出 등을 감안한 純租稅負擔率로 보면 公式 集計마저 된 일이 없는 家計의 추가적인 防犯費, 汚物處理費, 防衛誠金等 準租稅의 負擔을 考慮한다면 우리나라의 租稅負擔水準이 日本보다 훨씬 높으며 先進國水準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租稅負擔率은 嚴格하게 어느水準이 적정하고 어떤 水準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한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問題에 대하여 올바르게 接近하는 태도라고 볼수 없다. 왜냐하면 일정한 時點에 있어서 한나라의 租稅負擔程度는 그나라의 經濟發展水準뿐만 아니라 政策目的 그리고 특히 國民들의 財政에 대한 慾求의 강도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財政需要의 크기나 그 水準에 依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理論적으로 볼 때 이 問題는 결국 財政의 最適規模의 설정이라는 問題로 歸結되며 이것은 全體 構成員들의 합치된 가치판단을 必要로 하게 된다. 그러나 어떠한 합치된 가치판단에 입각하여 租稅負擔率 問題를 다룬다해도 現行 우리나라의 稅制가 어떠한 役割을 하고 있으며 所得階層別 租稅負擔이 어떠한지를 正確히 把握하지 못하고는 租稅負擔率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릴수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教育, 福祉需要, 防衛費 負擔 등 財政需要의 불가피한 점 등을 전제로 한다면 公平性を 確保하면서 租稅收入을 증가시킬 수 있는 方法은 1次的으로 課標擴大를 하고 그래도 不足하면 稅率引上을 초래할 것이므로 必然的으로 租稅負擔을 擴大시키게

될 것이다.

§ 2. 稅制公平性の 問題

公平과 平等의 原則은 本質적으로 두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水平的 公平이며 다른 하나는 垂直的 公平이다. 前者는 같은 經濟力을 가진 個人 또는 家計가 同一額의 租稅를 부담한다는 것이며 後者는 서로다른 經濟力을 가진 個人 또는 家計가 公平하게 租稅를 負擔하기 위해서는 높은 經濟力을 가진 사람이 가벼운 租稅負擔을 낮은 經濟力을 가진 사람이 무거운 租稅負擔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問題가 되는 것은 公平의 原則을 適用하는데 있어서 먼저 어떠한 經濟力 또는 擔稅力을 基準으로 하여 課稅되어야 하는 問題이다. 消費支出 資産等이 個人의 經濟力을 나타낼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나 傳統的으로 租稅負擔配分の 公平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所得을 擇하고 있다.

사이몬즈 教授의 定義에 따라 所得을 넓은 뜻으로 資産의 純增加로 본다면 富의 純增이 어떠한 形態이던 또는 어떠한 원천에서 發生하였던 所得이 綜合적으로 合算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所得은 가장 包括적이고 유일한 擔稅能力의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包括의 所得稅體系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이 定義된 所得을 公平의 基本的인 척도로서 採擇한다.

따라서 水平的 公平의 原則은 어떠한 種類의 所得이라도 同額의 課稅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所得에 대해서 차별적인 稅率을 適用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課稅所得으로부터 除外한다는 것은 水平的인 公平의 原則을 유린하는 것이 된다. 垂直的인 公平을 實現하기

爲해서 累進課稅가 要請된다면 水平的인 公平의 原則은 모든 種類의 所得을 合算한 뒤 稅率을 適用하는 綜合課稅를 納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8 年에 施行되기 始作한 綜合稅를 數次에 걸쳐 適用對象을 점진적으로 擴大하여 오다가 1975 年부터 綜合所得稅를 施行함으로써 個人所得稅制의 近代化에 커다란 轉기를 가져왔다. 그런데 所得稅機能이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어 우리나라 稅制의 바람직 스럽지 못한 하나의 特徵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0 年에 國民 所得의 3.7%에 達하였던 綜合所得稅의 相對的規模가 1982 年에 2.7%로 크게 下落하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先進國 어디든 個人所得稅가 國民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下落한 事例를 볼수 없다. 이와같은 事實은 우리나라에서 直接稅의 대종인 個人所得稅가 바람직한 稅制가 갖추어야 할 公平性의 原則에 充實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個人所得稅의 機能이 弱화된 要因으로는 “첫째” 所得의 상당부분이 非課稅所得으로 處理하거나 또는 많은 種類의 所得이 課稅對象에서 除外되고 있다는 點 “둘째” 讓渡所得, 利子所得, 配當所得 등의 財産利得이 低率로 分離課稅되고 있어 全體所得의 完全綜合課稅가 되지 않고 있다는 點 그리고 “세째” 우리나라의 人的控除水準은 1974 年에 취해진 經濟活性化 措置이래 계속 인상조정되어 왔는데 서민 및 低所得層 保護라는 內外 壓力에 따라 조정된 높은 人的控除水準은 결국 個人所得稅機能의 弱화를 가져왔다. 現行個人所得稅의 두번째의 重要한 취약점 은 所得種類別 차등과세가 이루어져 租稅負擔의 輕重이 크게 저하되어 있으며 資源의 配分에 있어서도 非效率性을 초래하고 있다. 즉, 勤勞所得이 財産所得에 비해 重課되어 水平的 公平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같은 財産所得인 配當所得이 利子所得에 비하여 稅制上的 不利益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資本市場 育成을 통한 企業의 直接強化라는 政策 目標에 상충되어 결과적으로 企業의 財産構造 惡化의 要因이 되고 있다. 우리들의 特殊한 政治, 經濟인 狀況이 물고온 所得稅機能의 相對的弱화와 다른 한편으로는 所得稅 같은 直接稅로 稅收의 증대를 도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점차 증가하는 財政需要를 充足시키기 爲해서는 부담감이 相對的으로 적은 間接稅가 좋다는 주장이 관철되어 1977 年에 도입한 賦加價値稅는 間接稅 中心으로 稅制를 構築하는데 박차를 가하였다. 이것은 直間稅의 稅收比率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表 4>에서 보는 바와같이 1970 年에 總稅收에서 차지하는 直接稅比重이 約 44%에서 臺灣의 26%나 프랑스의 30%보다 높았으나 日本의 67%, 美國의 58%보다는 낮았다고 볼 수 있다.

<表 4>

總 收 에서 차지하는 間 接 稅

年 度 別	나 라 別	비 重	備 考
1970 年	韓 國	44 %	直接稅의 比重은
	臺 灣	26 %	1984 年에야 37 %
	프 랑 스	30 %	內外의 水準으로 머
	日 本	67 %	무르게 되었다.
	美 國	58 %	

그러나 直接稅比重은 그後 계속 낮아져서 1984 年에는 約 37% 內外의 水準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른바 直間稅比重에 관한 問題도 앞에서의 걱정 租稅負擔率의 問題처럼

럼 構成員 全員の 어떠한 가치판단을 必要로 한다. 直接稅를 稅制의 근간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直接稅, 特히 所得稅가 가지는 몇 가지 特徵 즉, 市場價格機構에 대한 中立性, 自動調整的作用, 應能負擔의 原則, 그리고 所得再分配機能 등을 그 주장의 根據로 提示하고 있다.

그 反面에 消費를 절약하고 貯蓄을 증대시켜 資本蓄積의 一益을 擔當할 수 있으며 租稅抵抗感이 相對的으로 작은 間接稅가 좋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實質的으로 볼 때 바람직한 直間稅 比率에 대하여 어떤 일정한 基準이 있는 것은 아니다. 美國이나 日本과 같이 直接稅의 比重이 큰 나라가 있는가 하면 프랑스나 臺灣같이 間接稅比重이 큰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1976 年度까지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直接稅 中心主義였으나 부가가치세의 能率的인 利用如何에 따라서 間接稅의 比重이 커질 展望이다. 그렇다고 해서 稅制에 어떤 결함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問題가 된다면 間接稅가 所得分配에서 逆進性을 緩和시키는 方案이 병행되고 있는가 하는 등과 같은 租稅의 公平公正의 問題 더욱 重要한 考慮 사항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視覺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現行 부가가치세는 所得分配의 逆進的인 機能을 最大한 抑制시키라는 취지에서 엄청나게 많은 品目들을 免稅對象에 包含시켰다. 그런데 問題는 重稅된 商品들이 반드시 低所得 階層만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高所得層도 똑같이 구입하는 事實이 나타난 것이다.

IMF의 研究팀이 作成한 韓國에 있어서 租稅의 負擔歸着報告書는 우리나라의 間接稅가 各 所得階層에 따라 극히 逆進的이라는 事實을 지적하고도 있지만 公平의 側面에서 부가가치세의 改善은 綜合所得稅의 補完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租稅政策에서 期待되는 所得再分配의 效果는 한계성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단순하고 유일한 公平度 또는 不公平度의 測定은 存在하지 않는다. 그 理由로는 分配形態의 變化는 多樣하며 그 可能性과 重要性 各自의 基本的인 가치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가장 貧困한 低所得階層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는데에만 再分配의 目標을 두는 사람에게는 最低水準以上の 所得階層間에 있을수 있는 公平度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反面에 所得 및 富의 集中的 편중을 적정한 所得分配狀態의 유일한 障礙要因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低所得層의 生活水準向上 與否와는 관계없이 있는 者와 없는 者의 不公平性を 저하시키는 것을 再分配의 基本目標로 삼을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豊饒와 貧困의 區別도 없이 平等社會의 道德的價值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있는 者에 대한 지나친 課稅를 주장하게 되어 國民所得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國民全體의 物質的 生活水準을 저하시킬수도 있을 것이다.

§ 3. 企業所得의 課稅問題

高度成長過程에서 노출된 企業의 病弊中 財務構造 惡化가 또 하나의 심각한 問題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自己資本比率의 低下 즉, 外部資金 依存度の 심화는 企業의 不況抵抗力和 國際的競爭力의 弱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稅制의 불가결한 要件으로서 資源의 效率的 利用과 課稅負擔의 配分公平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企業은 심히 왜곡된 2중 構造의 資本市場에서 運營되고 있으며 따라서

그 資本調達方法도 여타 先進國의 양상과 다르다. 그러므로 企業關聯稅制에 관한 限 當分간의 稅制面에서 企業體質強化에 重點을 두어야 하며 얼마동안은 稅制의 中立性 및 公平性의 離脫은 不可避하다고 생각된다. 企業이 必要한 資金을 調達하는 方法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는 借入을 통해서 조달하는 方法이고 둘째는 新株發行을 통하여 조달하는 方法이며 세번째는 社內 留保에서 充當하는 方法이다. 그런데 法人稅, 個人所得稅 配當의 2重課稅, 利子所得의 分離課稅, 支給利子の 課稅所得計算上 損金算入 등이 있으므로 企業에는 借入에 依한 資金調達方法이 新株發行 또는 社內留保에 依한 資金調達方法보다 항상 유리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稅制面에서 財務構造의 改善이 오히려 저해되고 있다는 點이다. 物價를 안정시키고 國際收支改善에 依한 外債減少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國內貯蓄을 제고시켜 投資財源의 自立成就가 必要하다. 이러한 側面에서 證券市場을 貯蓄의 場으로서 育成發展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이다. 첫째, 株式人口의 底邊擴大를 위하여 小規模投資家들의 심한 稅負擔을 緩和하는 措置로서 配當稅額控除率을 인상하여 그들의 重複課稅負擔을 充分히 除去하여야 한다. 둘째 現行稅制下에서는 配當所得이 2重 課稅되고 또한 配當所得이 利子所得에 비해서 稅制上的 상대적으로 資本市場育成을 통한 企業의 直接金融強化라는 政策目標에 상충되어 結果적으로 企業의 財務構造를 惡化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따라서 配當收益을 負債의 利子和 같이 損金算入을 許容하던지 이것이 不可能하다면 중과세의 負擔경감을 위한 配當額控除率의 全面的 引上調整이 있어야 할 것이다.

§ 4. 財産關聯稅制問題

富나 所得의 不公正한 分配가 賃金所得보다는 資本所得이나 財産과 關聯되는 諸稅는 所得稅의 公平課稅機能을 補完하는데 主目的이 있다. 또한 所得稅에서의 지나친 公平의 중요시는 效率을 저해한다는 事實과 現在 우리 社會가 要求하는 社會定義에 어느정도 부합하기 위해서 財産稅制의 改善方向이 時急히 檢討되어야 한다. 開發利益의 還收不動産의 과다한 保有抑制를 통한 需給의 圓滑化 投機心理抑制를 통한 자금의 生産的活用과 不動價格의 安定 및 土地의 效率的 利用等 여러가지의 問題點들을 解決하는 方案이 摸索되어야 한다. 財産關聯稅制가 能律的으로 履行되기 위해서는 特定한 資産의 眞正한 所有者 特히 無形의 資産 所有者를 把握하는 일과 現實의이고도 公정한 資産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두개의 問題가 解決되지 않으면 財産稅制의 改革은 租稅負擔上의 不公平性을 根本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유명무실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5 名의 權威者들은 말하고 있다.

앞으로의 稅制改善方向은 過去에 있었던 많은 稅制改革처럼 성급하게 우리나라 特有的 政治的, 經濟的 및 社會的 現實을 간과한 또는 基本哲學이 결여된 미봉책과 편의적 稅制改革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例컨대 根據課稅制度를 附加價值稅制를 通하여 實現하려는 발상 또는 綜合所得稅의 課稅與件도 造成되지 않았는데 實名制를 앞서 强行하려는 기도는 매우 危險하고 자칫하면 稅政當局의 독선적 行政을 유발하기 쉬우며 社會不安을 조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³⁰⁾

註 30) 金完淳外 4 人, “福祉産業社會爲한 稅制”, 1985. 10. 16, 朝鮮日報.

§ 5. 社會福祉年金과 課稅問題

社會福祉年金은 受惠者들에게 支給되는 純額數(net amounts)가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年金에 대한 課稅負擔範圍를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課稅의 實際 負擔額은 두가지 方法으로 區分할 수 있다. 그 첫째로는 給與에 대한 課稅를 통하는 方法과 둘째 老人 또는 低所得貧困階層에 대한 稅金을 確認 또는 免除해 줌으로써 그 影響을 받게 되는 것이다. 더욱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社會福祉年金中 老齡保險 寄與金에 대한 課稅取扱인 것이다. 이러한 寄與金을 課稅所得에서 控除해 줄수 있다면 一般勤勞者들에게 어느정도 惠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老齡年金에 대한 課稅制度를 보면 一般的으로 資産調査를 받아서 支給되는 扶助手當(assistance allowances)은 課稅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즉, 이러한 扶助手當은 申告되지 않거나 그 額數가 어떤 나라들은 免稅所得에 해당하는 額數를 만들거나 또는 기껏해야 그 以下가 아니면 그 水準에 머물게 될 것이다. 本來의 年金方案들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그것이 基本的인 均等金額의 年金이건 또는 所得關聯 隱退年金이건 간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給與는 一般的으로 正常的 所得으로 간주되고 그래서 다른 所得源들로부터 얻는 所得과 同一한 課稅가 된다. 이러한 課稅가 高度로 累進的인 나라에서는 이와같이 純給與(net benefits)가 總給與(gross benefits)보다 어느정도 낮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規則에는 例外가 있다. 즉, “핀란드”에는 基本的인 均等額年金이 稅金免除를 받고 있다. 그러나 勤勞者들의 은퇴年金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지만 “노루웨이”에서는 基本年金에 대한 所得關聯補充給與는 課稅對象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老人들의 경우에는 課稅所得 수치로부터 <表5>와 같이 許

用되고 있다. 이러한 체감적 控除 (degressive deductions)의 率은 基本年金에 대하여는 約 20%이고 이보다 10배가 더높은 所得에 대해서는 10%이다. 따라서 스웨덴에서는 基本年金이 課稅對象이 되고 있다. 그러나 受惠者가 다른 所得源이 전혀 없거나 또는 自己基本年金에 附加해서 단지 적은 所得만 補充的給與를 包含하여 地方當局에 依하여 支給되는 住宅手當은 免稅되고 있다.

<表 5> 노 르 웨 이 課 稅 所 得 控 除

(1973. 67歲以上 者)

年 間 所 得	控除額 (노르웨이 crowns)	
年 金 包 含	獨 身 者	夫婦가 勞動所得申告時
10,445	2,169	1,193
16,220	2,717	2,964
20,000	3,008	2,924
30,000	4,173	3,543
50,000	5,708	5,373
70,000	7,338	7,003
100,000	9,293	9,293

資料: 醫保公論 85 여름號, p. 63.

그러나 보다 큰 附加的所得에 대해서는 低率의 所得稅가 一定한 쉐링까지 適用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老齡年金이 支給되는 給與는 所得稅의 適用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때 所得稅賦課는 20%가 줄어든 率을

適用하고 있다.

“벨기”에서는 年金이 俸給에 適用되는 率보다 더욱 有利한 減縮된 率로 課稅하고 있다.³¹⁾

以上으로 福祉年金에 대한 課稅 現況을 考察해본 결과 역시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低所得貧困階層과 老人들에 대한 所得에는 課稅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大體적으로 貧困階層과 不遇老人等은 三層 扶助的인 立場에서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公益法人이 收容保護等의 惠澤을 주고 있는 바 이는 老齡年金 制度를 實施하고 있는 諸國의 社會福祉年金惠澤과 유사한 社會保障의 一部라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는 法人에 있어서는 당연히 全面免稅惠澤이 要求되고 있다.

註 31) 李光榮, 社會保障年金과 課稅考察, 醫保公論, 85. p.62.

第4章 綜合福祉事業과 非課稅

第1節 綜合福祉事業의 定義

社會福祉事業法 第2條 規定에 依하면 社會福祉事業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生活保護法, 兒童福祉法, 老人福祉法, 心身障礙者福祉法, 淪落行爲防止法 等に 의한 保護, 善導 또는 福祉에 관한 事業과 社會福祉相談, 災害救護, 浮浪人 善導, 職業輔導, 隣保福祉, 無料宿泊, 地域社會福祉, 母子福祉, 醫療保護, 社會福祉館運營, 癩完治者 社會復歸에 관한 事業等 各種 福祉事業과 福祉施設의 運營 및 支援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1 . 法人의 役割과 課稅制度

위와 같은 社會福祉事業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遂行하여야 할 福祉增進의 責任이 있어 地方自治 團體가 直接하거나 社會福祉法人 또는 其他 非營利 公益法人으로 하여금 社會福祉施設을 設置 運營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社會福祉事業法 第2條의 2 生活保護法 第15條 參照)

이와같은 社會福祉事業을 遂行할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들은 一定한 財産을 出捐하고 그 財産의 收入으로 目的事業에 充當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法人의 財産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代身하여 出捐된 財産과 所得에 대하여 莫大한 租稅부담을 시킨다는 것은 社會福祉事業의 저해요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는 法人들은 모두 國家가 어긋난 時期에 處하거나 社會가 不安할 때 地域社會福祉增進을 위하여 犧牲의인 奉仕를 해왔다.

또한 지금도 政府施策의 一環인 福祉社會 建設과 正義社會 具現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福祉社會 또는 福祉國家란 社會의 安定을 도모하고 自己發展을 위한 適切な 基盤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財産의 代用的 所有形態를 確立하고자 하는 것이며,³³⁾

正義社會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正直 成實하고 能力있는 사람들이 正當한 勞力에 대한 相當한 代價의 公正한 租稅부담을 하며 서로 믿고 의지하고 和合團結하여 安定된 生活을 할 수 있는 社會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公益法人이 所有하고 있는 모든 財産은 福祉國家 또는 正義社會 具現을 말하여 寄贈된 財産으로서 社會 脆弱階層을 爲한 生活保護와 教育事業等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를 代身하여 상당히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다. 近代國家制度의 發展은 社會 組織의 目的이 民衆을 爲한 福祉일 때만이 우리는 이를 福祉國家라고 하였다.³⁴⁾

우리나라 憲法 第32條와 生活保護法 第15條의 規定도 이와같은 理論의 根據에 依한 規定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正義社會 역시 社會利益의 公正配分 즉 所得의 再分配的인 次元에서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公益法人 등이 收容保護하고 있는 靑少年들과 같은 階層의 靑년들의 意識構造가 理想主義적이고 未來指向的인 特徵을 잃지 않고 正義社會 具現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公益法人으로서 최선의 勞力을 다해야 할 것이다.

註 33) 金翰周, 黃振洙 現代福祉國家論, 1983. 고려원 p. 16

34) 宋鄭府, 社會福祉學, 1980. 學文社. p. 26

이같이 社會福祉事業을 수행하고 있는 法人이 불우한 兒童 및 靑少年들의 收容保護와 教育善導事業 그리고 불우老人 및 心身障礙者, 母子保護事業等은 우리나라 憲法第32條³⁵⁾의 根據에 따른 生活保護法第15條³⁶⁾에 依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事業을 代行하고 있다.

이 法의 內容은 各種 社會福祉事業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行하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으나 國家財政의 不足으로 民間資本이 出捐된 非營利公益法人이 設置運營하는 社會福祉施設에 委託하여 事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公的扶助 즉 國家公益事業中 最優先 事業을 公益法人에 委託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公益法人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法律, 第2條³⁷⁾의 規定에 依하면 自活할 수 없는 者를 돕기 위한

註 35) 憲法第32條 :

- ①모든 國民들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 ②國家는 社會保障 社會福祉의 增進에 勞力할 義務를 진다.
-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註 36) 生活保護法第1條 : 이 法은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거나 生活이 어려운 者에게 必要한 保護를 하여 이들의 最低生活을 保障하고 自活을 造成함으로써 社會福祉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같은 法第15條 : ①이 法에 依한 保護는 保護對象者의 居住地를 管轄하는 서울特別市長 直轄市長 道知事 또는 市長 郡守가 行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保護對象者를 各各 國家 또는 道가 經營하는 保護施設에 入所하게 하거나 다른 保護施設에 委託하여 保護할 수 있다.

註 37)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法律第15條 : 公益法人에 出捐 또는 寄附된 財産에 對한 相續稅, 贈與稅, 所得稅, 法人稅 및 地方稅는 租稅減免規制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를 減免할 수 있다.

모든 事業을 遂行하는 法人은 모두 이 法에 依한 公益法人으로 볼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法 第 13 條에는 公益法人에 出捐된 財産은 法人이 解散될 경우 定款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되는 反面에 같은 法 第 15 條規定에 의하여 租稅減免規制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各種 稅金을 免除받을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

§ 2 . 出捐行爲와 收入支出

社會福祉事業法 第 7 條 및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法律第 4 條 規定과 民法第 32 條 規定에 依하여 政府가 社會福祉事業 및 各種 公益事業에 民間資本誘置方案으로 設定된 法人의 設立要件은 社會福祉事業法第 12 條 및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관한 法律 第 11 條 規定에 依한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을 所有하고 이 法人등의 年間 運營費中 基本財産收入 20 % 以上을 充當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法人設立의 基本要件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法人 등이 都市計劃 또는 其他 國土開發計劃에 依하여 收容을 당하고 그 代價로 받은 補償金으로 事業場을 移轉하여 새로이 新築한 社會福祉施設에 莫大한 稅金이 부과되어 이 稅金을 納付하려면 法人의 基本財産을 處分할 수 밖에 없는 實情에 있다. 이와같은 法人들은 大部分 1950 ~ 1960 年代의 法人들로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宗教的 博愛精神으로 不遇한 老人들과 靑少年들 그리고 婦女子들을 收容 保護뿐만 아니라 國內教育은 勿論 海外유학까지 시키는 등 法人設立者 들의 獻身的인 勞力の 結果로 오늘에 와서 우리社會에 없어서는 아니 될 人材로 成長시켜 많은 業績을 남긴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法人들의 基本財産은 大部分이 設立者들의 私有財産을 出捐하였

고 그 財産이 都市化 産業化社會로 轉換되는 과정에서 地價가 상승하여 오늘날 數億 또는 數拾億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같이 증가된 財産을 都市計劃 變更確定에 따른 建設部 告示에 의거 法人의 目的事業場과 主된 事務所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法人은 政府施策에 順應하는 立場에서 基本財産代替許可를 申請하였다. 그러나 主務官廳에서는 이 法人에 부과될 各種 稅金은 考慮함이 없이 當該法人의 基本財産代替金額을 金額使用處를 指定하여 支出하도록 〈表 6〉과 같이 條件附許可를 하게 된다.

이와같이 法人의 모든 財産權行使는 事前 承認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不拘하고 莫大한 稅金이 부과되니 法人의 設立者는 勿論 施設の 運營者 等은 稅額을 充當할 길이 없어 동분서주하고 있다. 勿論 財産을 所有한 法人도 權利能力이 있는 사람이니만큼 內國法人으로서 納稅의 義務를 履行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되나 우리나라의 非營利 公益 社會福祉 法人의 基本財産은 代替許可時 稅額을 計算할 수 없는 非課稅法人임으로 許可條件과 事業計劃書에도 稅額이 計算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 3 . 課稅와 免稅의 比重

人類의 歷史는 構成團體의 社會性과 相互依存속에서 成長發展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人外 法人格을 構想한 것도 社會形成의 目的으로서 必要한 所産이며 社會의 發展段階와 그 本質에 따라 뚜렷한 差異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法人의 體質도 그 性質에 따라 構成團體가 되는 境遇도 있고 財産의 出捐行爲 그 自體가 되는 경우도 있다.

〈表 6〉

基本財産代替許書

社會福祉事業法 第 20 條 및 行政權限委任 및 委託에 관한 規定 第 30 條第 77 項 規定에 의거 社會福祉法人 靑山福祉團의 基本財産 代替를 다음과 같이 許可함.

처분하고자 하는 財産		取得하고자 하는 財産	
土 地	建 物	土 地	建 物
所在地 및 面積	所在地 및 建坪	所在地 및 面積	新築計劃 建物

許 可 의 條 件

1. 代替金額의 支出結果는 精算報告되어야 하고 備品購入 및 其他 附帶施設을 設置할 경우 事前承認을 받을 것.
2. 工事費는 工程 70 % 範圍內에서 支出하고 工事後 하자가 發生할 때는 必須적으로 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事後保障策을 강구할 것.
3. 土木工事中 土壤을 販賣할 경우 契約締結節次에 따라 執行하되 事業計劃을 變更하기 전에 正當한 收入計定을 取할 것.
4. 本工事 進行中 代替金額등 모든 法人의 財産은 當時 郡이 指定한 目的以外에는 使用할 수 없으며 有能한 經理社員을 採用하여 감독 상 必要한 報告를 수시로 하게 할 것.
5. 衛生, 난방등 各種 設備工事は 專門家에 의하여 設備하고 關係當局에 심사를 받을 것이며 工事期間은 着工日로부터 6 個月以內에 完工할 것.

＊ 이상의 條件을 履行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本 許可를 取消할 것임.

따라서 社會福祉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도 그 實體가 되는 財産을 所有한 內國法人으로서 당연히 各種 稅金을 納付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나 非營利 公益法人이 行하는 各種事業의 重要性을 勘案하면 各種 稅金을 免除하는 것이 徵收하는 것보다는 國益의 比重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理由로는 “첫째” 政府가 莫大한 豫算을 들어 運營해야 할 各種 社會福祉施設을 法人이 設置 運營하고 있고, “둘째” 社會福祉施設에 收容 保護되고 있는 被收容者들의 生活費 一切를 法律이 定하는 바에 따라 政府가 負擔하고 있으며 “세째” 法人이 直接 使用하는 一部 財産에 對하여는 各種 稅金이 免除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點으로 미루어 볼 때 政府豫算의 補助없이 法人에서 稅金을 納付하려면 法人의 基本財産을 處分하는 등 複雜한 問題가 惹起되어, 賦課된 稅金 以上으로 國益의 損失을 가져올 것이 豫想된다.

따라서 租稅減免規除法上 法人의 모든 稅金이 免除된다는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其他 各種 稅金中 그 一部の 免稅規定을 類推適用하여 現在 賦課되고 있는 稅金은 免除하고 앞으로는 全面 非課稅規定을 租稅減免規制法에 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 法人에 免稅惠澤을 주지않으면 稅務當局에서 法人의 財産을 押留하여 競賣處分을 하였을 경우 主務官廳의 許可없이 名義 移轉이 不可能하기 때문에 稅務當局은 담세 能力없는 法人에 課稅한다는 것이므로 時間과 人力만 浪費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法人의 보통재산인 事業費를 押留할 경우 法人의 目的事業에 차

질을 초래하고 있어 國費 또는 地方費의 豫算으로 補充을 하여야 함으로 稅收를 爲하여 行政上的 複雜性만 誘發하게 된다.

이와같이 非營利 公益法人에 國費로 事業費를 補助하고 國稅로 徵收하는 모순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第 2 節 事業目的別 免稅根據

法人의 事業은 그 目的을 多樣하게 區分할 수 있으나 非營利 公益法人의 境遇 大部分 自活할 수 없는 者를 돕기 위한 各種 事業과 育英事業 및 社會福祉事業等を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事業도 自然人的 能力과 같이 法人도 그 定款에 各種 事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도 目的事業을 圓滑히 수행할 수 있는 財政的 背景이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 이러한 法人을 許可 또는 認可할 때는 出捐財産의 規模에 따라 目的事業의 種類를 조정하는 事例도 있다.

따라서 法人設立에 必要한 財産을 出捐하는 個人 또는 營利法人等에는 租稅減免의 特惠를 주고 있다.

이렇게 財産의 出捐이 設立된 法人의 財産에 各種 租稅가 減免되지 않는다는 것은 法人의 設立目的과 課稅目的이 混頓되고 있는 實情이다.

§ 1 . 福祉事業과 教育事業

社會福祉事業法第2條規定에 依한 各種 社會福祉事業에 對한 免稅規定은 있으나 租稅減免規制法에 規定되어 있지 않다는 理由로 免稅되지 않는 경우가 許多하다.

兒童福祉法 第31條(免稅)規定에 依하면 兒童福祉施設에서 收容兒童을

을 위하여 使用하는 建物 및 土地에 對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租稅 其他 公課金を 免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같은 明文의 規定을 둔 것은 各種 稅金を 免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立法趣旨이며 根本目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租稅減免規制法上 防衛稅를 免除한다는 明文의 規定이 漏落되어 巨額の 防衛稅가 賦課되어 事業의 莫大한 차질을 招來하고 있다.

이러한 境遇에 主務官廳에서 法人의 事業計劃에 租稅減免規制法上 免稅 規定이 없는 部分에 대한 稅額까지 包含시켜야 하는지? 法人이 基本財産을 代替할 경우 그 許可書에 記載되는 條件이 代替金額을 目的以外 使用할 時 그 許可를 取消한다고 되어 있으나 代替金額의 使用處에는 稅金計算이 되어있지 않는 것을 보면

社會福祉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인은 당연히 非課稅法人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法人들이 防衛稅 等 各種稅金を 納付해야 할 경우 또 主務官廳에 財産處分の 許可를 받아야 할 것인 바, 主務官廳은 法人의 稅額을 納付하는 名目으로 과연 그 法人의 基本財産을 減少시킬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같이 擔保能力이 없는 法人의 處地를 考慮하여 免稅 또는 減免하는 方向의 政策的 결정과 關係法條項의 改正等이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租稅減免規制法 第9條第1項에 依하면 公共法人은 第8條第1項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과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法人稅法 第1條의 非營利 內國法人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나 社會福祉法人 또는 其他 非營利 公益法人中에도 社會福祉事業 法人은 公共法人에 包含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法人稅法第 18 條가 1 項에 依하면 內國法人이 各 事業年度에 支出한 寄附金中 社會福祉, 教育, 慈善等 公益性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寄附金中 다음 各號의 金額의 合計額 (大統領令이 定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當해事業年度の 所得金額에 100 分の 60 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 以下省略……

法人稅法第 42 條에 依하면 法第 18 條第 1 項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寄附金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 에 揭記하는 것을 말한다고 規定하였다.

①社會福祉事業法에 依하여 設立된 社會福祉法人에 福祉 또는 慈善을 위한 事業費, 施設費, 運營費 等으로 支出하는 寄附金과

②教育法에 依한 學校 또는 技能大學의 施設費, 教育費 또는 研究費로 支出하는 寄附金이나 獎學金 等에는 稅金이 免除된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와같은 法人의 모든 事業은 免稅 또는 非課稅事業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地方稅法第 184 條第 1 項 3 號 規定에 依하면 非營利事業者가 그 事業에 直接使用하는 財産에 對하여는 財産稅도 免除받을 수 있으며 같은 法施行令第 79 條 및 第 136 條에 依한 非課稅公益事業이라 함은 民法 및 特別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非營利法人과 이와같은 事業을 非營利를 目的으로 經營하는 個人을 말한다고 되어있고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第 15 條規定에 依하면 公益法人에 出捐 또는 寄附한 財産에 對한 相續稅, 贈與稅, 所得稅, 法人稅 및 地方稅는 租稅減免規制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減免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法務部 有權해석에 依하면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施行令第 2 條第 1 項第 4 號에 自活할 수 없는 者를 돕기 위한 모든 事業을 行

하는 社團法人과 財團法人은 公益法人으로 認定하였으므로 社會福祉事業法 第2條 規定에 依한 各種 社會福祉事業도 이에 該當하는 財團法人으로 類推 認定되어 國有財産法上 公益法人에 社會福祉法人도 包含된다고 解釋하였다.³⁸⁾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第13條 規定에 依하면 解散한 公益法人의 殘餘財産은 定款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歸屬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러한 公益法人의 財産을 租稅滯納으로 押留處分한다는 것은 國家收益財産을 2重處分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 2. 宗教事業과 公益事業

우리나라는 宗教法人을 위한 特別法이 없기 때문에 各種 宗教 團體가 財産保存을 위하여 法人을 設立하려면 民法第32條規定에 依한 財團法人을 設立하여 單獨 또는 聯合 維持財團을 形成하고 있다. 問題는 이러한 宗教目的 財團法人들이 國內外 宣敎 또는 布敎活動等 目的事業을 擴張・遂行할 目的으로 法人의 基本財産을 處分할 境遇 稅務當局은 最近 3~4年이 지난 資料에 依하여 任意로 加算金を 包含한 防衛稅가 遡及賦課되어 宗教目的法人에 새로운 問題가 대두되고 있다.³⁹⁾

이로 因하여 오늘날 宗教目的法人들은 宗教活動과 社會公益을 위한 各種 目的事業이 鈍化되고 萎縮을 받게 된다고 當局에 호소하고 있다.

自由와 平等이 民主政治의 本質이라면 宗教의 自由는 自由民主主義의 國

註38) 法務部第810-4977號, 질의회신, 1979.12.29.

註39) 防衛稅法改正請願, 韓國基督教稅務對策協議會, p. 4. 1984

家の 形成을 뒷받침하는 精神의 根本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宗教가 自由와 平等의 理念을 社會에 퍼고 民主力量을 擴大시키는 潛在的인 底力이 되며 또한 歷史를 發展시키는 源泉的인 活動力이 되기 때문이다.

人類의 긴 歷史的 發展過程을 볼 때 어느 時代 어떤 社會를 莫論하고 宗教가 文化發展에 中心的役割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實로 宗教는 傳統의 守護者요 道德律의 保護者요 知慧의 教育者이며, 文化의 創造者 口實을 다하고 있다.

宗教는 人間存在의 性格을 總括하면서 社會를 統合하고 文化를 創造한다. 또한 宗教는 人間精神의 實體와 根本이요 深層인 것이다. 이렇듯 人類의 歷史는 바로 宗教의 歷史라고 할 수 있을만큼 宗教는 人類生活의 모든 分野에 걸쳐 큰 影響力이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文化도 宗教에 依하여 많은 影響을 받아 왔다는 事實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우리나라 憲法에도 누구든지 性別宗教等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으며,⁴¹⁾

따라서 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지며 教分離의 原則아래 참된 信教의 自由를 最大限으로 保障함과 同時에 宗教團體가 健全한 社會建設과 民族文化 暢達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함을 그 基本施策으로 삼고 있

註 40) 文化公報部, 韓國의 宗教, 1973. p.133

註 41) 憲法第 10 條第 1 項 : 모든 國民은 法앞에 平等하다. 누구든지 性別, 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아니한다.

다. 42)

§ 3. 宗教團體와 非課稅

1) 宗教團體가 1978 年부터 1982 年까지 逆及賦課한 防衛稅가 不當하다고 請願한 內容에 依하면 오늘날의 國防과 戰爭은 軍事力에 依한 武力戰爭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全 國民의 總和團結에 의한 總力戰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勿論 武力에 依한 軍事力도 重要하지만 政治, 經濟, 宗教, 文化 등 모든 面에서 敵을 征服해야 된다는 것이다.

옛날 로마가 희랍을 武力으로 征服하였으나 文化的으로는 오히려 征服을 당하였다는 歷史的 事實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共產主義와 對峙하고 있는 立場에서 眞情한 國防이란 繼續的인 經濟成長과 宗教的 宣敎活動이 國防의 一翼을 도모한다는 事實을 強調하였다. 勿論 宗教人들 個個人은 防衛稅를 納付하여 國土防衛에 必要한 國防費 調達에 기여이 同參하고 있지만

2) 宗教團體가 宣敎事業과 社會公益事業을 하고 있는 法人의 經濟活動에 防衛稅를 賦課한다는 것은 前述한 政府의 宗教行政基本施策과는 差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된 처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一般的으로 稅務調査에서 不誠實法人이라 함은 營利法人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營利法人도 問題年度에 局限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생각된다.

註 42) 憲法第 19 條

① 모든 國民은 宗教의 自由를 가진다.

② 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教와 政治는 分離된다.

그러나 宗教事業과 非營利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에 遡及課稅한다는 것은 問題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宗教團體들은 讓渡差益金을 個人 或은 企業과는 달리 全額을 非營利公益目的에 使用하고 있어 福祉社會具現에 民間主導의 勞力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勘案하여 政府는 이를 支援 補助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政策的으로 非課稅 處理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政府가 許可한 宗教團體 維持財團의 定款은 法人이 解散時 殘餘財産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類似團體에 歸屬된다고 規定하고 있어 窮極의으로는 國家財産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宗教團體에 莫大한 防衛稅가 賦課되면 法人의 基本財産이 減少되어 不實法人化되어 公益事業만 中斷되는 結果를 초래한다.

또한 事業의 不實로 法人을 解散하면 國家에 歸屬될 資産이 없을 뿐만 아니라 法人의 管理者 또는 運營者는 脫法칭산으로 國家財産의 損失만 가져오게 하는 矛盾이 속출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法人稅法第 59 條의 3 第 1 項第 13 號, 17 號에 規定된 法人의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는 非課稅로 되어 있는 바, 主稅인 特別附加稅가 非課稅이면 당연히 防衛稅도 非課稅 處理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防衛稅法 第 3 條(非課稅)規定에 의하면 外資導入法の 規定에 依한 外國人投資 企業을 設立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範圍안의 土地와 建物을 現物로 出資하므로 發生하는 所得等 同一한 事案에 對하여 個人의 境遇는 防衛稅를 非課稅하면서 非營利 公益法人의 境遇에는 防衛稅를 賦課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所得稅法第 5 條第 6 號(자)의 規定에 의하면 個人의 1 家口 1 住宅을 옮길 境遇는 防衛稅를 非課稅하고 法人團體가 主된 事務所를 移

轉할 境遇 課稅한다는 것은 不公正한 處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같은 事實은 法律 相互關係에 있어서도 缺陷이 있다고 생각된다. 個人보다 法人이 持續的이며 公信力있고 公益性이 크다고 하여 法人을 勸獎하고 各種 惠澤을 주고 있는 時代的 要請에 합당한 稅法으로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 宗教團體의 非營利收益活動을 考慮하여 現在의 各種 稅法을 改正하여 非課稅 또는 減免으로 國家公益事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第 3 節 非課稅와 租稅減免規定

各種 稅法 또는 其他 特別法上 非課稅 또는 免稅規定을 拔萃하여 公平稅制度 確立을 위한 參考資料에 供與코져 한다.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관한 法律第 4 條(重複課稅의 禁止)에 依하면 國家와 地方自體團體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課稅物件이 重複되는 如何한 名目の 稅法도 規定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現行稅法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 1.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

1961 年 12 月 2 日 法律第 780 號로 制定 公布된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관한 法律은 1984 年 12 月 24 日까지 그간 8 회에 걸친 改正으로 많은 發展을 해 왔으나 아직도 미비한 點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理由로는 自然人이나 法人이 同一한 國稅 또는 地方稅等を 重複課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法人의 경우 法人의 代表者로서 納稅하고 自然人의 家長으로서 納稅하는 것은 重複課稅로 볼 수 없으나 自然人의 경우 同一한 稅目으로 所得에서 控除하고 또한 居住地에서 納稅한다는 것은 嚴然히 1人에 對한 重複課稅로 보지 않을 수 없다.⁴³⁾

이것은 如何한 名目으로도 重複되는 稅法制定을 하지 못한다고 規定한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관한 法律第4條의 規定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全文 4個條로 되어 있는 이 法의 內容에 의하면 國家는 ① 所得稅 ② 法人稅 ③ 相續稅 ④ 贈與稅 ⑤ 再評價稅 ⑥ 不當利得稅 ⑦ 附加價值稅 ⑧ 特別消費稅 ⑨ 酒稅 ⑩ 電話稅 ⑪ 印紙稅 ⑫ 關稅 ⑬ 臨時輸入附加稅 ⑭ 防衛稅 ⑮ 證券去來稅 ⑯ 教育稅 等を 國稅로 課稅한다고 되어있다.

以上 16 種의 稅金外에 地方稅로서는 ① 取得稅 ② 登錄稅 ③ 免許稅 ④ 住民稅 ⑤ 財產稅 ⑥ 自動車稅 ⑦ 農地稅 ⑧ 屠畜稅 ⑨ 馬券稅 ⑩ 담배販賣稅 ⑪ 都市計劃稅 ⑫ 共同施設稅 ⑬ 事業所稅 等を 地方自治團體가 獨立稅인 地方稅로 課稅하게 되어 있다.

以上 13 種의 地方稅外 過去 戶別稅와 動力稅等を 廢止하고 地方稅中 特別行爲稅와 漁業稅 및 交通稅는 國稅에 統合하고 土地稅와 遊興飲食 및 鑛稅等は 從前의 例에 依한다고 하였다.

註 43) 國稅와 地方稅의 調整에 關한 法律

第4條(重複課稅의 禁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課稅物件이 重複되는 如何한 名目の 稅法도 制定하지 못한다.

§ 2 . 各 種 稅 法 中 非 課 稅 規 定

- 1) 法人稅法第 10 條 (非課稅所得) 法人稅의 免除
- 2) 같은法人 第 59 條의 3 (非課稅 및 免稅) 特別附加稅
- 3) 相續稅法第 8 條의 2 第 1 項 1 號 (相續稅의 非課稅)
- 4) 같은法第 34 條의 5 (贈與稅의 非課稅)
- 5) 資產再評價稅法第 11 條 (資產再評價稅의 非課稅)
- 6) 附加價值稅法第 12 條第 1 項 16 號 (附加價值稅의 免稅)
- 7) 地方稅法第 107 條第 1 號 (取得稅의 非課稅)
- 8) 같은法第 127 條第 1 號 (登錄稅의 非課稅)
- 9) 같은法第 163 條 (免許稅의 非課稅)
- 10) 地方稅法第 174 條第 2 項 (住民稅의 非課稅)
- 11) 같은法第 184 條第 1 項 3 號 (財產稅의 非課稅)
- 12) 같은法第 209 條 (農地稅의 非課稅)
- 13) 같은法第 245 條 第 1 項 5 號 (事業所稅 非課稅)
- 14) 租稅減免規制法第 4 條 (利子所得의 非課稅)
- 15) 같은法第 45 條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免除)
- 16) 關稅法第 27 條第 1 項 및 第 28 條의 6 第 1 項 2 號 ~ 3 號 第 29 條 第 1 項, 第 30 條, 第 31 條第 1 項 第 34 條에 게기하는 物品 또는 租稅 減免規制法第 83 條에 게기하는 物品等 (防衛稅의 非課稅)

以上과 같은 規定以外에도 法人稅法第 18 條 第 1 項의 規定에 依하면 內國法人이 各 事業年度에 支出한 寄附金中 社會福祉, 文化, 藝術, 教育, 宗教, 慈善等 公益性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寄附金中 非營利公益法人의 경우에는 당해 事業年度의 所得金額에 100 分の 60 을 곱하여 算

出한 金額으로까지 높게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오직 防衛稅法만은 以上과 같은 諸稅法에서 考慮한 非營利公益 性を 考慮하지 않고 다만 個人과 法人으로만 區分하고 있음으로 非營利 公益法人도 個人의 利潤을 추구하는 營利法人과 同一하게 規定되어 있으 므로 各 法人의 性格을 勘案하여 現行防衛稅法은 再檢討되어야 할 것으 로 思料된다.

以上과 같은 非營利公益法人에 防衛稅 免除를 위하여는 法人稅法 第 59 條의 3 第 1 項 13 號, 17 號에 揭記하는 所得에 대한 法人稅에 對하여는 防 衛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로 改正되어야 할 것이다.⁴⁴⁾

§ 3 . 各 單行法中 租稅減免規定

非營利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財團法人과 社團法人等은 모두 廣義의 社會福祉事業法人으로 總稱할 수 있으나 稅法上的 規定이 社會福祉法人과 非營利公益法人으로 區分되어 있으므로,

關聯된 各 單行法中 租稅減免을 위한 名文의 規定은 없어도 國費 또 는 地方費가 補助되는 事業과 非營利公益法人은 모두 免稅事業으로 認定 되어야 할 것이다. 現行法上 租稅減免 또는 非課稅될 수 있는 法的根據 를 보면 다음과 같다.

註 44) 法人稅法 第 59 條의 3 (非課稅 및 免稅)

第 1 項 第 13 號: 社會福祉事業法에 依하여 設立된 社會福祉法人이 所 有한 土地等으로서 社會福祉施設에 直接 使用하는 土地등을 양도 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

第 17 號: 宗教의 普及 기타 教化를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法 人格없는 社團, 財團 기타 團體包含)이 固有目的에 直接 使用하 는 土地등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

- 1) 社會福祉事業法第13條(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補助金 支給)
- 2) 公益法人의 設立 및 運營에 關한 法律第15條(寄附財産의 租稅減免)
- 3) 生活保護法第15條(生保者現存地의 市長, 郡守의 保護, 責任)
- 4) 老人福祉法第19條(國費・地方費 또는 社會福祉基金으로 費用負擔)
- 5) 淪落行爲等防止法第10條(公益法人에 對한 國費의 補助)
- 6) 心身障礙者 福祉法第23條(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費用補助)
- 7) 兒童福祉法第3條(建物 및 土地에 對한 諸稅公課金의 免除)
- 8) 埋葬 및 墓地等에 關한 法律第15條의 3(移轉命令에 따른 損失補償)

以上の 法律 以外에도 相當數가 있을 것으로 思料되나 本 研究에서 調査된 法人의 事業과 無關함으로 이를 省略하였다. 以上에서 열거된 各 單行法은 모두 社會福祉法人 또는 非營利公益法人이 遂行하고 있는 事業에 關한 法律임으로 社會의 어두운 側面을 많게 한다는 뜻에서도 租稅等を 減免 되는 非課稅로 하여 福祉社會建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事業을 遂行하는 法人은 우리나라 憲法中 國民의 基本權과 最低生活保障 및 人間다운 生活保障 등을 實現하고자 하는 事業의 一部로써 國家가 積極的으로 推進해야 할 義務라 할 것인 바, 法人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國家의 委任 義務를 遂行하고 있는 것이다.

國家가 直接 遂行해야 할 救濟事業을 代行하고 있는 法人에 對하여 他意에 의한 基本財産 代替過程에서 發生한 所得에 防衛稅가 賦課된다는 것은 國家가 補助하는 國費를 國稅인 防衛稅로 환수한다는 矛盾이 內在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脈絡에서 볼 때 社會福祉法人 및 非營利 公益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租稅滯納으로 因하여 事業이 中斷된다

는 것은 法以前에 政策的 또는 論理的인 側面에서도 合理的이라고 할 수 없다.

오늘날 漸次* 福祉國家로 變貌해 가고 있는 世界 여러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福祉事業을 위한 非營利 公益法人에 對하여는 모든稅金を 免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社會福祉事業에 財産을 寄贈하고 이 業務에 從事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國家에서 特別한 禮遇를 하고 있으므로 美國의 境遇 1981 年末 現在 全 國家財産의 11%가 非營利公益法人의 財産으로 유치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法人의 財産에 모든 稅金を 免除하여 社會經濟的으로 均衡發展을 圖謀하는 政策方案의 一環으로 各種 稅法을 時急히 改正하여 많은 民間資本을 公益法人에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第 5 章 課稅實態調查結果에 대한 考察

第 1 節 調查方法의 概要

이 調査는 全 非營利公益法人에 부과된 課稅實態를 把握하는데 目的을 두고 全數調査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研究者의 個人的인 研究 活動으로는 調査要員, 調査費用, 調査期間 等 여러가지 制約으로 標本調査로 實施하였다. 標本推出의 方法은 確率標集(Probability sampling)을 할 경우, 時間과 費用을 감당할 수 없어 關聯法人團體인 各 協會를 통하여 소속 會員法人을 非確率標集(nonprobability sampling)에 의하여 <表 7> 과 같이 推出하여 實施하였다.

<表 7> 調 查 法 人 現 況

區 分 \ 法人別	計	社團法人	財團法人	社會福祉法人	特殊法人
총 법 인 수	805	58	227	516	4
調 查 법 인 수	102	12	74	66	-
집 계 분 석 법 인 수	93 / 101	12 / 12	23 / 23	58 / 66	- / -

調査의 實施方法은 調査票와 그 作成要領(別添)을 만들어 郵送調査에 의하여 實施하였으며, 調査期間은 1985.3.15~1985.8.15. 까지 期間中에 實施하고 집계처리는 1985.9.1~1985.11.30까지 간에 걸쳐 手集計에 의하여

註 45) 집계분석법인수 /선상단은 1983년도, /선하단은 1984년도의 과세現況을 집계분석한 법인수임.

處理하였다.

이 調査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研究者의 個人的인 研究活動으로
는 여러가지 制約이 있어 各 協會를 통한 非確率的 標集을 함으로써 母
集團의 代表値를 추출하는데 限界性이 있었고, 郵送調査를 實施하기 위해
調査票를 簡略하게 작성함으로써 各種 課稅의 原因을 비롯한 구체적인 調
査가 어려웠다.

이러한 點에서 여러가지 制約性은 있었으나 非營利公益法人에 부과되는
租稅의 種類, 課稅額의 實態 등을 어느 정도 把握할 수 있었다는 점에
서 非營利公益法人에 對한 稅制研究를 위한 基礎資料로서는 큰 뜻이 있
다고 思料되어 다음에 調査結果의 概要를 記述코자 한다.

第 2 節 調査結果의 概要

§ 1 . 課稅內譯別 現況

1983 年度の 課稅內譯에 대한 實態를 보면 <表 8>에서 볼 수 있는바
와 같이 調査에 應한 93個 法人中 69.9 %인 65個 法人이 세금부과
법인이었고 30.1 %인 28個法人이 세금을 부과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稅金이 賦課된 法人에 대한 課稅內譯을 보면 法人稅, 財産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를 비롯하여 住民稅, 부가세, 關稅, 농지세, 免許稅, 登錄稅,
登記稅, 都市計劃稅, 消防稅 등이 賦課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前述한 바와 같이 法人稅는 法人稅法 第1條第1項단서에 의거 法人의
收益事業 또는 收入에서 생긴 所得에 대하여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財産稅는 地方稅法 第184條第1項3號에 의하면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
營利法人이 事業에 直接 使用하는 것은 非課稅로 된다. 그리고 地方稅法

〈表8〉

1983 年度 課稅內譯別 現況

區 分 課稅內譯別		社團 法人	財團 法人	社 會 福 祉 法 人				計	
				老人福祉 施 設	精神療養 施 設	영·育兒 직보시설	小 計	法人數	比 率 (%)
총 조 사 법 인 수		12	23	4	7	47	58	93	100.0
세금부과법인수		8	21	4	7	25	36	65	69.9
비 부과 법인 수		4	2	-	-	22	22	28	30.1
課 稅 內 譯 別 現 況	법 인 세	-	16	-	1	6	7	23	24.7
	재 산 세	1	12	1	-	9	10	23	24.7
	소 득 세	-	3	-	2	2	4	7	7.5
	방 위 세	1	16	2	5	8	15	32	34.4
	취 득 세	-	7	-	-	-	-	7	7.5
	기 타 세 (주민세, 부가세, 관세, 농지세, 免 許稅 등)	8	18	4	3	15	22	48	51.6

第 107 條 1 號에 依하면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法人이 그 事業에 直接 使用하기 위한 取得은 取得稅를 非課稅하도록 되어 있고, 地方稅法 第 127 條 第 3 號, 4 號는 登録稅, 同法 第 163 條 第 1 項에는 免許稅, 同法 第 174 條 第 1 項에는 生活保護對象者의 住民稅, 同法 第 209 條에는 農地稅, 同法 第 245 條 5 號에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기타 非營利公益事業者의 事業所稅 등은 用途 區分에 의하여 非課稅토록 되어 있다. 調査에서 나타난 課稅의 賦課가 용도구분에 의한 非課稅의 惠澤을 받지 못한 것은 어떠한 理由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한 研究·檢討가 必要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第 12 條 第 2 項 3, 4 號에 의하면 教育用으로 수입하는 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社會福祉施設에 기부되는 재 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되어 있고, 관세법 第28條의 6 第1項 2號에 의하면 社會福祉施設에 기증되는 物品으로서 당해 用途에 直接 供與하는 物品은 수입관세를 면세토록 되어 있으며, 同法 第28條 6 第1項 5號에는 障礙者用品으로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物品의 수입관세를 면세하고, 同法 第28條의 5 第1項 1, 2號에는 公共職業訓練院에서 使用할 教育資料의 輸入關稅를 면세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調査의 結果에 나타난 것을 보면 社團法人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의 賦課額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法人에 對한 관세가 賦課된 것은 輸入의 目的이나 用途가 免稅對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대한나관리협회가 本 調査에서 建議하고 있는 바와 같이 非營利公益法人의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公益事業의 活性化를 위해 非營利公益法人의 目的事業에 사용되는 物品이 外國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될 때 관세를 免稅할 수 있는 法律條項의 신설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表8〉에서 總調査法人의 賦課된 課稅內譯에 대한 現況을 보면 방위세가 총조사업인의 34.4%인 32個法人에 부과되어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法人稅와 財産稅가 각각 24.7%인 23個法人에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各 法人別로 賦課된 租稅의 現況을 비교해 보면 사단법인과 社會福祉法人에 比하여 財團法人이 各種 租稅의 賦課 頻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社會福祉法人의 경우는 防衛稅, 財産稅, 法人稅의 순으로 頻도가 높고 財團法人은 法人稅, 防衛稅, 財産稅, 取得稅의 순으로 頻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1984 년도에 賦課된 과세내역별 現況을 보면 〈表9〉에 나타난 바와 같이 總調査法人 101 個法人中 72.3%인 73 個 法人에 各種

税金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1983 年度の 69.9 %에 비하여 2.4 %가 높은 것으로 이는 非營利公益法人에 租稅의 賦課가 늘어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各種 稅目別로 비교해 보면 기타세를 除外하고 모든 稅의 부과頻도가 높게 나타 났고 稅의 부과순위는 1983 년도 같이 방위 세가 전체의 34.7 %로 가장 높은 頻度를 보이고 다음으로 法人稅, 財産稅의 순으로 나타 났다. 또한 各 法人別 特性도 1983 年度와 같은 傾向으로 나타 났다.

〈表 9〉

1984 年度 課稅內譯別 現況

區 分 課稅內譯別		社團 法人	財團 法人	社 會 福 祉 法 人				計	
				老人福 祉施設	精神療 養施設	영·육 아·치 보시설	小 計	法人數	比率(%)
총 조 사 법 인 수		12	23	6	9	51	66	101	100.0
세 금 부 과 법 인 수		9	22	6	6	30	42	73	72.3
비 부 과 법 인 수		3	1	-	3	21	24	28	27.7
課 稅 內 譯 別 現 況	법 인 세	2	17	1	2	6	9	28	27.7
	재 산 세	1	12	1	1	11	13	26	25.7
	소 득 세	-	4	1	3	4	8	12	11.9
	방 위 세	4	17	2	3	9	14	35	34.7
	취 득 세	-	7	-	1	-	1	8	7.9
	기 타 세 (주민세, 부가 세, 관세, 농지 세, 免許稅 등)	8	17	5	3	16	24	49	47.5

§ 2 . 課稅金額別 現況

〈表 10〉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3 년도의 경우 총조사 법인 인 93 個法人中 税金이 賦課된 65 個法人의 課稅總額은 286,608 千원이

며, 세금부과법인의 1法人當 平均稅額은 4,409 千원이고 총조사법인의 1法人當 平均稅額은 3,082 千원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法人別 1 法人當 平均賦課稅額을 보면 총조사법인당 平均稅額의 경우는 財團法人이 7,660 千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社團法人 6,005 千원 社會福祉法人 661 千원으로 나타 났다. 税金賦課法人當 平均稅額은 社團法人이 9,007千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財團法人 8,390 千원, 社會福祉法人 1,037 千원으로 財團法人과 社團法人에 비하여 社會福祉法人에 賦課되는 稅額이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表 10〉

1983 年度 課稅金額別 現 況

(單位 : 千원, %)

區 分 課稅額別	社團 法人	財團 法人	社會福祉法人				計	
			老人福 祉施設	精神療 養施設	영·육 아·직 보시설	소계	稅 額	比 率
總調査法人의 1 法人當 平均稅額	6,005	7,660	157	1,105	638	661	3,082	
税金賦課法人의 1 法人當 平均稅額	9,007	8,390	157	1,105	1,154	1,037	4,409	
總 賦 課 稅 額	72,059	176,186	628	7,737	29,998	38,363	286,608	100.0
法 人 稅 額	-	57,342	-	9	3,411	3,420	60,762	21.2
財 產 稅 額	5,356	28,535	73	-	16,844	16,917	50,808	17.7
所 得 稅 額	-	38,149	-	379	964	1,343	39,492	13.8
防 衛 稅 額	780	9,851	62	7,306	6,987	14,355	24,986	8.7
取 得 稅 額	-	848	-	-	-	-	848	0.3
其 他 稅 額	65,923	41,461	493	43	1,792	2,328	109,712	38.3

또한 賦課된 稅目別 課稅額의 現況을 보면 앞의 課稅法人의 수에 나
 타난 바와는 달리 法人稅額이 總賦課稅額의 21.2 %로 가장 높고, 다음
 으로 財産稅額 全體의 17.7 %, 所得稅額 全體의 13.8 % 순으로 나타
 났으며, 방위세는 총조사법인의 가장 많은 34.4 %인 32個法人에 부과되
 었으나 稅額은 全體의 8.7 %인 24,986 千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방위세가 所得稅, 法人稅등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10 ~ 20 %를 부
 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各 法人別 課稅額의 特性을 보면 社團法人은
 附加價值稅, 關稅 등 기타세 <表 11 參照>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財産稅,

<表 11> 1983 年 各 協會別 課稅內譯 現況

(單位：千원)

區 分 法人名	税金計	法人稅	財産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稅
計	72,059	-	5,356	-	780	-	65,923
大 韓 老 人 會	36,169	-	-	-	-	-	부가세 36,169
韓國老人福祉施設協會	50	-	-	-	-	-	주민세 50
韓國社會福祉協議會	5,406	-	5,356	-	-	-	주민세 50
韓國社會事業施設協議會	50	-	-	-	-	-	주민세 50
韓國精神療養施設協會	-	-	-	-	-	-	
韓國浮浪人施設福祉協會	-	-	-	-	-	-	
韓國視覺障礙者福祉會	-	-	-	-	-	-	
大韓家族計劃協會	23,300	-	-	-	-	-	관세 23,300
韓國健康管理協會	50	-	-	-	-	-	주민세 50
大韓結核協會	6,984	-	-	-	780	-	관세 5,980, 주민 세 213, 免稅稅 11
大韓癩管理協會	50	-	-	-	-	-	주민세 50
全國公園墓苑協會	-	-	-	-	-	-	

〈表 12〉

1984 年度 各 法人別 課稅金額 現況

(單位：千圓)

區 分 課 稅 額 別	社 團 法 人	財 團 法 人	社 會 福 祉 法 人				計	
			老 人 福 祉 施 設	精 神 療 養 施 設	영·육 아·직 보·시설	小 計	稅 額	比 率
總調查法人의 1 法人當平均稅額	20,402	6,587	109	120	348	295	4,117	
稅金賦課法人의 1 法人當平均稅額	27,203	6,886	109	180	591	463	5,696	
總 賦 課 稅 額	244,286	151,502	656	1,080	17,723	19,459	415,787	100.0
法 人 稅 額	8,489	45,414	17	39	494	550	54,453	13.1
財 產 稅 額	5,519	1,219	80	199	13,205	13,484	20,222	4.9
所 得 稅 額	-	8,088	73	476	1,550	2,099	10,187	2.5
防 衛 稅 額	4,737	15,744	51	300	862	1,213	21,694	5.2
取 得 稅 額	-	28,253	-	18	-	18	28,271	6.8
其 他 稅 額	226,081	52,784	435	48	1,612	2,095	280,960	67.6

防衛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財團法人의 경우는 法人稅, 所得稅, 財產稅, 防衛稅순으로 높은 賦課額을 볼 수 있고, 社會福祉法人의 경우는 財產稅額이 全體의 44%, 防衛稅額이 全體의 3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1984 年도의 賦課된 課稅額別 現況을 보면 〈表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조사법인 101 個法人中 稅金이 賦課된 73 個法人의 總賦課稅額은 415,787 千圓이고 稅金賦課法人當 平均稅額은 1983 年度보다 1,287 千圓이 증가된 5,696 千圓이며, 總調查法人當 平均稅額도 1983 年度보다 1,035 千圓이 증가된 4,117 千圓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法人別 1 法人當 平均

〈表 13〉

1984 年 各 協會別 課稅內譯 現況

(단위 : 천원)

區 分 法人名	税金計	法人稅	財産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稅
計	244,826	8,489	5,519		4,737		226,081
大 韓 老 人 會	20,024	4,462			892		부가세 14,670
韓國老人福祉施設協會	50						주민세 50
韓國社會福祉協議會	5,569		5,519				주민세 50
韓國社會事業施設聯合會	50						주민세 50
韓國精神療養施設協會	-						
韓國浮浪人施設福祉協會	-						
韓國視覺障礙者福祉會	167						
大韓家族計劃協會	213,961				167		
韓國健康管理協會	50	4,027			3,063		관세 194,928 등록세 11,898
大韓結核協會	4,950						주민세 50
大韓癩管理協會	50				615		관세 4,111 免許 稅11, 주민세 213
全國公園墓苑協會							주민세 50

賦課額을 보면 調査法人當 平均稅額의 경우나 税金賦課法人當 平均稅額 共히 社團法人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財團法人, 社會福祉法人의 순으로 1983년도와 같은 傾向이며, 그額에 있어서는 調査法人當 平均稅額이 社團法人의 경우는 6,005千원에서 무려 3.4倍나 增加한 20,402千원으로 나타났고, 社會福祉法人의 경우는 661千원의 50%에도 미달하는 295千원으로 감소한 傾向이다. 社團法人의 法人當 平均稅額이 증가한 원인은 〈表 13〉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관세, 법인세의 賦課額이 增加한 것에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다음은 各 稅別 總賦課稅額에 대한 實態를 보면 관세, 부가가치세, 주민세 등 기타세가 1983 年度の 38.3 %에서 1984 年度에 67.6 %로 크게 증가한데 비하여 다른 세의 비중은 감소한 傾向이나 各 稅目別 比重은 1983 年度와 같이 法人稅額이 가장 높고, 다음은 그 순위가 바뀌어져 取得稅, 防衛稅, 財産稅의 순으로 나타났다.

§ 3 . 市 · 道別 課稅現況

市 · 道別 課稅內譯 및 課稅金額別 現況을 보면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社團法人을 除外하고 財團法人과 社會福祉法人에 관한 實態를 分析하였다.

1) 財團法人

財團法人의 경우는 주로 公園墓苑을 目的事業으로 하는 法人을 調査한 結果 <表 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3 年度の 경우 總 23 個의 法人을 調査한 중에서 全體 調査法人의 91 %인 21 個 法人에 各種 稅가 賦課되었고 세금부과 法人當 平均 稅額은 全體的으로 8,390 千원인데 비하여 강원은 22,799 千원, 忠南은 11,897 千원으로 全體 平均額을 크게 상회하였고, 慶北, 慶南은 全體 平均額의 10 %程度에 불과한 傾向이다.

1984 年度の 경우도 <表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稅金 賦課 法人當 平均稅額은 全體的인 平均額이 1983 年보다 1,504 千원 감소한 6,886 千원이고, 市 · 道別의 傾向은 忠南의 경우는 1983 年과 같이 全

〈表 14〉

1983 年度 市・道別 財團法人 課税内譯 및 課税金額別現況

課税額/法人數 (단위: 천원)

區分	公 園 墓 苑 運 營							税金賦課法人當平均稅額	調査法人數	調査法人當平均稅額	備考
市道別	法人稅	財産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計				
計	57,342 16	28,535 12	38,149 3	9,851 16	848 7	41,461 18	176,186 21	8,390	23	7,660	
경 기	32,867 9	20,054 5	889 1	4,674 9	153 3	13,770 10	77,407 10	7,741	11	7,037	
忠 北	1,589 1	269 1		158 1			2,016 1	2,016	1	2,016	
忠 南	465 1	106 1		8 1		23,215 2	23,794 2	11,897	2	11,897	
江 原	20,300 2	3,063 3	37,260 2	4,559 2	21 1	3,194 3	68,397 3	22,799	3	22,799	
慶 北	2,121 3	24 1		388 2	545 2	616 2	3,394 4	924	5	739	
慶 南		19 1		64 1	129 1	666 1	878 1	878	1	878	

〈表 15〉

1984 年度 市・道別 財團法人 課税内譯 및 課税金額別現況

課税額/法人數 (단위: 천원)

區分	公 園 墓 苑 運 營							税金賦課法人當平均稅額	調査法人數	調査法人當平均稅額	備考
市道別	法人稅	財産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計				
計	45,414 17	1,219 12	8,088 4	15,744 17	28,253 7	52,784 17	151,502 22	6,886	23	6,587	
京 畿	24,879 10	571 4	1,136 2	12,297 9	27,124 3	17,685 9	83,692 11	7,608	12	6,974	
忠 北	4,073 1	163 1		814 1			5,050 1	5,050	1	5,050	
忠 南	4,796 1	106 2		48 1	8 1	31,806 2	36,764 2	18,382	2	18,382	
江 原	9,468 1	124 3	6,952 2	2,177 3	545 1	1,917 3	21,193 3	7,064	3	7,064	
慶 北	2,198 4	26 1		408 3	172 1	917 2	3,721 4	930	4	930	
慶 南		229 1			404 1	449 1	1,082 1	1,082	1	1,082	

體 平均額을 크게 상회한 額이며, 경기, 江原은 약간 상회한 稅額이 부과되었고 慶北, 慶南은 1983 年度와 같이 全體 平均額을 크게 하회한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傾向은 目的事業運營 내지 그 關聯事業의 實施規模에 따라 各種 稅額이 賦課되기 때문에 不均等한 傾向이 나타나는 것은 當然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市·道別間的 平均賦課稅額이 크게 差異가 있는 것은 各種 稅法의 適用上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社會福祉法人

社會福祉法人은 1983 年度에 總調查法人 58 個法人中 62 %인 36 個法人에 稅金이 賦課된 것으로 나타나 財團法人이나 社團法人에 比하여 各種 稅金의 賦課頻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市·道別 賦課傾向을 보면 <表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稅金賦課法人當 平均稅額은 全體的인 것이 1,066 千원인데 比하여 釜山은 2,304 千원, 경기는 1,532 千원 으로 크게 상회한 額이며, 忠北, 인천, 대구, 全北 等の 市·道는 전혀 부과되지 않거나 아주 적은 額이 부과되었음을 볼 수 있다.

1984 年の 경우도 <表 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3 年度와 비슷한 總調查法人 66 個法人中 64 %인 42 個法人에 稅金이 부과되었으며, 稅金賦課法人當 平均稅額은 1983 年度 1,066 千원의 약 43 %인 463 千원으로 나타났다. 市·道別로 비교해 보면 1983 年度와 비슷하게 京畿, 서울, 釜山은 全體의 平均額보다 상회한 額이고 대구, 忠北, 忠南, 全北, 仁川 等は 크게 낮은 額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表 16〉 1983 年度 社會福祉法人 市・道別 課稅內譯 稅 課稅額別 現況

課稅額／法人數 (單位：千圓)

區 分 市・道別	老 人 福 祉 施 設						
	小 計	法人稅	財產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計	628 4		73 1		62 2		493 4
서울							
釜 山	272 1						272 1
仁 川							
大 邱	209 1				34 1		175 1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103 1		73 1				30 1
全 北							
全 南	44 1				28 1		16 1
慶 北							
慶 南							

區分 市道別	精 神 療 養 施 設							小 計
	小 計	法人稅	財產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計	7,737 7	9 1		379 2	6,682 5		43 3	29,998 25
서 울								3,654 4
釜 山	6,936 2			237 1	6,682 2		17 1	13,531 6
仁 川								15 1
大 邱	18 1				3 1		15 1	
京 畿	11 1						11 1	10,715 6
江 原								
忠 北								
忠 南								725 2
全 北	165 2	9 1		142 1	14 1			478 3
全 南	607 1				607 1			880 3
慶 北								
慶 南								

課稅額／法人數（單位：千圓）

嬰・育兒・職業輔導施設						計	税金賦課法人當平均稅額	調査法人當平均稅額 調査法人數
法人稅	財產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3,411 6	16,844 9	964 2	6,987 8		1,792 15	38,363 36	1,066	661 58
904 1	2,564 2		36 1		150 3	3,654 4	914	609 6
2,467 1	3,270 3	940 1	6,210 3		644 4	20,739 9	2,304	2,304 9
					15 1	15 1	15	2 7
						227 2	114	114 2
17 2	10,596 3		40 2		62 2	10,726 7	1,532	1,341 8
								0 8
		24 1	701 2			828 3	276	276 3
					478 3	643 5	129	107 6
23 2	414 1				443 2	1,531 5	306	170 9

〈表17〉

1984 年度 市・道別 社會福祉法人

區分 市道別	老 人 福 祉 施 設							小 計
	小 計	法人稅	財產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計	676 6	17 1	80 1	73 1	51 2		435 3	1,080 6
서 울								
釜 山	336 1						336 1	713 3
仁 川								
大 邱								
京 畿								9 1
江 原								
忠 北	69 1						69 1	
忠 南	160 2		80 1	73 1	7 1			
全 北	17 1	17 1						358 2
全 南	74 1				44 1		30 1	
慶 北								
慶 南								

課稅內譯 吳 課稅金額別 現況

課稅額／法人數（單位：千圓）

精 神 療 養 施 設						嬰・育兒・職業輔導施設		
法人稅	財產稅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小 計	法人稅	財產稅
39 2	199 1	476 3	300 3	18 1	48 3	17,723 30	494 6	13,205 11
						3,688 5	302 1	3,218 3
31 1	199 1	404 1	40 1		39 2	3,835 6	135 2	2,044 2
						776 3		
						67 2	33 1	34 1
					9	7,072 5	8 1	6,927 3
						90 1		
8 1		72 2	260 2	18 1		300 3		
						1,895 5	16 1	982 2

課税額／法人數（單位：千圓）

區 分 市道別	嬰・育兒・職業輔導施設				計	税金賦課 法人當 平均稅額	調査法人當 平均稅額 調査 法人數
	所得稅	防衛稅	取得稅	其 他			
計	1,550 4	862 9		1,612 16	19,459 42	463	295 66
서울	54 1	5 1		109 3	3,688 5	738	461 8
釜山	1,220 1	306 2		130 4	4,884 10	488	488 10
仁川	194 1	107 2		475 2	776 3	259	111 7
大邱					67 2	34	22 3
京畿		40 2		97 2	7,081 6	1,180	885 8
江原							
忠北					69 1	69	8 9
忠南	82 1	8 1			250 3	83	50 5
全北				300 3	675 6	113	96 7
全南		396 1		501 2	1,969 6	328	219 9
慶北							
慶南							

이러한 傾向은 財團法人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法人의 事業規模에 따라 不均等한 傾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나 市・道別間的 平均賦課稅額이 크게 差異가 있는 것은 各種 稅法의 適用上에 있어 市・道間的 差異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 4. 施設支援金 對 課稅額의 比較

社會福祉法人이 運營하고 있는 施設에 對하여 政府는 收容者の 主副食費, 被服費, 教育費 등 直接費와 人件費, 施設増改築費 등 間接費를 支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支援費中 直接費와 間接費中 人件費는 당해 년도에 消費되고 社會福祉法人의 蓄積資産으로서 남는 것은 施設増改築費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調査에서는 社會福祉法人施設에 増改築費로 支援되는 國庫支援, 社會福祉 基金支援, 地方費支援額을 保健社會部 關係局課를 통하여 調査해 보았다.

調査한 結果는 <表 1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83 年度の 경우 全國 99 個施設에 總3,295,512 千원의 施設増改築費가 所要 되었는데 이중 47%인 1,550,271 千원을 國費 또는 社會福祉基金, 地方費 등으로 支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支援額은 支援施設 1 個施設當 平均적으로 15,659 千원이 支援된 셈이다. 이는 세금부과법인당 平均稅額 1,066 千원과 比較하면 支援額의 約6.8%를 税金으로 환수하는 結果라고 할 수 있다.

좀더 論理的으로 比較한다면 支援施設當 平均支援額으로 하는 것 보다 社會福祉法人이 運營하는 全體 精神療養施設 32 個, 老人福祉施設 58 個, 영·육아·직업보도시설 283 個에 대한 平均支援額을 算出하여 比較

〈表 18〉

1983 年度 社會福祉施設

區 分 市道別	精 神 療 養 施 設					老 人 福 祉		
	小 計	國 庫 支 援	社 會 福 祉 基 金 支 援	地 方 費	自 負 體 擔	小 計	國 庫 支 援	社 會 福 祉 基 金 支 援
計	522,496 7	69,350 2	134,854 4	156,851 7	161,441 7	379,991 12	80,170 6	84,400 6
서울								
釜 山	138,865 2	34,675 1	36,000 1	52,675 2	15,515 2			
大 邱	121,529 2		53,854 2	31,000 2	36,675 2	45,020 1		19,285 1
仁 川						56,670 1		19,285 1
京 畿						27,137 1	13,362 1	
江 原								
忠 北								
忠 南	148,900 1		45,000 1	22,500 1	81,400 1	48,292 3	13,362 1	7,260 1
全 北	17,680 1			8,000 1	9,680 1	44,114 1	13,362 1	
全 南						56,120 2	13,362 1	19,285 1
慶 北	95,522 1	34,675 1		42,676 1	18,171 1	62,698 2	13,362 1	19,285 1
慶 南						39,940 1	13,361 1	
濟 州								
其 他 (不明)								

増・改築費 支援住況

支援額／施設数（単位：千円）

施 設		嬰・育 児・職 業 輔 導 施 設					計	
地方費	自 體 費 担	小 計	國 庫 支 援	社 會 福 祉 基 金 支 援	地方費	自 體 費 担	計	國 庫 支 援 額
103,590	111,831	239,302	202,081	367,377	351,598	147,196	329,512	351,601
8	11	80	55	25	69	79	99	63
		98,548		41,824	30,000	26,724	98,548	
		2		2	1	2	2	
		114,002	18,000	27,734	18,000	50,268	252,867	52,675
		4	1	3	1	4	6	2
5,000	20,735	59,107	16,000	20,000	16,000	7,107	225,656	16,000
1	1	2	1	1	1	2	5	1
17,000	20,385	115,751	11,000	40,000	31,000	107,517	121,418	11,000
1	1	4	1	3	3	4	5	1
13,775		80,787	18,000	3,965	18,000	40,822	107,924	31,362
1		2	1	1	1	2	3	2
		83,671	11,000	28,000	12,200	32,471	83,671	11,000
		3	1	2	2	3	3	1
		105,127	10,000	40,531	39,100	15,496	105,127	10,000
		3	1	2	3	3	3	1
13,775	13,895	69,416	17,000	21,431	22,000	8,985	266,608	30,362
1	3	3	1	2	2	2	7	2
13,568	17,184	69,793	14,639	29,327	21,356	4,471	131,587	28,001
1	1	3	1	2	2	3	5	2
13,087	10,386	241,100	20,000	54,000	63,000	104,100	297,220	33,362
1	2	4	1	3	4	4	6	2
13,610	16,442	91,499	14,000	15,600	18,500	43,399	249,719	62,036
1	2	2	1	1	2	2	5	3
13,775	12,804	97,785	17,000	33,965	27,000	19,820	137,725	30,361
1	1	3	1	2	3	3	4	2
		63,613	10,000	11,000	10,000	32,613	63,613	10,000
		2	1	1	1	2	2	1
		61,060	25,442		25,442	10,176	61,060	25,442
		43	43		43	43	43	43

支援額／施設數（單位：千圓）

區 分 市道別	計			國庫, 基金 地 方 費 支 援 額	1 個施設 當 平 均 施設改善費	1 個施設 當 平 均 支 援 額	備 考
	社會福祉 基金支援	地 方 費 支 援	自 體 負 擔				
計	586,631 35	612,039 84	1,745,241 97	1,550,271	33,288	15,659	
서울	41,824 2	30,000 1	98,548 2	71,824	49,274	35,912	
釜 山	63,734 4	70,675 3	65,783 6	187,804	42,145	31,301	
大 邱	93,139 4	52,000 4	64,517 5	161,139	45,131	32,228	
仁 川	59,285 4	48,000 4	1,095,902 5	118,285	242,837	23,657	
京 畿	3,965 1	31,775 2	40,822 2	67,102	35,975	22,367	
江 原	28,000 2	12,200 2	32,471 3	51,200	27,890	17,067	
忠 北	40,531 2	39,100 3	15,496 3	89,631	35,042	29,877	
忠 南	73,691 5	58,275 4	104,280 6	162,328	38,086	23,190	
全 北	29,327 2	42,924 4	31,335 5	100,252	26,316	20,050	
全 南	73,285 4	76,087 5	114,486 6	182,734	49,537	30,456	
慶 北	34,885 2	74,786 4	78,012 5	171,707	49,944	34,341	
慶 南	33,965 2	40,775 4	32,624 4	105,101	34,431	26,275	
濟 州	11,000 1	10,000 1	32,613 2	31,000	31,807	15,500	
其 他 (不 明)		25,442 43	10,176 43	50,884	1,420	1,183	

〈表 19〉 1984년도 社會福祉施設 増・改築費 支援現況

支援額／施設數 (單位：千圓)

區分 市道別	精 神 療 養 施 設					老 人 福 祉 施 設		
	小 計	國 庫 支 援	社 會 福 祉 基 金 支 援	地 方 費	自 體 擔 當	小 計	國 庫 支 援	社 會 福 祉 基 金 支 援
計	241,386 26	286,992 10	713,806 16	637,327 19	775,061 25	544,823 11	198,981 6	81,418 5
서울						54,634 2		34,923 2
釜 山	212,769 5	57,450 2	45,843 2	65,050 3	44,426 5	55,000 1	25,082 1	
大 邱	96,859 2		84,020 2		12,839 2	51,614 2	14,257 1	10,900 1
仁 川	59,450 1	28,725 1		28,725 1	2,000 1	120,368 1	60,184 1	
京 畿	560,103 3	28,725 1	73,800 1	241,725 3	215,853 3			
江 原						50,164 1	25,082 1	
忠 北	154,319 2	28,725 1	34,850 1	28,725 1	62,019 2	58,882 2	14,191 1	17,500 1
忠 南	715,116 3	28,725 1	210,026 3	118,733 3	357,631 3			
全 北	283,848 4	28,725 1	170,865 3	38,725 2	45,533 4	33,791 1		18,095 1
全 南	56,936 1	28,468 1		28,468 1		120,370 1	60,185 1	
慶 北	185,758 3	28,725 1	83,545 3	53,952 3	19,536 3			
慶 南	88,029 2	28,724 1	10,857 1	33,224 2	15,224 2			
濟 州								

區分 市道別	老人福祉施設		嬰・育兒・職業輔導施設				
	地方費	自體負擔	小計	國庫支援	社會福祉 基金支援	地方費	自體負擔
計	222,066 10	42,358 7	1,992,173 55	448,195 32	507,920 23	631,555 52	404,503 51
서울	8,985 1	10,726 1	29,600 1	14,800 1		14,800 1	
釜山	25,082 1	4,836 1	112,300 3	38,500 2	15,000 1	38,500 2	20,300 3
大邱	15,857 2	10,600 2	145,080 4	55,000 3	20,000 1	60,000 4	10,080 3
仁川	60,184 1		150,500 5	46,325 4	15,000 1	56,325 5	32,850 5
京畿			254,020 7	40,500 4	69,500 3	49,070 6	94,950 7
江原	25,082 1		114,402 3	25,000 2	15,000 1	40,000 3	34,402 3
忠北	21,691 2	5,500 2	110,700 4	22,500 1	39,200 3	26,300 4	22,700 4
忠南			148,584 7	37,000 5	40,950 2	49,550 7	21,084 7
全北	5,000 1	10,696 1	229,472 5	33,000 2	34,398 3	82,408 5	39,666 3
全南	60,185 1		159,956 3	44,500 2	42,700 6	50,760 3	21,996 3
慶北			281,432 6	31,000 2	110,886 4	67,086 5	72,460 6
慶南			212,724 5	38,500 2	65,286 3	75,186 5	33,752 5
濟州			43,403 2	21,570 2		21,570 2	263 2

支援額／施設數（單位：千圓）

計					國庫,基金 地方費 支援額	1個施設當 平均施設 改善費	1個施設當 平均 支援額	備 考
小 計	國 庫 支 援	社 會 福 社 基 金 支 援	地 方 費	自體負擔				
4,950,182 92	934,168 48	1,303,144 44	1,490,948 81	1,221,922 83	3,728,260	53,806	40,525	
84,234 3	14,800 1	34,923 2	23,785 2	10,726 1	73,508	28,078	24,503	
380,069 9	121,032 5	60,843 3	128,632 5	69,562 9	310,507	42,230	34,501	
293,553 8	69,257 4	114,920 4	75,857 6	33,519 7	260,034	36,694	32,504	
330,318 7	135,234 6	15,000 1	145,234 7	34,850 6	295,468	47,188	42,210	
814,123 10	69,225 5	143,300 4	290,795 9	310,803 10	503,320	81,412	50,332	
164,566 4	50,082 3	15,000 1	65,082 4	34,402 3	130,164	41,142	32,541	
323,901 8	65,416 3	91,550 5	76,716 7	90,219 8	233,682	40,488	29,210	
863,700 10	65,725 6	250,976 5	168,283 10	378,715 10	484,984	86,370	48,494	
547,111 10	61,725 3	263,358 7	126,133 8	95,895 8	451,216	54,711	45,122	
337,262 5	133,153 4	42,700 1	139,413 5	21,996 3	315,266	67,452	63,053	
467,190 9	59,725 3	194,431 7	121,038 8	91,996 9	375,194	51,910	41,688	
300,753 7	67,224 3	76,143 4	108,410 7	48,976 7	251,777	42,965	35,968	
43,403 2	21,570 2		21,570 2	263 2	43,140	21,702	21,570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983年度에 정부가 지원한 1,550,271千원을 앞의 해당시설 총 373個施設에⁴⁴⁾ 平均한다면 1個施設當 4,156千원을 支援하는 것으로 <表 18>에 나타난 社會福祉法人의 總調査法人當 平均總額 661千원과 比較하면 政府支援額의 約 16%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결과가 된다.

1984年度の 경우는 <表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92개 시설에 총 4,950,182千원이 施設増改築費로 소요되었는데 이중 75%인 3,728,260千원을 정부가 支援한 것으로 1983년도에 비하면 2배이상으로 増額된 것이다. 그리고 1個施設當 平均支援額도 約 2.6倍 増加한 40,525千원으로 나타 났다.

앞에서 論한 바와 같이 1984年度 해당시설 총 382個施設⁴⁵⁾(養老施設 62, 정신요양시설 40, 영·육아·직보시설 280)에 대한 平均支援額을 算出하면 9,760千원으로 이 金額과 <表 17>에 나타난 社會福祉法人의 調査對象法人當 平均稅額 295千원을 比較하면 政府支援額의 3%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1983년에 比하여 아주 낮은 比率이다. 이러한 傾向은 政府支援額이 1984년에 大幅 増加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第 3 節 課稅決定과 取消 事例

今般 本 研究의 調査對象에서 漏落된 法人중에 租稅滯納으로 인하여 法人의 基本財産이 押留되었다고 韓國法人 問題研究所를 찾아서 呼訴하는 問題法人도 상당수에 達하고 있다. 이러한 問題法人들 中에서 가장 最近에

註 44) 보건사회통계연보, 1984. P.159 ~ 128

45) 보건사회부통계연보, 1985년판, P.136 ~ 163

相談한 10餘個의 法人中 5個法人의 課稅決定과 取消事例 內容을 살펴 보면 忠南의 K社會福祉法人과 서울의 D社團法人 그리고 忠北의 C社會福祉法人 및 全南의 M社會福祉 法人, 釜山の S社會福祉法人等を 들 수 있다. 그 以外에도 大邱, 馬山, 木浦, 大田, 仁川, 京畿 等에도 租稅問題로 인한 問題法人이 있으나 大部分 課稅內容이 유사함으로 省略하고 5個法人에 대한 課稅決定과 取消事例를 소개하여 租稅制度改善資料에 參考코자 한다.

이들 5個法人中 2個法人은 行政訴訟 또는 租稅審判에 依하여 賦課決定과 課稅處分이 取消되거나 勝訴判決에 依하여 防衛稅 賦課處分이 取消되고 訴訟費用도 廢訴側인 被告의 負擔으로 한다고 判示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3個法人은 除斥期間이 滿了되어 異議를 提起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法人의 基本財産은 租稅滯納으로 因하여 押留되어 法人의 目的事業에 莫大한 차질을 招來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筆者는 이러한 모순이 是正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各 法人別 特殊한 事情에 依한 租稅滯納과 課稅決定의 取消事例 等を 열거하고 判決文과 租稅審判決定書의 內容을 要約하였다.

§ 1 . 忠南 K 法人의 경우

忠淸南道의 K社會福祉法人의 境遇는 오랜 歲月동안 많은 業績을 남기고 最近에 이르러 法人의 遊休基本財産을 效率的으로 活用할 目的으로 土地 112,380 坪과 舊建物 1,296 坪을 2,246,042,460 원에 賣渡하고 335,101,305 원의 銀行融資金을 補充하여 總豫算 2,581,143,765 원을 드러 延 面積 3,000 餘坪의 9 層 會館建物を 新築하였다. 勿論 이 法人은 許

可에 依한 基本財産이 變動되었으나 뜻하지 않았던 各種 稅金이 賦課되어 事業의 차질이 招來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法人에 賦課된 稅金의 內譯은 土地와 建物の 處分에 따른 防衛稅가(加算金 包含) 199,752,152 원이고 新築建物の 取得에 따른 取得稅 4,000 萬원 登録稅 3,000 萬원等 總賦課稅額이 약 2 億 6 千萬원에 達하고 한다.

勿論 이 法人이 取得登記한 財産의 總額은 약 26 億원에 達하고 있으나 이中 23 億程度는 法人의 固有目的事業을 爲한 積極的 財産이고 약 3 億원정도는 法人의 負債에 해당하는 消極的 財産임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稅金이 課稅되어 事業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福祉社會建設을 위한 政府施策과 課稅 形평의 原則과는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 防衛稅(加算金 包含) 약 2 億원 상당은 1985 年 7 月 5 日 자로 賦課處分 取消判決이 宣告되었고 財産取得稅 4 千萬원과 登録稅 3 千萬원은 現在 異議申請中에 있다. 이 法人의 判決內容에 依하면 서울 高等法院第 1 特別部 判決事件 84 구 361 : 防衛稅賦課處分取消事件의 辯論 終結은 1985.6.4.이고 判決宣告는 1985.7.2.자로 되어 있다.

1) 注文 :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3.5.4.자로 防衛稅金 166,460,127 원과 加算金 33,292,025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訴訟費用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피고는 원고 1979.6.28. 그 소유의 토지 112,380 평의 토지와 그 地上建物 1,296 坪을 代金 2,246,042,460 원으로 매각하였다 하여 讓渡價額

은 實際去來價額을 基準으로 하고 取得價額은 1968.1.1을 基準으로 한 基準時價에 의하여 그 讓渡差益을 計算한 후 원고는 特別附加稅가 免除되는 법인이므로 免除받은 特別附加稅額에 대한 防衛稅와 원고의 滯納으로 인한 加算稅로서 1983.5.4.자로 주문과 같은 稅額을 부과지한 事實을 認定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 시행되던 法人稅法第 59條의 2 第3項의 規定은 양도價格과 取得價額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價額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주장에 따라 위 두 價額을 모두 基準時價에 의하여 算定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에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事件 부동산 매도에 따른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은 實地 讓渡價額으로 取得價額은 基準時價를 適用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必要도 없이 위법한 것으로 돌아가 그 取消을 면치 못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請求는 정당하므로 이를 引用하고 訴訟費用은 敗訴者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선고하였다.

§ 2 . 서울의 D社團法人의 경우

이 法人은 固有目的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기 위하여 收益事業을 行하여 不遇한 靑少年들의 우발적인 犯罪로 인하여 刑期를 마치고 社會에 나오면 전과자라는 烙印이 찍혀 冷待를 받다 못해 또다시 再犯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現實이었다.

이러한 출소자들에 대하여 本 法人은 母性愛를 發揮하여 保護하고 職業教育을 하여 自立基盤을 造成하는 등의 事業으로 밝은 社會를 이룩하고자 出所

者保護事業을 하였다.

그러나 稅務當局에서는 收益事業을 하였다는 理由로 總 90,621,322 원의 各種 稅金을 賦課하였다. 課稅 決定內譯은 <表 20>과 같이 加算金을 包含하여 法人稅 53,421,122 원, 부가세가 14,458,511 원, 法人營業稅 4,930,175 원, 源泉法人稅 17,811,514 원으로 課稅決定이 되었다. 이와같은 稅金賦課에 對하여 不當하다는 理由로 異議申請을 하여 國稅審判을 청구하였다. 國稅審判決定書 內容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심판청구事件에 관하여 국제심판(합동)회의의 의견을 제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사업년도분의 법인세, 법인영업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등 77,449,613 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을 취소하고 실지조사를 결정한다.

2) 이유: 청구인은 民法第 32 條 및 公益法人의 設立運營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非營利公益事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社團法人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업년도분 법인세 등을 조사하여 동 사업년도의 법인세, 법인영업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77,449,613 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처분청이 추계 결정한데 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판매행위를 청구법인의 판매행위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莫然히 실지조사가 불가하다 하여 위세금을 추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결정: 청구법인은 제일제당(주)로부터 조미료, 설탕등을 구입하여 판매거래한 行爲가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니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일제당의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계약 당사자로 되어 있어 대금의 결제責任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收益事業중 縫製부분과 印刷부분에 대한 장부와 證憑書類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인세 등을 추계 결정하였음은 이 건 關係書類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認定됨으로 국세기본법 제 65條第 1 項第 3 號 規定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表 20 >

課 稅 決 定 內 譯 書

(單位: 원)

稅 目	稅 金 額	加 算 金	備 考
법 인 세	698,244		이중 77,449,613 원의 결정처분은 취소하고 실지조사를 결정하다.
"	6,104,539	680,277	
"	4,231,998		
"	37,526,708	4,175,869	
"	3,170	317	
부가가치세	13,144,101	1,314,410	
법인영업세	807,946	80,794	
" "	3,674,032	367,403	
원천법인세	5,233,015	67,173	
"	671,733	124,001	
"	1,240,010		
"	9,047,529	904,752	
計	82,383,025	8,238,297	總計 90,621,322

이상과 같이 추계 결정한 稅金總額 77,449,613 원은 賦課決定이 取消

되고 실지調査를 실시하여 <表 21>과 같이 42,291,907 원을 決定하였으므로 每月 200 餘萬원씩 2 年以上 分納을 하게 되니 상대적으로 他 稅金도 1,500 餘萬원이 滯納되고 있는 實情이다.

이 法人은 이와같은 稅金이 賦課되에 따라 오랜 歲月동안 非營利 公益事業의 實績을 자랑할 수 있는 健全한 法人이 各種 租稅를 부담할 정도로 營利事業을 하였다는 理由로 會長團이 불신임을 당하는 등 收益事業이 中斷되는가 하면 계속되는 紛爭으로 인하여 종말에는 執行部가 刑事責任까지 지게되는 事態로 擴大되어 對外的으로 內紛이 極甚한 不實法人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法人을 保護하는 公職者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表 21>

變 更 決 定 稅 金 額

(單位：원)

稅 目	稅 金 額	備 考
法 人 營 業 稅	11,067,624	이 세금은 실지조사결과 에 의한 재조정 세금임.
附 加 價 值 稅	16,263,156	
法 人 稅	11,844,669	
甲 勤 稅	3,116,458	
計	42,291,907	

§ 3 . 忠北의 C 法人의 경우

이 法人은 社會福祉事業法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設立의 要件은 같은法 第12條 規定에 依한 基本財産과 普通財産을 所有

하고 같은 법 施行規則第6條의 規定에 의거 法人 및 施設의 年間 總 運營費中 基本財産收入 20 % 以上을 充當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法人의 年間財産收入 19,400,000 원은 1983年度 豫算額 184,399,000 원의 11 %에 不過한 實情이며 이 같은 豫算은 全額 被收容者들을 위하여 直接 使用되고도 不足하여 每年 法人의 消極的 財産인 負債만 늘어나는 實情이다.

이와같이 不足한 運營費를 補充하기 위하여 쓸모없는 法人의 財産 7,741 坪을 處分하여 延建坪 1,098 坪의 會館을 新築하였든 바, 防衛稅 24,793,000 원이 賦課되어 事業의 莫大한 차질을 招來하고 있으므로 稅務當局에 異議申請을 하였으나 除斥期間이 滿了되었다는 理由로 新築建物全體가 押留되어 있는 實情이다.

§ 4 . 全南의 M 社會福祉法人의 경우

大部分의 社會福祉法人이 그러하듯이 이 法人도 國家가 어려운 時期에 處하였을 때 基督教의 博愛精神으로 地域社會 福祉增進을 위하여 熱心히 奉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政府施策의 一環인 福祉社會建設과 正義社會 具現에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社會福祉法人들은 政府가 社會福祉事業에 民間資本 誘致方案으로 設立認可한 法人으로서 年間 總 運營費의 20 %에 해당하는 基本財産收入을 充當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法人設立의 基本要件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法人은 이와같은 法定要件을 充當할 수 있는 都市計劃에 依한 他意에 의하여 基本財産을 收用당하고 그 代價로 받은 補償受領額 總 552,215,500 원으로 他 地域에 土地 2,866 坪을 매입하여 總建坪 753

坪의 施設을 設置하였든 바, 防衛稅가 加算금을 包含하여 總 36,558,370원 이 賦課되었으나 이 法人 역시 基本財産을 處分하기 前에는 擔保能力이 없는 것이다. 이같이 擔保能力이 없는 社會福祉法人에 稅金を 賦課하고 이 法人의 租稅 滯納으로 因하여 法人의 基本財産을 押留하여 競賣處分을 하였을 境遇에 主務官廳의 許可없이 명의 移轉이 不可能한 것으로 思料된다. 그러므로 이 法人은 他意에 의하여 財産의 變動이 온 것이므로 稅金を 納付해야 할 理由가 없다고 하여 1985.12.15. 현재 光州高等法院에 行政訴訟이 계류중에 있는 實情이다.

§ 5 . 釜山의 S 社會福祉法人의 경우

이 法人은 30 餘 年間 兒童福祉事業으로 國家와 社會發展에 寄與한 事業의 實績이 本 研究者의 現地踏査와 文獻調査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 法人의 基本財産은 垆地 2 萬餘坪과 建物 10 棟에 延建坪 1,000 餘坪에 收容人員 1,500 餘名中 850 餘名이 社會에 進出하고 現在 187 名の 兒童이 收容 保護되고 있다. 취학兒童은 國民學生 59 名, 中學生 63 名, 高等學生 33 名 大學生 12 名 其他 未就學兒童 및 學院生等 20 餘名 으로서 이들의 生活費 및 教育費가 年間 1 億 3 千萬원에 達하고 있으므로 이를 充當할 目的으로 收益事業財産을 確保하였든 바 ,

租稅減免規制法上 收容兒童이 直接 使用하는 建物과 土地에 대하여는 財産稅를 免除한다고 되어있고 法人稅法上에도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하여 設立한 社會福祉法人의 福祉事業費 施設費, 運營費 等으로 支出하는 寄附金 等에도 各種 稅金を 免除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으나 이 法人의 基本財産收入 20 %는 최소한 收容兒童이 直接 使用하는 것임에도 不拘하고

〈表22〉에서 보는 바와 같은 財産稅가 賦課되어 督促을 받고 있는 實情이다.

〈表 22 〉

財 産 稅 內 譯

(單位 : 원)

課稅表示 建物區分	課 稅 番 號	課 稅 金 額	財 産 所 有 者
북 도 및 계 단	1299	268,122	S社會福祉法人
대 피 소	1300	305,887	
노 인 정	1301	45,965	
주 차 장	1302	174,579	
地 下 3 層 店 舖	1303	216,851	
地 下 2 層 店 舖	1304	317,124	
集 團 住 宅	1170-1243 까지	1,151,240	
計		2,479,763	

第 6 章 結 論

第 1 節 研究結果에 따른 問題點

§ 1 . 法人成立에 關한 問題

人類의 歷史는 그 構成團體의 社會性과 相互依存속에서 成長發展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人外 法人格을 構想한 것도 社會形成의 目的으로서 必要的 所産으로 存在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의 發展段階와 그 本質에 따라 法人制度에도 뚜렷한 差異를 두고 있다. 本 研究의 內容中 法人成立에 關한 問題의 焦點은 바로 이 法人制度의 差異點인 것이다.

法人의 實體가 사람 또는 財産의 結合體인 만큼 團體의 發展에 따라 法人制度에 關한 法人의 理論도 發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法人의 理論은 1950 年代의 日本民法學者들이 주장한 民法中 法人에 關한 理論을 그대로 導入하여 오늘날까지 새로운 理論의 續立도 없이 各 行政部處의 裁量權에 의하여 法人이 成立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非營利公益法人은 民法第 32 條를 根據로 하여 各 單行法으로 發展되어 왔으나 그 成立의 要件에 差異가 있을 뿐만 아니라 定款의 記載事項, 財産의 規模, 稅制의 惠澤等도 각기 다르게 規定하고 있다.

1) 定款의 記載事項

民法第 40 條~ 43 條 및 49 條는 定款의 절대적 記載事項으로서 40 餘年間 變함없이 存續되고 있다. 定款의 絶對的 記載事項이란 반드시 記載되어야 할 事項이며 만약 記載하지 않으면 그 定款 全體가 無效化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定款의 記載事項도 法人의 國籍과 時代의 變遷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法人들은 大部分 民法의 規定에만 얽매어 있으므로 問題法人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떠한 法人을 設立하기 위하여 單行法 또는 特別法을 制定하거나 改正할 때 絶對的 記載事項中 設立法人の 歴史的 背景과 地域的 與件 그리고 設立의 動機 등이 수록된 法人設立의 趣旨文을 記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民法에 規定이 없다는 理由로 無視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記載事項도 없이 法人이 成立된다면 먼 훗날에 반듯이 問題法人化가 되어 그 法人에는 끝없는 紛爭이 계속된다는 것은 筆者가 實際 證明을 한지도 어언 10餘年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法人定款의 記載事項中 絶對的 記載事項과 任意的 記載事項 또는 必要的 記載事項等を 區分 記載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2) 財産에 關한 事項

法人定款의 記載事項과 關聯되는 事項으로서 法人이 財産을 形成하는 것은 그 財産을 出捐日로부터 設立行爲로 보는 것이 原則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出捐財産은 반드시 積極的 財産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現行 各 單行法에는 消極的財産도 基本財産으로 認定해 주는 모순이 있다. 예를 들면 法人에 出捐財産이 國有財産일 境遇 50%以上 불하대금이 完納되면 可能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財産으로 法人을 設立許可 또는 認可를 한다면 50 %는 積極的 財産이고 50 %는 消極的 財産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法人은 設立者의 良心에 따라서는 불하대금이 完納되면 100 % 私有財産化를 시켜서 主務官廳의 許可없이 處分하는 事例도 있다.

또한 既存法人이 財産을 追加로 取得하는 것은 處分行爲로 보지 않기 때문에 各 部處別 法人設立 및 監督規則에 法人이 財産을 追加로 取得하면 이것을 報告事項으로 規定하였기 때문에 財産의 追加出捐者가 心境의 變化를 일으키거나 被相續權者의 訴訟에 依하여 法人에 出捐 財産을 환수받는 事例도 있다.

3) 組織에 關한 事項

法人의 成立도 사람에 依하여 法으로 그 人格이 부여되고 있는 無形의 사람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의 組織도 自然人的 人體形成과 같이 個人이 모여서 하나의 組織 또는 一團의 財産이 形成되고 그 組織 또는 財産으로 目的事業을 수행하는 議決機關 또는 執行機關이 形成되고 이 機關을 指導監督하는 主務官廳 즉 系統이 形成되는 것이다.

法人도 이와같이 自然人的 人體構成에 있어서 細胞가 모여서 組織이 되고 組織이 모여서 器管을 형성하고 器管이 모여서 系統을 형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法人의 組織原理가 自然人和 유사하다면 同一한 目的意識을 가진 自然人的 集團에 各者 個性과 주의주관이 다른 것과 같이 法人도 同一한 目的事業을 위하여 設立되었다 할지라도 各 法人마다 特色이 있고 設立의 動機와 地域的 與件 그리고 歷史的 背景이 다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各 部處別로 法人設立을 爲한 定款의 準則을 두어, 準則에 依하여 法人設立을 속박한다는 것은 民主主義基本原則이 배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法人의 人格을 모독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法人組織에 關한 問題는 設立後의 運營過程에 계속 發生하는 원인은 設立當初에 定款의 準則이라는 남의 옷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 問題法人은 끝없이 속출할 것이다.

§ 2 . 租稅制度에 關한 問題

1) 民法第38條規定에 依하면 法人이 目的以外的 事業을 하거나 設立許可條件을 違反하거나 其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것은 즉 非營利 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에 各種 稅金이 賦課된다는 것은 取消要件이 될 수 있는 目的以外的 事業을 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民法第32條의 根據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과 各 單行法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等은 根本적으로 非課稅法人이라는 것이 民法第38條의 根據와 當해법인의 目的 事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各種 稅金이 賦課된 大部分의 法人들은 固有目的事業을 圓滑히 수행하기 위하여 財産의 代替 또는 目的事業에 의한 所得 等に 課稅되고 있음이 금반 本 調查研究結果에 의하여 밝혀졌다.

勿論 과거에는 極少數의 法人들이 非營利公益을 빙자한 脫稅 營利行爲를 하거나 目的事業을 빙자한 재산逃避行爲도 없지 않으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옛말일뿐 이제 法人들이 着實하게 自立基盤을 組成하여 國家豫算을 節

減하려고 努力하고 있는데 租稅問題로 因하여 그 意慾을 상실한 法人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法人稅法에 의하면 民法第 32 條 規定에 依한 유사한 設立目的을 가진
法人에 대하여는 이 法이 規定하는 收入에서 생긴 所得에 限하여 法人
稅를 賦課한다고 하였으나 同一한 非營利公益事業을 目的으로 한 法人에
法人稅가 賦課되고 있다.

2) 더우기 一般營利法人은 最高稅率 38%에서 30%로 引下 되었으나
非營利法人인 醫療法人의 境遇 27%라는 僅少한 차이로 고정되고 있다
는 것은 一般病院을 醫療法人으로 유치하려는 政府施策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1985 년도부터 施行되는 租稅減免規制法에 依하면 公共法人等
에 대한 法人稅 課稅特例로서 5%의 새로운 法人稅가 賦課되고 있다.

相續稅法에 依하면 公益事業에 出捐한 財産은 그 公益性에 비추어 相
續稅와 贈與稅를 免稅하고 있지만 그 出捐者와 特別한 關係에 있는 者
가 任員으로 就任하거나 公益事業을 直接 運營하는 경우에는 公益 性에
지장이 있으며 出捐者의 眞情한 公益法人 設立意思에 反한다고 보아 상
속세 증여세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醫療法人의 境遇는 例外的으로 相續稅와 贈與稅가 免除되고
있다.

3) 이 경우 醫療人이나 學校法人, 社會福祉法人 또는 各 單行法에 依
한 財團法人 및 社團法人도 自己의 財産上의 損失로 相對方에게 利益을
가져오게 하는 財産의 出捐行爲에 相續稅와 증여세가 免稅되지 않는다는
것은 課稅의 公平을 기하고 租稅政策을 效率的으로 수행 함으로써 國民經
濟의 健全한 發展에 기여한다는 目的과는 多少 差異點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醫療法人의 境遇 醫師가 直接 法人에 財産을 出捐하고 그 法人에 任員으로 就任하여도 相續稅와 증여세가 免稅될 수 있다면 社會福祉士資格證을 所持하였거나 教師의 資格證을 所持한 者 또는 其他 各 專門職種の 有資格者가 法人에 財産을 出捐하고 그 法人에 任員으로 就任할 時 相續稅와 증여세가 免稅되어야만이 非營利公益法人 設立에 있어서 더 많은 民間 資本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4) 非營利公益法人에 대한 各種 稅金賦課의 增加

法人稅法, 地方稅法, 關稅法, 附加價值稅法 等에는 公益을 目的으로 하는 非營利法人에 非課稅 또는 免稅의 惠澤을 받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1983 年度에는 調査한 法人의 69.9%가 防衛稅, 法人稅 등이 부과되었고 1984 年度에는 調査한 法人의 72.3%에 各種 稅金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볼 때, 每年 稅金의 賦課率이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調査에서는 賦課되는 稅種 및 稅額의 程度를 把握하는데 두었기 때문에 그 課稅의 賦課要因에 대해서는 明確히 알 수 없으나 調査結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財産稅, 農地稅, 取得稅, 登錄稅 等 非課稅되어야 할 各種 稅金이 상당수의 法人에 부과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983 年度 總調査法人에 대한 1法人當 平均稅額은 3,082千원이고 1984 年度에는 4,117千원으로 每年 稅金額이 增加하고 있다. 이를 保健社會部所管 總法人 805 個에 年間 賦課되는 稅額을 計算한다면 1983 年度에는 약 25 億원, 1984 年度에는 약 34 億원이 부과되고 있는 實情임을 알 수 있다.

5) 稅務公務員 및 法人任職員の 各種 稅法에 대한 理解不足

社會福祉事業과 關聯된 各種 稅法の 해석상에 있어 稅務公務員의 文

理解釋이나 主觀的인 判斷에 따라 非營利法人의 事業與否 및 用途의 區分이 애매해질 수 있음으로써 이에 따라 稅金이 부과되거나 非課稅가 될 수 있는 事例가 발생될 수 있는 事例가 發生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各 市道別間의 法人에 對한 各種 稅金이 부과된 比率이나 平均 賦課稅額에 큰 差가 있는 점에서 推定할 수 있다.

또한 非營利法人의 任職員이 各種 稅法에 관한 知識이 貧弱하여 非課稅 또는 免稅될 수 있는 것도 事務處理 및 장부정리의 미숙으로 各種 稅金이 부가될 수 있거나 세무당국에 의하여 부가되고 있는 各種 稅金에 대하여 그 正當한 부과여부를 判斷하지 않고 消極的으로 納稅義務를 다하자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6) 非營利公益法人에 대한 非課稅 및 免稅規定의 微弱

現行 關稅法 第28條의 6 第1項 2號에는 外國으로 부터 社會福祉施設에 기증되는 物品이 당해 用途에 直接 供與될 경우에는 輸入關稅가 免稅되고 있으나 非營利法人에 社會福祉施設 아닌 社會福祉事業에 使用될 物品이 外國으로 부터 기증될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세될 수 없는 問題點이 있다.

또한 非營利公益法人에 부과되는 稅金中 防衛稅는 總調查法人의 34.4 %가 賦課되고 있다. 防衛稅는 防衛稅法第2條第2項에 租稅減免規制法(同法第3條에 계기하는 法律을 包含) 또는 經濟의 安定과 成長에 관한 緊急命令의 規定에 의하여 關稅,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그 減免 또는 控除를 받은 者도 防衛稅의 納稅義務者로 보고 同法 第4條第2項에 의거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賦課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또는 控除된 부분에 대하여도 그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부과된 것으로 보고 있

기 때문에 그 부과되는 法人의 수가 많은 것으로 思料된다. 예를 들면 法人稅法第 59 條의 3 第 1 項第 13 號에 의하여 讓渡所得에 대한 非課稅 및 免稅가 된다하여도 防衛稅는 賦課되고 있다.

또한 所得稅法第 5 條에는 일부 특정분야에 대한 利子所得,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기타所得, 讓渡所得 등을 非課稅하고 특히 事業所得의 경우는 농어민이 副業으로 營爲하는 畜產, 양어, 가공품, 其他의 所得에 대한 非課稅規定을 두고 있으나 非營利公益法人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非課稅規定은 없고 다만 同法第 49 條第 1 項 및 同法施行令第 102 條第 1 號에 의거 당해 所得金額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金額을 指定寄附金으로서 免稅받을 수 있을 뿐이다.

7) 정부의 社會福祉施設 増·改築費 支援費에 비해 各種 稅額 賦課의 加重

政府가 非營利法人에 對한 支援金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基本財産으로 蓄積될 수 있는 것은 福祉施設의 増改築費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調査에서 社會福祉施設(老人福祉施設, 精神療養施設, 영·육아 직보시설)에 増改築費로 支援한 補助金(國庫, 社會福祉基金, 地方費)을 調査하고 法人에 賦課되는 各種 稅額과 비교한 바, 1983年度에는 社會福祉法人의 1法人當平均 4,156 千원이 支援되고 이중 16%인 661千원을 세금으로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1984年度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증가되어 政府支援額의 3%를 稅金으로 徵收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83年度에 比하여 1984年度에는 政府支援額에 대한 稅金徵收額의 比率은 減少한 傾向이나 基本財産의 増殖을 위한 支援을 하면서 稅額賦課를 加重시키는 것은 基本財産増殖에 대한 차질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

다고 思料된다.

§ 3. 法人稅運營에 관한 問題

1) 租稅問題와 關聯되는 法人의 運營 問題는 法人이 取得할 수 있는 財産이 制限되어 있는 것이 가장 時急히 해결되어야 할 問題인 것이다.

農地改革法上 非營利公益法人이 農地를 所有할 수 없다는 것은 法人에 주어진 生活權 즉 定款에 規定된 固有目的事業을 遂行할 수 있는 權限을 制限하는 것이다.

社會福祉法人의 경우 그의 設立要件이 基本財産收入 20 %以上이 年間運營費에 充當되어야 하고 大部分의 法人은 基本財産收入이 農地 收入으로 되어 있다.

이 法人의 主務官廳은 出捐된 農地 等を 基本財産으로 인정하고 認可하면 이 財産을 法人명으로 登記하려면 農地改革法上 登記가 不可能하다고 한다.

이러한 法人들은 許可받은 法人의 基本財産을 방치해두고 莫大한 農地稅만 納付해야 하니 法人에게는 二重的인 부담을 하게 된다. 즉 基本財産이 減少되는 반면에 그 명의는 自然人的 所有로 되어 있기 때문에 農地稅까지 法人이 納付해야 하고 이 財産을 出捐한 任員 또는 篤志家가 그의 名의로 農地稅가 賦課되던 心境의 變化를 일으켜 出捐을 拋棄하고 他人에게 매각處分할 우려도 있다.

法人이 目的事業을 遂行하는 것은 國家代行的인 役割임으로 정부는 財源調達을 위하여 많은 篤志家들이 私有財産을 非營利公益法人에 出捐할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여야 한다.

2) 法人設立에 따른 基本財産의 所有評價額을 5000 萬圓 以上으로 限定한 것은 不合理하다. 이로 因하여 法人設立時 無理한 財産出捐을 함으로 設立後 法人의 負債清算을 위하여 과중한 設立 당초의 負擔關係로 目的事業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그 理由는 大都市의 境遇 약간의 土地만 出捐하여도 1 億을 초과할 수 있으나 農村의 경우 數拾萬坪을 出捐하여도 그 評價額이 千백萬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法人設立이 꼭 必要로 한 地域은 法人設立을 爲한 基本財産評價額이 不足하면 現金 殘高證明을 添附하게 되므로 設立後에 많은 問題點이 發生하게 된다.

이와같은 問題는 前述한 法人의 農地所有制限에 관한 問題와 兩立되는 問題로서 역시 法人이 出生으로 부터 問題를 안고 태어나면 運營과정에서 問題法人化가 된다는 것이다.

第 2 節 問題點에 관한 改善方案

§ 1 . 綜合的인 改善對策

1) 定款에 관한 問題

各 單行法上 法人에 關한 規定에 定款의 記載事項中 絶對的 記載事項을 民法第 40 條에 規定된 7 個項目 以外에

① 法人의 所在地域 또는 目的事業의 歷史的 背景

② 法人所在地域에 대한 設立의 必要性和 地域的 與件

③ 法人設立의 動機와 財産出捐의 事由 등을 追加하여 민회법인의 利害關係인과 財産의 出捐者 등을 區別할 수 있도록 한다.

그 理由는

①그 法人이 遂行하고자 하는 事業과 地域의 歷史的 背景을 열거하여 法人 設立의 必要性을 理解한다.

②당해법인의 所在地域에 目的事業遂行의 必要性 與否를 알 수 있는 地域的 與件을 記載하여 許可 또는 認可與否를 결정한다.

③法人의 設立者 또는 財産의 出捐者 等の 設立의 動機와 財産出捐의 具體的인 事由를 記載함으로써 設立者의 功德을 기린다.

2) 財産에 관한 問題

法人의 財産中 設立當初의 基本財産은 國有地 또는 公有地로서 불하대금이 完納되지 않았거나 저당권 설정등을 한 財産은 그 法人의 基本財産으로 認定하지 않아야 한다.

그 理由로는 法人의 財産이 積極的財産과 消極的 財産이 區分되어야 함으로 設立當初부터 負債를 지고 設立된 法人은 健全하게 育成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3) 組織에 관한 問題

法人의 組織形態는 各 事業目的에 따른 單行法과 그 法人의 定款에 依하고 있으나 各 部處別 定款의 準則을 廢止하고 設立法人の 定款은 設立者의 뜻에 따라 自由롭게 記錄되어야 한다. 그 理由로는 各 法人이 同一한 目的事業을 위하여 設立되어도 設立者의 個性과 주의주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例: 歷史的 背景, 地域的 與件, 設立의 動機 等이 다름)

4) 租稅에 關한 問題

民法第32條規定을 根據로 하여 設立된 法人은 根本的인 非課稅로 하여 오직 非營利公益事業에만 열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國家稅收로 因하여 莫大한 公益事業이 中斷된다는 것은 福祉社會建設에 支해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例: 租稅減免規制法上 政府補助를 받는 모든 法人은 非課稅로)

5) 運營에 關한 問題

農地改革法上 非營利 公益法人은 農地를 所有할 수 없다는 것은 社會公益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法令은 時急히 改正되어야 한다. (例: 國費 또는 地方費의 補助에 依하여 運營되는 모든 非營利公益法人은 例外로 한다는 단서規定을 둠)

6) 法人의 設立要件에 基本財産의 限度額을 定한 것은 改善되어야 한다. 社會福祉法人은 5大都市에서 所在를 抑制하는 政策에도 위배되고 있다. 不動產의 價額은 都農의 격차가 심함으로 必要한 地域에 法人設立이 不可함

§ 2 . 建議 및 要望事項

1) 稅務公務員에 對한 社會福祉事業에 關한 教育實施

非營利法人에 대한 세금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社會福祉의哲學 基本理念, 事業內容, 事業實施方法 등에 關한 理解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公務員教育機關에서 稅務公務員에 대한 教育課程에는 社會福祉에 關한 教科目을 必須的으로 設置하고 이에 대한 徹底한 教育으로 社會福祉

事業의 目的 내지 각종 財源의 使用, 用途 등도 正確히 理解하게 함으로써 非營利公益法人의 稅金賦課에 合理性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 非營利公益法人의 任職員에 대한 社會福祉와 關聯된 稅法教育의 實施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非營利公益法人의 任職員이 關係 稅法을 理解하지 못함으로써 各種 租稅의 賦課가 잘못되거나 稅金賦課에 消極的으로 順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점을 勘案하여 이들에 대한 關聯 稅法에 관한 教育이 必要하다.

3) 各種 稅法에 있어 非營利法人에 대한 非課稅 및 免稅規定의 強化
앞의 문제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非營利公益法人에 대한 各種 稅金賦課率이 增加하고 또한 非課稅 및 免稅規定도 未弱한 실정으로 所得稅法, 關稅法, 防衛稅法 등의 改正을 통한 非課稅 및 免稅規定을 다음과 같이 設定하는 것이 요청된다.

가) 所得稅法第 5 條非課稅所得規定에 非營利公益法人의 不動產所得, 事業所得 등을 非課稅하도록 規定設置

나) 關稅法第 28 條의 6 第 1 項에 非營利公益法人이 社會福祉事業에 使用하기 위해 外國으로부터 기증받는 物品에 대한 關稅의 免稅規定設置

다) 防衛稅法第 3 條의 非課稅規定에 非營利公益法人의 所得에 대한 防衛稅 非課稅規定設置

4) 非營利公益法人에 賦課되는 各種 稅에 대한 부과요인, 부과과정, 문
제점 등 구체적 調查研究實施

이 연구를 통하여 非營利公益法人에 賦課되는 稅의 稅類, 稅額과 政

府補助金에 대한 極히 기초적인 調査를 실시한 바 非營利公益法人에 있어 부과되는 各種 稅의 부과요인, 부과과정, 문제점 등에 關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이와 關聯된 稅法改正을 위한 資料의 開發이 要請되고 있다.

※ 3 個法人에서 農地改革法을 改正하여 法人의 收益事業場인 農地를 法人앞으로 登記移轉할 수 있도록 하여 租稅減免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建議가 있었음. (忠南: 금매, 경기: 양평원로, 화성해동 등)

參 考 文 獻

1. 川島武宣, 民法總則, 日本國有斐閣, 1973. p. 87
2. 金國道, 法人實務論, 法研出版部, 1978. p. 51
3. 金顯泰, 民法總則, 教文社. 1975. p. 149
4. 朴光緒, 法制史, 一字社. 1972. p. 58
5. 張庚鶴, 新民法總則, 三省社, 1969. p. 229
6. 金國道, 法人指導監督論, 延世大, 1976. p. 16
7. 原田慶吉, 日本民法の史的素描, 創文社, 1964. p. 21
8. 恒藤恭, 法人格の理論, 弘報社, 1946. p. 18
9. Ottov Gtreke 의 團體法論, 로고스社, 1929 p. 150
10. 金國道, 法人指導監督에 관한 研究, 法研社出版部, 1976. p. 12
11. 金國道, 法人基本財産에 관한 研究, 社保審研究室, 1980. p. 23
12. 金國道, 社會福祉法人 무엇이 問題인가? 社會福祉誌, 1983. p. 129
13. 金國道, 行政實務法人管理, 江京文化社, 1976. p. 41
14. 峯川岩 外 2 名, 法學講義, 青林書院, 1975. pp. 209 ~ 211
15. 鄭榮錫, 刑法總則, 法文社, 1974. p. 75
16. 厚生白書, 日本國厚生省, 1973. p. 329
17. 金完淳 外 4 名, 福祉産業社會 爲한 稅制, 1985. 10. 16. 朝鮮日報
18. 李光榮, 社會保障年金과 課稅考察, 1985. p. 62, 醫保公論
19. 金翰周, 黃振洙, 現代福祉國家論, 1983, 高麗苑, p. 16
20. 宋鄭府, 社會福祉學, 1980, 學文社, p. 26
21. 法務部, 質疑回信, 810-4977 號, 1979. 12. 29

22. 內務部, 質疑回信, 1268-1085 號, 1984.9.3.
23. 防衛稅法改正請願, 基督教稅務對策協議會. p. 4
24. 文化公報部, 韓國의 宗教, 1973. p. 133
25. 保健社會部, 統計年報 1984. p. 159 ~ 128

附 錄

§ 1. 研究計劃 및 各種資料

§ 2. 各課別調查研究資料

§ 3. 調查對象法人別資料

§ 1. 研究計劃 및 各種資料

- 1) 研究計劃報告書
- 2) 研究班課題確定研究指示
- 2) 細部調查研究計劃報告書
- 4) 研究豫算要求에 對한 回示
- 5) 研究資料協調要請

보 고 서

< 1984.11.2 >

3. 1985 년도 연구과제

보고자 연구위원
김 국 도

가. 연구과제명

법 인 조 세 감 면 에 관 한 연 구
- 사 회 복 지 시 설 을 중 심 으 로 -

나. 연구의 필요성

- 1) 사회복지사업법 제 12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 변경을 초래할 때 방위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법인의 기본재산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 2) 최근 도시계획 또는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기본재산의 변경이 초래되면 이전된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수천만원의 방위세 등이 부과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음.
- 3) 뿐만 아니라 정부시책에 의한 지방 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이전하거나 영세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기능보강비로 시설의 개축 또는 증축시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 4)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인구분산시책에 따른 중소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복지시설을 이전하거나 도시계

획에 저촉된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이 변경되었을 시 각종 세금의 감면조치가 시급이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헌법 및 생활보호법과 각종 사회복지관계·법적근거를 제시하여 사회복지 법인은 근본적으로 비과세법인임을 증명코자함.

- 5) 보건사회부에서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사회복지시설에 보조하고 재무부 당국에서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명목으로 보조된 금액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한다면 전후가 모순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음.

그러므로 본 연구의 필요성은 사회복지법인의 사업실적을 조사하여 향후 조세감면의 혜택으로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보 건 사 회 부

법 무 31000-116 (593-4518) 1985. 7. 3.

수 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반

제 목 '85년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반 과제연구 계획

1. '85년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반의 과제연구 계획이 별첨과 같이 수립되었기 통보하니 동 연구일정에 따라 과제연구 및 보고서 제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동 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정책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첨 부 : '85년도 사보심연구반계획 1부. 끝.

기 획 관 리 실 장

1985년 사보심 연구반 연구계획

1. 연구과제

연구위원명	연구과제명	연구시한
김 국 도	법인조세감면에 관한 연구	85. 10 월 말

2. 연구일정 및 세무절차

가. 연구일정

- '85. 7.10 : 연구과제선정 및 연구계획서 제출
- '85. 9.10 : 중간보고
- '85.10.30 :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85.11. : 보고서인쇄 및 연구결과발표

나. 연구방법

- 각 연구위원 및 참사 개별적으로 관련국과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다. 연구진도 및 결과보고

- 9 월 초에 진도·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협의 후 보완방안 검토
- 10 월 말에 최종 결과보고 후 인쇄자료 제출 (인쇄물 150페이지 이내)

라. 연구결과발표

- 관련국·과 공무원 참석하에 '85.11 월 중 발표회 개최
- 발표시간 : 과제별 15 분 이내
- 발표 후 관련기관에 보고서 배포

기 획 관 리 실 장

정 직 질 서 창 조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사보개 제 850-7103 호 (전화 : 599-4732)

1985. 7. 10.

수 신 보건사회부 기획관리실장

참 조 보건사회부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계획보고서 제출

1 . 법무 제 31000-116('85.7.3) 호와 관련입니다.

2 . 위호로 지시하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반의 연구자 개인별 연구계획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구계획요약서 1 부. 끝.

연구위원 김 국 도

85 年 度 研 究 計 劃 書

§ 1 . 研究課題

法人租稅減免에 關한 研究
— 非營利公益法人을 中心으로 —

§ 2 . 研究目的

1. 民法 및 各單行法에 依한 非營利 公益法人의 固有目的事業에 各種稅金이 賦課되어 法人의 公益事業에 莫大한 支障을 招來하고 있어 各法人別 課稅現況과 擔稅能力을 調査分析하여 租稅減免規制法改正資料에 供與할 것이며
2. 國家目標인 福祉社會建設을 爲하여 社會福祉法人 등 非營利 公益事業에 國費 또는 地方費를 補助하고 있으나 國稅와 地方稅로 환수하여 法人의 財産이 減少되고 事業의 蹉跌을 招來하는 矛盾의 是正 資料로 提示할 目的으로 研究함.

§ 3 . 研究方法

1. 이 研究에서 採擇한 研究方法은 文獻資料에 依한 研究方法과 法人의 主務官廳 및 그 聯合團體의 所屬法人別 現況을 豫備적으로 郵送調査하여 그 實態를 把握하고 各法人別 實際調査計劃書를 作成 當該法人의 設立者와 運營管理者 등을 對象으로 郵送調査와 現地調査를 並行한다.

2. 調査된 資料를 手集計 處理하여 問題點을 導出하는 등 實證的 考察의 方法을 採擇하였으며 全國 1,200 餘個의 法人을 全數調査한다는 것은 時間과 豫算의 制約으로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研究의 焦點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政府豫算이 補助된 500 餘個의 法人만을 選定하여 豫算規模別로 有層化하고 無作爲 抽出로 層化 標集方法에 依하여 調査研究한다.

§ 4. 研究內容

1. 이 研究는 自體施設과 人員 그리고 裝備의 不足으로 韓國法人問題研究所의 施設 등을 活用하고 國會圖書館 및 各大學圖書館 또는 國立圖書館 등을 利用할 計劃이며 必要에 따라 國稅廳 傘下 各種 Seminar 또는 Symposium 에 參席하여 參考文獻을 市中複寫機를 活用하는 등 最少의 費用으로 最大의 成果를 얻는다.

2. 이 研究內容의 充實을 기하기 爲하여 學界와 實務界의 專門家 4 名을 諮問委員으로 추대하여 研究中 수시로 諮問을 받을 것이며 調査票 集計要員은 有資格者 10 名을 一時採用하여 珠算 및 電子計算機로 集計處理하여 分析結果의 問題點에 對한 改善方案과 建議 및 要望事項 등을 結論으로 提示하고 끝을 맺고자 한다.

§ 5 . 研究日程

- 1 . 1985. 1.1 ~ 6.30 : 資料蒐集 및 豫備調査
- 2 . 1985. 7.1 ~ 12.31 : 調査 및 資料集計處理
- 3 . 1986. 1.1 ~ 6.30 : 資料分析 및 比較研究
- 4 . 1986. 7.1 ~ 10.29 : 研究報告書作成 提出
- 5 . 1986.11.1 ~ 12.31 : 報告書 印刷・最終報告

§ 6 . 所要豫算 (추정) : ₩ 6,444,500

- 1 . 자문위원수당 : $50,000 \text{ 원} \times 4 \text{ 명} \times 4 \text{ 회} = 800,000$

1) 檀國大學校法政大學 : 한 영 춘 교수

2) 國際合同法律事務所 : 김 유 현 소장

3) 國立社會福祉研修院 : 이 정 호 교수

4) 財務部國稅廳法人稅課 : 임 정 산 과장

- 2 . 제수당 및 사용료 : ₩ 3,930,000

1) 집계요원수당 : $10,000 \text{ 원} \times 10 \text{ 명} \times 30 \text{ 일} = 3,000,000$

2) 집계분석장소사용료 및 청소비 (복지회관 소회의실)

① 사용료 : $10,000 \text{ 원} \times 30 \text{ 일} = 300,000$

② 청소비 : $1,000 \text{ 원} \times 30 \text{ 일} = 30,000$

③ 간식비 : $2,000 \text{ 원} \times 10 \text{ 명} \times 30 \text{ 일} = 600,000$

- 3 . 研究者現地調査出張費 : $100,000 \text{ 원} \times 6 \text{ 일} = 600,000$

4. 設問紙調査票人事文 各 500 枚

印刷費 : 435,000

1) 설문지 500 枚 × 200 원 = 100,000

2) 조사표 500 枚 × 200 원 = 100,000

3) 인사문 500 枚 × 200 원 = 100,000

4) 봉 투 500 枚 × 200 원 = 100,000

5) 우 표 500 枚 × 70 원 = 35,000

5. 資料蒐集費 : 679,500

1) 도서열람수수료, 자료복사대, 시내출장비 등

5,000 원 × 60 일 = 300,000

2) 도서구입비 (복사불가능도서) : 79,500

① 법인세 실무 1 권 : 4,500

② 세무행정백서 1 권 : 15,000

③ 기타외국서적 2 권 : 60,000

3) 기타예비비 : 10,000 원 × 30 일 = 300,000

1985. 7. 10.

研究責任者 金 國 道

보 건 사 회 부

법 무 31000-130 (593-4518) 1985. 7.16.

수 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반

제 목 '85년도 연구계획서 제출에 대한 시정요구

1. 법무 31000-116('85.7.16) 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귀 연구반에 통보한 85년도 과제연구 계획에 대하여 귀 연구위원들로부터 개별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이 연구일정 및 비용 등에 대한 수정해야할 사항이 있어 재통보하니 이점을 충분히 유념하여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각 위원 공히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기한을 '85년 10월 말로 하고 11월중 인쇄 및 연구결과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2. 현재 정부예산 형편상 연구비는 별도로 지원할 수 없으니 귀 연구반 및 당부 자료실에 비치된 참고문헌 및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시중 각종 도서관을 이용할 것이며, 자료수집에 필요한 연구원 출장비는 구체적 연구계획에 의거 그때 그때 신청바람. 끝.

기 획 관 리 실 장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사보개 제 850-52 호

(503-4732)

1985. 5. 7.

수 신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자료협조 요청

1. 법무 3100-90(1985.5.7) 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이송하신 연구자료와 관련된 각종 법인의 정부
지원사업 또는 자체예산, 재산대체, 수익사업 등으로 취득된 법인의
재산에 부과된 과세현황을 조사연구코자 합니다.

3. 당부소간 각종 비영리공익법인 및 사회복지시설과 사
업장을 사업목적 별로 총괄하고 있는 협회에 통보하여 각 법인별
과세내역이 조사될 수 있도록 별첨조사표를 발송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과세현황 조사표 1부

2) 협회 및 연합회명부 1부. 끝

사 회 보 장 심 의 위 원 회

연구위원 : 김 국 도

비영리 공익법인에 부과되는 과세현황 조사표

('83 년 부터 '85 년 까지 3 개 년 간)

단위 : m^2
(평)

(단위 : 천 원)

년도별	법인 및 시설명	사업량		사업비		세금	과세					내역	기타 세금
		토지, 건물	장비구입	요구액	수령액		지체예산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방위세		

< 기재 요령 >

- 1) 사업량중 토지, 건물란에는 년도별순으로 취득된 재산의 토지, 건물중 개축면적을 m^2 (평)으로 기입하시오.
- 2) 사업량중 장비구입란에는 구입한 물량을 년도별순으로 무엇을, 몇대 또는 몇개로 기입하시오.
- 3) 사업비중 요구액 및 수령액란은 국비, 지방비, 사회복지지기금등을 포함한 총액만 기입하시오.
- 4) 사업비중 자체예산란은 재산대체, 출연금, 기부금 수익사업등에 의한 예산총액을 기입하시오.
- 5) 과세내역중 각종 세액은 년도별순으로 기입하고, 기타세금란에는 농지세, 등록세, 증여세, 주민세등 과세된 금액

수 신 처 주 소 록

순위	시 설 명	주 소	우편번호
1	한 국 노 인 복 지 시 설 협 회	마포구공덕동 427-5 (복지회관)	121
2	한 국 사 회 사 업 시 설 협 회	마포구공덕동 427-5 (복지회관)	121
3	한국정신요양복지시설협회	마포구공덕동 427-5 (복지회관)	121
4	부녀보호사업전국연합회	마포구공덕동 427-5 (복지회관)	121
5	한 국 사 회 복 지 협 의 회	마포구공덕동 427-5 (복지회관)	121
6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서대문구연희동 446-269	120
7	전 국 공 원 묘 원 협 회	강남구반포동 19-1 코벤트스토아 563 호	135
8	한 국 시 각 장애 자 복 지 회	강동구상일동 137-13	134
9	대 한 가 족 계 획 협 회	영등포구당산동 121-146	150
10	대 한 어 머 니 회 중 앙 회	영등포구당산동 121-18	150
11	대 한 노 인 회 중 앙 회	용산구효창동 9	140
12	대 한 결 핵 협 회	영등포구당산동 121-150	150
13	대 한 나 관 리 협 회	경기도시흥군의왕읍오전리산 86	171
14	대 한 불 임 시 술 협 회	관악구봉천 6 동 1674-19	151
15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악구봉천동 722-3	151
16	한 국 건 강 관 리 협 회	강서구등촌동 602-1	150-02

§ 2. 各課別調查研究資料

- 1) 兒童福祉課研究資料
- 2) 婦女福祉課研究資料
- 3) 家庭福祉課研究資料
- 4) 社會課研究資料
- 5) 病院行政課研究資料
- 6) 再活課研究資料

보 건 사 회 부

법무 31000-90

(593-4518)

1985. 5. 7.

수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반 김국도

제목 연구자료 이송

1. 귀하가 '85.3.7 당실에 요청한 연구자료를 별첨과 같이 수집
이송하니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자료는 연구목적이외의 다른 용
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임을 첨언합니다.

첨부 : 연구자료 (당부 6개과 정부예산지원 내역) 1부. 끝.

법 무 담 당 관

보 건 사 회 부

아동 31420-26 (599-3278) 1985. 3.18.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연구자료제출

1. 법무 31000-62 ('85.3.11) 호와 관련입니다.

2. 귀실소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85년도 과제연구에 따른 당
과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예산지원 사업실적 부. 끝.

아 동 복 지 과 장

보 건 사 회 부

부녀 31451-27 (599-3414) 1985. 3.19.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연구자료 제출

1. 법무 31000-62 호 ('85.3.11) 와 관련임 .

2. 당과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증, 개축비 지원실적 ('83, '84, '85) 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니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과제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가. 정부예산지원사업 현황 1 부 .

나. 복지기금지원사업 현황 1 부 . 끝 .

가 정 복 지 국 장

보 건 사 회 부

가정 3100-111 (599-2119) 1985. 3.22.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연구자료 제출

1. 법무 31000-62('85.3.11) 호의 관련입니다.

2. 당과소관 노인복지시설비 지원실적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시설비 지원내역 2부. 끝.

가 정 복 지 과 장

보 건 사 회 부

사회 31000-119

(599-6188)

1985. 3.27.

수신 법무담당관

제목 자료제출

1. 법무 31000-62 ('85.3.11) 호와 관련입니다.

2. 대호에 의거 당과소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예산지원 (국고 및 기금) 내역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사회과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83. '84. '85년도 정부예산

지원 내역 1부. 끝.

사 회 과 장

보 건 사 회 부

병 원 31000-83 (593-8004) 1985. 4.17.

수신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자료제출

1. 법무 31000-62('85.3.15) 호와 관련임.

2. 당과소관 정신질환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예산 및 사회
복지기금의 년도별 지원내역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시설증, 개축사업지원내역 1부. 끝.

병 원 행 정 과 장

보 건 사 회 부

재 활 31300-73

1985. 5. 6.

수신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자료 협조요청

1. 법무 31300-62 ('85.3.1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당과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 지원한 증 개축비 등에 관한 실적을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지원현황 1부. 끝.

재 활 과 장

§ 3. 調查對象法人別研究資料

- 1) 韓國健康管理協會
- 2) 大韓家族計劃協會
- 3) 韓國社會福祉協議會
- 4) 大韓結核協會
- 5) 韓國老人福祉施設協會
- 6) 韓國療養福祉施設協會
- 7) 韓國浮浪人福祉施設協會
- 8) 韓國視覺障礙者福祉會
- 9) 大韓老人會
- 10) 韓國社會事業施設協會
- 11) 大韓癩管理協會
- 12) 全國公園墓苑協會

보 전 사 회 부

법 무 2261-140

(503 - 7525)

1985. 8 .5

수 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반 김국도

제 목 연구자료 이송

1. 귀하가 '85. 5. 11 당실에 요청한 연구자료를 수집 이송
하니 연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않되는 것임을 첨언합니다.

첨 부 : 연구자료 (법인 과세 현황 12 건) 1 부 끝.

법 무 담 당 관

한 국 전 강 관 리 협 회

한건총 제 465 호

1985. 6. 8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자료협조

1. 법무 2261-5488 호 ('85. 5. 14) 와 관련입니다.

2. 귀부의 연구과제인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조세 감면 대책”에 대한 본회의 자료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비영리 공익법인에 부과되는 과세현황조사표 1 부. 끝.

사단
법인 한국전강관리협회장

대 한 가 족 계 획 협 회

대가관리 제 1075 호

(634 - 8212)

1985. 6.10.

수 신 :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 기획관리실장

제 목 : 연구자료 제출

법무 2261-5488 호 ('85. 5. 14) 에 의거 본협회의 과세현황을 별
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 비영리 공익법인에 부과되는 과세현황 조사표 1 부 끝.

대 한 가 족 계 획 협 회 장

정 직 질 서 창 조

한 국 사 회 복 지 협 의 회

사 협 85-264

1985. 6. 13.

수 신 :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 법무담당관

제 목 : 연구자료 제출

1. 보건사회부 법무 2261-5488 호 ('85. 5. 14) 와 관련입니다.

2. 귀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연구반의 '85년도 연구과제인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조세감면 대책”에 대한 연구자료를 별첨 양식에 의거 제출합니다.

첨 부 : 비영리 공익법인에 부과되는 과세현황 조사표 1 부. 끝.

사회복지
법 인

한 국 사 회 복 지 협 의 회

회 장 천 명 기

대 한 결 핵 협 회

결핵관 제 317 호

(633 - 9461 - 5)

1985. 6. 15.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제 목 연구자료 제출

1. 법무 2261- ('85. 5. 14) 와 관련입니다.

2. 본회에서 기간중 과세납부한 현황을 별첨 내역과 같이
종합 보고합니다.

첨 부 : 비영리 공익법인에 부과되는 과세현황 조사표 각 1 매. 끝.

대 한 결 핵 협 회 장

한 국 노 인 복 지 시 설 협 회

한노협 제 85-128

1985. 6. 18.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자료 제출

1. 법무 2261-5488 호('85. 5. 14)와 관련입니다.

2. 대호에 의한 당 협회 회원시설의 과세현황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1) 과세현황 조사표(종합) 1 부

2) 해당시설별 조사표 각 1 부 끝.

사단
법인 한 국 노 인 복 지 시 설 협 회

회 장 김 용 성

한국정신요양복지시설협회

한정협 제 85-24 호

1985. 6. 21.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자료 제출

1. 사회복지국가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무 2261-5488 호 ('85. 5. 14) 와 관련입니다.

3. 대호에 의한 당 협회 회원시설의 과세현황을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 부 1) 과세현황조사표 (종합) 1 부

2) 해당시설별조사표 각 1 부. 끝.

한국정신요양복지시설협회

회 장 김 문 근

사단
법인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 연 8540

1985. 7. 22.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실

제 목 비영리 공익법인 등의 조세감면대책 내역에 따른 회신

1. 법무 2261 ('85. 5. 14) 호와 관련입니다.

2. 본회 및 34개 산하시설은 과세에 따른 해당사항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끝.

회 장 박 인 근

사회복지
법 인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회

한시 제 85-83 호

(476-9111)

1985.6.27.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실장

제 목 연구자료협조

1. 법무 2261-5488(85.5.14)의 관련입니다.

2. 본회 사업중부과된 과세현황자료를 송부합니다.

첨 부 : 비영리 공익법인에 부과된 과세현황조사표 1부. 끝.

사회복지
법 인 한국 시각 장애인 복지회

회장 이 원 순

사단
법인 대 한 노 인 회

대노총 제 31 호

(715-2928)

1985.7.1.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자료협조요청에 의한 서류제출

1. 법무 2261-5488(85.5.16) 관련입니다.

2. 본회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세금을 혜택받고자 의뢰
한 사항에 대하여, 귀부에서 요청한 양식에 의거 별첨과 같이 작
성 보고드리오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비영리 공익법인에 부과된 과세현황조사표 1부. 끝.

사단
법인 대 한 노 인 회
회장 이 호

사단
법인 한국사회사업시설연합회

사 련 제 85-84 호

1985. 7.10.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자료협조에 관한 건

1. 보건사회부 법무 2261-5488('85.5.15)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로 의뢰하신 연구자료를 별첨과 같이 발송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비영리공익법인에 부과되는 과세현황조사표 각 1 건. 끝.

사단
법인 한국사회사업시설연합회

회장 조 규 환

대 한 나 관 리 협 회

나협관리 508 호

1985.8.6.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제 목 연구자료협조요청에 따른 자료제출

1. 법무 제 2261-5488 호 ('85.5.14)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대호에 의거 당협회에 부과된 과세현황을 별첨 제출합니다.

- 첨 부
1. 비영리공익법인에 부과된 과세현황조사표 1 부
 2. 건의사항 1 부
 3. 연도별 기증물품현황 1 부
 4. 내무부 공문사본 1 부

대 한 나 관 리 협 회 장

사단법인 전국 공원묘원협회

전공협 제 26 호

(532-4413)

1985.9.7.

수 신 보건사회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실 (김국도 위원)

제 목 자료송부

1) 귀부 법무 2261-5488 호 관련사항입니다.

2) 당협회 사정으로 자료제출 시한이 늦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3) 상금까지도 자료가 미비되어 우선 회원들의 제출된 자료집계 송부합니다.

별 첨 “ 83 ” 85 년도 과세현황표 1 부

사단법인 전국 공원묘원협회

회장 유 상 열

서울고등법원

1985.7.2. 판결선고	사무관
1985.7.2. 원본영수	인

제 1 특 별 부

관 결

사 건 84 구 361 방위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이 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유 현

피 고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 모

변론종결 1985. 6. 4.

주 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1983.5.4. 자 방위세금 166,460,127 원과

가산세금 33,292,025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 내지 4, 같은 6호증, 같은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 1979.6.28.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대전시 동구 중리동 302의 1의 144필지 도합 112,381평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 도합 1,296평 1흡을 소외 이풍우에게 대금 2,246,042,460 원으로 매각하였다하여 양도가액은 실제거래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1968.1.1.을 기준으로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원고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법인이므로, 원고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액에 대한 방위세와 원고의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로서 1983. 5. 4.자로 주문과 같은 세액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59조의 2, 3항의 규정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주장에 따라 위 두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에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였으

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법한 것으로 돌아가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5. 7. 2.

재판장 판사 김 재 철

판사 안 성 회

판사 김 길 중

(별지 제 41 호 서식)

결 정 서

제 80 서 1236 호

청 구 인 : 주 소

상 호 사단법인

성 명

위대리인 : 주 소

성 명

행정처분청

세무서장

위의 당사자간의 심판청구 사건에 관하여 1980년 12월 6일 청구인으로 부터 심판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제심판관(합동)회의의 의견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 별 첨

1981년 3월 6일

이 유 : 별 첨

국 제 심 판 소 장

㉠

이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심판결정 기간내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90 mm×268 mm(인쇄용지(특급)34g/㎡)

주 문

세 무서 장이 80.5.25 자 청구법인에게 76 및 77 사업년도분 법인세 ,
법인영업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지세 등 77,449,613 원을 검정고지한 처분
을 취소하고 실지조사 결정한다.

1. 청구취지

청구인은 민법 제 32 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한어머니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제 공익사업과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76.1.1 ~ 76.12.31 사업년도 및 77.1.1 ~ 77.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등을 조사하여 동 사업년도의 법인세, 법인영업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제 합계 77,449,613 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나. 청구법인은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76 사업년도 및 77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를 추계결정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으로서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인 조미료, 설탕 등의 판매는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닌 대한어머니회 신용협동조합의 행위며 위 거래에 대한 장부 및 증빙을 모두 비치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신용협동조합의 판매행위를 청구법인의 판매행위로 보았을뿐 아니라 막연히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 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2) 처분청이 이건 조미료, 설탕 등의 판매를 청구법인의 도매행위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세액 및 부가가치세를 추정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판매행위는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니고 신용협동조합의 행위임에도 이를 청구법인의 행위로 본것은 부당하여 판매형태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임에도 도매로 하여 위 원천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청구법인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에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중 봉제 부분에 대한 일체의 장부상 기입이나 증빙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논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증 내지 항변서류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장부 및 증빙에 의하여 정확한 소득금액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나. (1) 청구법인이 조미료, 설탕 등을 매입하기 위하여 제일제당(주)과 77. 5월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대금결제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청구법인은 제일제당(주)의 사전승인 없이 약정상의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건 기관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일제당(주)과 거래하였음이 사실이라고 판단되고, 이러한 사실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조사지도 1266-5049, 80.5.1)에 의하여 확인되며 제일제당(주)도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조미료, 설탕 등의 판매행위가 청구법인의 행위가 아닌 신용조합의 판매행위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2) 또한 위 계약서의 내용 및 거래시설로 볼 때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는 도매로서 구법인세법시행령 제 101조제 1항제 33호 및 구영업세법시행령 제 82조제 1항제 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물품을 매도할 때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원천제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 점

청구주장과 국세청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건대

이건 청구의 다툼은

가. 제일제당(주)이 생산하는 조미료, 설탕 등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대한어머니회 신용협동조합이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의 여부와,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영업세의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리고

다. 조미료, 설탕 등의 판매형태가 도매인지 소매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결정

가. 이 건 조미료, 설탕 등의 판매행위가 신용협동조합의 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제일제당(주)으로부터 조미료, 설탕 등을 구입하여 판매한 이 건 영업거래가 청구법인의 영업행위가 아니고 “대한어머니회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77.5월에 제일제당(주)의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로서 매입한 물품대금 결제의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고 제일제당(주)의 사전승인 없이는 동 계약서상의 권리,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조미료, 설탕 등의 거래내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결산서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도 동 거래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일제당(주)으로부터 조미료, 설탕 등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지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행위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며 이것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청구법인의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으며,

나. 실지조사가 가능한지의 여부의 청구법인의 판매행위가 도매 또는 소매인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중 통제부분과 인쇄부분에 대한 장부의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하여 법인세 등을 추계결정하였음을 이건 관계 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일제당(주)으로부터 조미료, 설탕 등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76 사업년도 및 77 사업년도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입매출장, 상품출납부, 총계정원장, 손익계정장, 제조경비장 일반관리 판매비장부, 금전출납부, 자산부채자본장 등을 비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위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처분의 이 건 법인세 등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의 일부인 봉제 및 인쇄부분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수입금액은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거 확정하였으며 또 그 수입금액이 전체의 외형의 약 6%(77 사업년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전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막연히 청구법인의 조미료, 설탕 등의 판매형태가 도매라고 하여 이건 원천세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판매를 위하여 제일제당(주)과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일제당(주)으로부터 조미료, 설탕 등을 매입하여 “비영업실소비자(가정)에게만 판매”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으로

불 때 청구법인의 이건 판매형태가 반드시 도매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위에서 결정한 바와같이 법인세 등의 실지조사시에 청구법인의 이건 판매형태가 도매인지 또는 소매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 65 조제 1 항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